

연구보고서 96-15

適正 入養費用 算出과
分擔方案

韓 惠 卿

鄭 京 姬

韓國保健社會研究院

머 리 말

입양은 오랫동안 중요한 아동보호 수단 중의 하나로 활용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에서는 입양비용에 대한 논의가 공식화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국내입양비에 관한 政府의 基準은 한번도 제시된 적이 없었다.

그러나 1995년 1월 5일자로 전문개정된 入養促進 및 節次에 관한 特例法에는 입양기관이 養親이 될 자로부터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入養(알선) 費用의 一部를 징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아울러 입양비용의 算出內譯으로서 입양알선에 소요된 인건비, 아동양육비, 입양알선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입양기관의 운영비 및 홍보비의 네가지를 명시하고 있다.

이는 入養費用의 存在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인 동시에, 그동안 다분히 非公式的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입양비에 대한 논의를 公式化시키려는 시도로 보여진다. 특히 이 법에서는 그동안 정부의 기준이 제시된 적이 없었던 국내입양비 문제를 다루면서 입양기관이 양친이 될 자로부터 입양비용의 일부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내입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국가가 전체 입양비용의 일정 부분을 부담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입양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산하고, 이 비용에 대한 양부모와 국가의 부담방식을 모색해봄으로써 입양기관이 양부모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입양비의 상한선과 산출근거를 제시하려는 목적하에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국내입양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국가의 역할이 재정립되어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견지하고자 노력하였다.

本 研究報告書는 보건복지부 등 입양관련 정책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政策部署 뿐 아니라 입양관련 기관의 實務者들, 입양을 원하는 養父母, 혹은 입양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연구자들에게도 귀중한 示唆點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研究陣은 본 보고서가 나오기까지 財政 또는 資料의 제공을 통해 여러 모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대한사회복지회, 동방아동복지회, 한국사회봉사회, 홀트아동복지회, 성가정입양원, 충북희망원 등의 入養機關 관계자에게 깊이 感謝하고 있다. 또한 원고를 읽고 귀중한 조언을 해준 本院의 鄭基源 研究委員과 鄭宇鎭 部研究委員에게 謝意를 표하고자 한다.

끝으로 본 연구보고서에 수록된 모든 내용은 저자의 個人的인 意見이며 本院의 公式的인 見解가 아님을 밝혀 둔다.

1996年 12月

韓國保健社會研究院

院長 延 河 清

目 次

要 約	11
I. 序 論	23
1. 研究背景	23
2. 研究目的 및 內容	26
3. 研究方法	28
II. 理論的 背景: 入養에 대한 세가지 觀點과 入養費用 負擔類型	29
1. 入養에 대한 세가지 觀點	29
2. 入養費用 負擔類型	34
III. 研究의 基本原則	38
1. 入養費의 現實化	38
2. 國內入養의 活性化에 寄與	39
3. 國家의 責任強化	42
IV. 國內 및 國外 入養專門機關의 入養費用 分析結果	44
1. 入養費用 算出을 위한 基礎資料 分析	44
2. 入養機關이 提示한 入養費用 分析	54
3. 入養費用 算出의 基準	63
4. 適正 入養費用 算出과 算出根據	67

V. 國內入養機關의 入養費用 分析結果	97
1. 國內入養의 現況	97
2. 國內入養指定機關의 入養費用	99
3. 國內入養專門機關의 入養費用	105
VI. 國內入養 活性化를 위한 費用分擔方案	120
1. 入養關聯 國庫補助 現況	120
2. 國庫補助 改善方案	124
3. 養父母 負擔 入養費	127
VII. 結論 및 政策建議	132
1. 結論	132
2. 政策建議	139
參考文獻	144

表 目 次

〈表 1- 1〉	本 研究의 分析對象 入養機關	28
〈表 2- 1〉	公的介入 水準別 福祉서비스 供給體系 類型	34
〈表 2- 2〉	세가지 觀點別 財源調達 및 入養費 負擔方式	37
〈表 3- 1〉	國外入養費의 國際比較	40
〈表 3- 2〉	入養兒童數의 變化推移(1955~95年)	41
〈表 4- 1〉	入養機關別 入養現況 및 構成(1995年)	45
〈表 4- 2〉	入養機關別 歲入現況	47
〈表 4- 3〉	入養機關別 歲出現況	47
〈表 4- 4〉	入養機關別 人的構成	49
〈表 4- 5〉	入養機關이 提示한 入養費用(國內入養)	55
〈表 4- 6〉	入養機關이 提示한 入養費用(國外入養)	55
〈表 4- 7〉	入養機關別 人件費 額數와 算出方法	57
〈表 4- 8〉	入養機關別 兒童養育費의 比較(國內入養)	59
〈表 4- 9〉	入養機關別 兒童養育費의 比較(國外入養)	59
〈表 4-10〉	入養機關에서 提示한 節次費用의 比較(國內入養)	61
〈表 4-11〉	入養機關에서 提示한 節次費用의 比較(國外入養)	61
〈表 4-12〉	各 入養機關이 提示한 運營費 및 歲出에 基礎한 運營費 比較	62
〈表 4-13〉	入養機關別 弘報內容 및 弘報費	63
〈表 4-14〉	入養節次의 各 段階別 必要人力과 提供되는 서비스	68
〈表 4-15〉	入養節次의 各 段階別 必要人力과 提供되는 서비스	69
〈表 4-16〉	入養節次의 各 段階別 所要費用 項目	71

〈表 4-17〉	入養節次의 各 段階別 所要費用 項目	72
〈表 4-18〉	本 研究에서 提示한 國內入養費用	84
〈表 4-19〉	本 研究에서 提示한 國內入養費用과 4個 機關 提示額의 內譯比較	84
〈表 4-20〉	本 研究에서 提示한 國內入養費用과 4個 機關 提示額의 比較	85
〈表 4-21〉	本 研究에서 國外入養費用 算出에 使用한 加重值	86
〈表 4-22〉	本 研究에서 提示한 國外入養費用	95
〈表 4-23〉	本 研究에서 提示한 國外入養費用과 4個 機關 提示額의 內譯比較	95
〈表 4-24〉	本 研究에서 提示한 國外入養費用과 4個 機關 提示額의 比較	96
〈表 5- 1〉	國內入養의 入養機關 種類別 構成比	97
〈表 5- 2〉	國內入養機關의 年入養規模別 分布(1995年 現在)	98
〈表 5- 3〉	國內入養機關의 機關種類別 分布	98
〈表 5- 4〉	嬰兒施設 國內入養部署의 歲入·歲出 現況	100
〈表 5- 5〉	E嬰兒施設에서의 入養費 算出內譯	102
〈表 5- 6〉	本 研究에서 提示한 國內入養指定機關의 入養費用	104
〈表 5- 7〉	國內入養指定機關의 算出된 入養費用과 直接負擔費用 比較	104
〈表 5- 8〉	F入養院의 入養現況 및 構成(1994年)	106
〈表 5- 9〉	F入養院의 醫療問題를 가진 兒童의 醫療問題 類型別 分布	107
〈表 5-10〉	障導兒童의 保護期間(F入養院의 現在 保護중인 障導兒童의 境遇)	108
〈表 5-11〉	D入養機關의 海外入養된 兒童의 入養所要期間	108
〈表 5-12〉	F入養院의 歲入·歲出 現況	109

〈表 5-13〉 F入養院의 人的構成	110
〈表 5-14〉 F入養院에서 提示한 入養費用의 算出內譯	111
〈表 5-15〉 醫療問題兒의 國內入養費用(保護期間 2~6개월)	119
〈表 5-16〉 保護期間別 入養費用	119
〈表 6- 1〉 入養專門機關을 통한 入養時 養父母負擔 入養費	128
〈表 6- 2〉 醫療問題兒童 入養時 養父母負擔 入養費 (保護期間 2~6個月)	129
〈表 6- 3〉 國內入養指定機關에 대한 直·間接 補助實態	130
〈表 6- 4〉 國內入養指定機關을 통한 入養時 養父母負擔 入養費 ...	131
〈表 7- 1〉 國內·外 入養을 同時에 實施할 境遇의 入養費用	133
〈表 7- 2〉 入養對象兒童의 特性 및 入養所要期間別 國內入養 費用 ...	135
〈表 7- 3〉 入養專門機關 및 入養指定機關別 養父母負擔 入養費	136
〈表 7- 4〉 入養機關의 費用支出 項目的 標準化를 위한 分類方式 ...	141

圖 目 次

[圖 4-1] 國內入養節次	51
[圖 4-2] 國外 入養 및 國內에서의 國外入養 節次	52

要 約

I. 研究의 目的 및 方法

1. 研究의 目的

- 본 研究는 첫째, 입양에 소요되는 적정비용을 國內入養과 國外入養別, 內譯別(인건비, 아동양육비, 질차수속비, 입양기관 운영비)로 산출하며, 둘째, 입양비용의 적정분담방안을 모색하고 그에 기초하여 양부모가 부담해야 할 適正 入養費를 산출하고자 하였음.

2. 研究方法

- 1996년 현재 전국에 걸쳐있는 28개 입양기관 중에서 國內入養과 國外入養 업무를 모두 실시하는 입양기관 4개 기관(전수), 그리고 국내입양만을 전담하는 국내입양 전문기관 1개 기관(전수), 나머지 23개 국내입양(알선)기관 중 1개 기관에 대해 입양비용 算出內譯 資料를 수집·분석하였음. 또한 입양비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위의 기관들을 1~3회 정도 訪問하였음.
- 입양기관을 통해 얻은 자료를 기초로 하여 入養特例法上的 基準이나 도시임금근로자의 평균임금 등을 고려하여 입양에 소요되는 경비의 必須項目別 適正費用을 계산하였음.
- 입양아동수 및 입양정책의 변화과정, 사회복지 비용부담에 관한 既存 統計 및 文獻資料를 분석하였음.

II. 研究의 基本原則

1. 入養費의 現實化

- 그동안 政府는 1982년에 國외입양비 기준(US\$1,450)만을 제시하였을 뿐, 國內입양비의 기준이나 社會경제적 條件변화 및 物價수준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재정정된 國외입양비 기준은 제시한 바 없음.
- 본 연구는 入養비용에 대한 論議 자체가 터부시되어 왔던 분위기에서 벗어나 合理的인 入養비용과 비용분담방식이 공식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하는 시도의 일환임. 政府가 제시하는 入養비의 기준이 현실적이지 못할 때, 入養비용은 후원금(기부금)이라는 跛行的인 형태로 징수됨으로써 入養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져오고, 양부모의 부담을 오히려 加重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임.
- 따라서 本 연구에서는 入養기관들이 現在 받고 있는 入養費의 水準과 入養기관들이 제출한 入養비용 算出資料를 참고로 하여 入養비의 수준을 현실화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였음.

2. 國內入養의 活性化에 寄與

- 본 연구는 入養비용 분석에 초점을 맞추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적정한 入養비용과 入養비용의 분담방식을 제시하는 작업은 결코 가치중립적(value free)인 것이 될 수 없다고 보고, 入養비 분석을 國內入養의 활성화라는 정책방향에 부합되도록 한다는 기본원칙하에서 실시하였음.
- 최근에 國內入養의 需要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개인들끼리의 불

법 비밀입양까지 감안하면, 실제 국내입양의 수요는 더 높을 것이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임. 또한, 障碍兒童의 국내입양 사례도 미미하지만, 증가하는 추세임.

- 심한 장애아동과 같이 국내입양이 곤란한 아동의 경우 한국내 施設保護보다는 국외입양이 더 나은 代案이라는 논리는, 장애아동 보호에 대한 일반 국민의 認識水準이 낮고 社會的 與件이 미숙한 지금의 상황에서는 타당한 일면을 가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지나치게 短期的이고 近視眼的인 해결책에 안주함으로써 보다 長期的인 兒童保護對策을 마련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현실적으로도 “국내입양이 곤란한” 아동의 判定은 결국은 입양기관의 판단에 맡겨질 수밖에 없으므로 국내입양이 곤란한 아동의 判定基準의 公正性이나 客觀性은 결여될 가능성이 큼.

3. 國家의 責任強化

- 비용징수방식의 長點으로는 일반적으로, ① 서비스 사용자로 하여금 심리적 측면에서 스티그마(stigma)나 羞恥心을 느끼지 않게 한다는 점, ② 단순한 慈善이 아니라는 점을 보인다는 상징적인 측면, ③ 社會的 責任感을 강화시킨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음.
- 그러나 양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입양비는 市場商品과는 달리, 상품의 생산비를 기초로 삼는 費用主義에 의존해서는 안되며, 입양육구를 방해하지 않을 만큼의 가격이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① 국가가 입양에 드는 비용 중 일부를 보조하고, ② 입양이 관계자들에게 부당한 재정적 이익을 주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하며, ③ 입양기관의 부당한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는

방법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음.

- 특히 요보호아동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제공은 정부의 공적지출로 충당되어야 하는 國家의 責任에 관한 사항이므로, 정부는 입양비용의 일부 혹은 상당부분을 補助함으로써 입양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양부모의 負擔을 輕減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임.

Ⅲ. 入養費用 分析結果

1. 國內·外 入養 專門入養機關의 入養費用

- 4개의 국내·외 입양 전문입양기관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 입양비는, 國內入養의 경우 입양에 소요되는 기간을 1개월로 전제하여 1,903,000원(1995년말 가격 기준), 國外入養의 경우는 입양에 소요되는 기간을 5개월로 전제하여 4,692,500원(1995년말 가격 기준)으로 산출되었음.
- 위의 비용수준은 국내입양비의 경우 4개 입양기관이 현재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금액(기부금 포함 1,200,000원부터 1,700,000원)을 上廻하고 있으며, 국외입양비의 경우에도 4개 입양기관이 현재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금액(기부금 포함 2,840,000원부터 5,160,000원) 중 2개 기관의 입양비를 상회하는 것임.
- 內譯別로는 국내입양비의 경우 인건비가 835,000원(총액의 43.9%), 양육비가 488,000원(25.6%), 절차비용비가 330,000원(17.3%), 운영비 250,000원(13.1%)으로, 국외입양비의 경우에는 인건비가 1,877,500원

(총액의 40.0%), 양육비가 2,065,000원(44.0%), 절차비용비가 500,000원(10.7%), 운영비가 250,000원(5.3%)으로 계산되었음.

2. 嬰兒施設 附設 國內入養指定機關의 入養費用

- 영아시설 부설 입양기관은 영아시설에서 양육되고 있는 아동의 국내입양을 斡旋하는 역할만을 담당하며, 인건비와 양육관련 비용을 국고로 충당하고 있음. 이같은 국내입양(알선)기관의 입양비는, 입양에 소요되는 기간을 1개월로 전제하여 698,000원(1995년말 가격 기준)으로 산정되었음.
- 위의 비용수준은 조사대상 입양기관이 현재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금액(600,000원)을 상회하는 금액으로서, 내역별로는 절차비가 280,000원(40.1%), 운영비가 250,000원(35.8%), 양육비 168,000원(24.1%)으로 산정되었음. 특히 입양전문기관과 동일한 서비스의 질을 유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절차비속에 양부모교육비와 사후관리비를 포함시켰음.

3. 國內入養 專門機關의 入養費用

- 앞으로 국내입양이 活性化되고 未熟兒나 障礙兒童도 거의 국내입양이 될 경우에 소요되는 입양비용을 분석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내입양 전문기관의 자료를 분석하였음.
- 醫療問題를 갖고 있는 아동의 대부분이 국내입양된다고 가정하고, 입양비를 보호기간에 상관없는 固定額과 保護期間 比例額의 두가지 차원에서 산출하였음.
 - 입양까지의 보호기간과 상관없이 고정적인 입양비용은 2,390,000원 (인건비 1,515,000원, 아동양육비 중 소모품비, 신체검사비, 예방접종

및 비상약품비 245,000원, 절차비용 380,000원, 운영비 250,000원)이며, 보호기간에 비례하는 입양비용은 월 양육비 460,000원(양육위탁비 및 위탁모관리비 월 310,000원, 분유비 및 보조식품비 30,000원, 외래 및 입원진료비 100,000원, 간병인비 20,000원)에 양육기간(個月數)을 곱한 금액임.

- 따라서 입양비용은 보호기간 1개월당 460,000원씩 증가하여 2개월간 보호 후 입양시에는 3,310,000원, 3개월후 입양시 3,770,000원, 4개월 후 입양시 4,230,000원, 5개월후 입양시 4,690,000원, 6개월후 입양시 5,150,000원으로 산출되었음.

4. 本 研究結果의 寄與點과 分析上의 制限點

- 위의 금액이 입양기관들이 현재 받고 있거나 혹은 받기를 원하는 입양비 수준에 비해 높거나 혹은 크게 낮지 않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入養費用을 現實化하고자 하는 첫번째 基本原則에 충실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음.
- 또한 본 연구는 國內入養의 活性化에 기여하기 위해, 앞으로 국내입양이 활성화되어 대부분의 입양기관이 국내입양만을 전담하거나 혹은 앞으로 조산아나 장애아동도 국내입양될 경우에 適用할 수 있는 비용을 산정하기 위해 국내입양만을 全擔하는 입양기관에 적용할 수 있는, 혹은 국내입양 중심의 입양이 이루어질 경우에 대비한 국내입양비 分析을 시도하였음.
- 그러나 본 분석결과, 入養機關이 제시한 자료를 주요 分析對象으로 삼은 것이라는 점에서 다음과 같은 分析上의 限界를 가지며, 앞으로 이로 인한 비용상의 誤差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

어야 할 것임.

- ① 입양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費用項目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입양기관간 項目別 標準化가 이루어져 있지 않은 데서 오는 어려움이 있었음.
- ② 입양기관별 서비스 수준의 差異는 적정한 입양비용을 산출하는데 장애요소로 작용하였음. 예를 들면, 양부모교육비를 입양비에 포함시킬 경우 실제로 양부모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기관의 서비스 수준을 改善함이 없이 費用上昇 效果를 가져올 수 있다는 부정적인 측면을 가짐.
- ③ 국내입양만을 全擔하는 입양기관에 적용할 수 있는, 혹은 국내입양 중심의 입양이 이루어질 경우에 대비한 국내입양비를 별도로 분석함에 있어서, 미숙아나 장애아동이 입양되기 전까지 실제 소요되는 期間을 고려하기 위한 兒童別 健康狀態 및 그로 인한 입양전 보호기간의 差異를 양육비 산정에 반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음.

IV. 費用分擔方案과 養父母負擔 國內入養費

1. 現行 國庫補助 方式의 問題點

- 앞의 연구결과, 이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입양에 소요되는 費用만을 계산한 것임. 따라서 위에 제시된 입양비용을 모두 養父母가 부담해야 하는가, 특히 미숙아나 장애아동 등 醫療問題를 가지는 아동의 입양비를 양부모가 모두 부담해야 할 것인가 하는 問題가 제기될 수 있음.
- 이에 대해 본 연구에서는 국내입양의 활성화라는 정책방향에 부응

하기 위해 政府가 국내입양에 소요되는 비용 중 상당부분을 보조해야 한다는 것을 基本原則으로 삼은 바 있음.

- 현재 입양관련 국고보조금으로는 입양기관에 대한 보조금과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대한 보조금의 두 종류가 있음.
- 1996년 현재 정부가 입양기관에 지급하고 있는 보조금은 機關當年間 약 10,134천원이며, 그 內譯은 입양기관 運營費 중 相談員 1명의 배치 비용과 사무용품비(연 1,200천원)임.
 - 현재와 같은 입양기관에 대한 국고보조 방식 및 내용은 다음과 같은 問題點을 갖고 있음.
 - ① 아동양육비에 대한 국고보조는 生活保護法의 적용을 받는 아동복지시설 부설 국내입양 지정기관에게만 지급될 뿐 입양전문기관(4개 국내 및 국외입양 전문기관과 1개의 국내입양 전문기관)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고 있어, 입양전문기관을 통해 아동을 입양하는 경우에는 養父母가 양육비를 全額 부담하게 됨으로써 입양지정기관을 통한 입양에 비해 양부모의 부담이 훨씬 과중한 실정임.
 - ② 1996년부터 시작된 입양기관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기관당 定額으로 지급하는 방식은, 기관당 국내입양 아동수가 10명 이하인 기관에서부터 394명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는 점을 감안하지 못한 방식으로서 국고보조의 機關別 衡平性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국고보조금을 입양기관에 定額으로 지급하는 현행 보조방식은 양부모의 부담을 낮추는 데 기여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가짐.
 - ③ 1996년부터 시작된 입양기관에 대한 국고보조금 중 兒童相談員의 人件費 水準이 지나치게 낮음.

-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대한 국고보조로는 1995년에 개정된 입양특례법에 기초하여 의료비 등 양육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으며, 이외에도 1994년 이후부터 입양가정에 주택분양 및 전세자금을 할증지원하고 있고, 입양된 아동의 중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면제, 국립의료원에서 18세까지 무료진료, 연말정산 소득공제 중 부양가족 및 교육비 공제대상에 입양자도 포함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음.
 -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내부자료에 의하면, 입양가정에 대한 국고보조가 지급되기 시작한 1996년 1월부터 9월까지의 기간동안 장애아동 입양가정에 대한 養育補助金の 적용대상자는 16명에 불과했고, 같은 기간동안 지급된 장애아동 醫療費도 242만원에 불과한 실정으로, 입양가정에 대한 국고보조가 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實質的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2. 國庫補助 改善方案

- 본 연구는 이상에서 살펴본 입양관련 국고보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크게 국고보조 方式의 改善과 국고보조 內容의 擴大라는 두가지 방안을 제시하였음.
 - ① 현행과 같은 입양기관당 정액 보조방식을 지향하고 양부모의 입양비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아동별 국고보조방식으로서의 국고보조 방식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
 - ② 입양기관에 인수되는 모든 아동에 대한 양육비와 아동상담원 인건비를 보조하고, 양부모교육비 및 사후관리비를 지원하며, 미숙아나 장애아동에 대한 특별한 고려를 그 내용으로 하는 국고보조 내용의 확대가 필요함.

3. 養父母가 負擔하는 國內入養費

- 이상과 같은 국고보조의 개선이 이루어질 경우 양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국내입양비는 입양전문기관을 통한 국내입양시는 905,000원으로, 국내입양 지정기관을 통한 국내입양의 경우는 548,000원으로 산출되었음.

V. 政策建議

1. 入養費用 計算上の 誤差를 最少化하기 위한 方案

- 입양기관간 支出項目의 標準化 노력이 이루어져야 함.
- 서비스 수준의 改善없이 비용상승효과를 가져오는 副作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입양기관 서비스에 대한 統制가 필요함.
- 국내·외 입양전문기관에 해당하는 국내입양비용은 국내입양에 소요되는 期間을 1개월로 전제한 비용이므로 국내입양에 실제 소요되는 期間이 1개월보다도 더 짧은 데 따른 價格調整 가능성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임.
- 본 연구는 입양된 아동을 기준으로 하여 입양기관에 引受(Intake)되어 입양되기까지의 비용을 계산한 것이므로 입양기관에 인수되었으나 입양되지 못한 아동에게 소요된 비용에 대한 고려가 요구됨.
- 본 연구는 1995년 말 현재의 價格水準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앞으로 입양에 소요되는 비용의 物價上昇分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정부측의 原則 提示가 필요할 것임.

2. 國內入養 活性化를 위한 政府次元의 支援方案

- 國內입양에 대한 政府次元의 積極적 弘報가 필요함. 본 연구에서는 입양기관별 홍보는 자칫 입양기관간의 競爭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그보다는 정부차원에서의 積極적인 弘報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입양비속에 弘報費를 포함시키지 않았음. 따라서 정부는 國內입양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積極적인 弘報戰略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별도의 豫算을 편성해야 할 것임.
- 정부는 요보호아동 양육의 일차적 책임이 國家에게 있다는 점을 인정함으로써 의료문제를 가지지 않는 健康한 兒童에 대해서도 國內입양 지정기관에 제공하는 것과 같이 양육비와 아동상담원 인건비를 보조해야 할 것임.
- 정부는 養父母教育費, 事後管理費 등과 같은 特定 項目의 비용을 支援함으로써 서비스의 질 개선을 유도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음.
- 미숙어나 장애아동 등 醫療問題를 가지는 아동에게 소요되는 입양비에 대해서는, 양부모가 健康한 아동을 입양하는 데 드는 비용 以上을 부담하지 않도록, 이 아동들이 입양되기까지의 기간동안 소요되는 비용의 상당부분을 政府가 부담해야 할 것임.
- 國內입양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보다 長期的인 支援方案으로서 國內입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民間 入養機關에 위임하되, 입양비용의 대부분을 國家가 부담하는 방식, 즉 國家는 입양기관의 經驗과 專門性을 활용하되, 입양기관으로 하여금 입양을 원하는 양부모의 명단을 共同管理하게 함으로써 입양대상 아동과 양부모를 확보하려는 입양기관들간의 지나친 경쟁과 개별적 弘報노력을 막을 수 있을 것임.

- 이때 양부모는 입양에 소요되는 전체비용 중에서 절차비용 정도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國家가 부담하도록 함. 이 안의 가장 중요한 근거는 요보호아동에 대한 一次的인 保護責任이 국가에게 있다는 것으로서, 실제로 요보호아동이 입양되지 않을 경우 국가가 18년동안 영아시설 및 육아시설에서 보호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감안한다면, 입양비용의 부담은 상대적으로 크게 낮은 편임.
- 마지막으로 障礙兒童에 대한 시설보호 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등 장애아동을 위한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福祉對策이 마련되어야 하며, 동시에 未熟兒나 障礙兒의 豫防을 위한 未婚母 福祉對策 등이 필요함.

I. 序論

1. 研究背景

入養은 親家庭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아동에 대한 施設保護 (Institutional Care), 家庭委託保護(Family Foster Care)와 함께 社會福祉士의 專門的인 相談과 介入이 요구되는 사업이다.

우리나라에서는 韓國戰爭 직후 전쟁고아 및 혼혈아에 대한 구제 차원의 국외입양이 시작된 이래, 입양은 매우 중요한 아동보호 수단이 되어왔다. 특히 아동에 대한 가정위탁보호가 제도화되지 못한 우리나라에서 입양은 施設保護의 唯一한 대안이었을 뿐 아니라, 흔히 시설보호보다 훨씬 더 나은 대안으로 여겨져왔다.

실제로 한국전쟁 직후에 시작된 국외입양은 경제의 고도성장에도 불구하고 계속 증가하여 1970년대에는 연평균 4,800명, 1980년대에는 연평균 6,500명 정도의 아동이 국외입양되었다. 같은 기간에 각각 1,500명, 2,600명 정도였던 국내입양 아동수까지 합치면, 시설보호되는 아동수보다 입양되는 아동수가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날 정도로¹⁾ 입양은 그동안 우선순위가 높은 아동보호방법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친가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아동을 입양, 특히 국외입양이라는 방법에 주로 의존하여 보호해온 우리 사회에서 입양이란 여러

1) 이 기간 중 영아시설에서 보호되고 있었던 아동수는 1970년에 7,636명, 1975년에 3,673명, 1980년에 2,477명, 1985년에 2,736명, 1990년에 2,388명이다. 이 숫자는 입양의 경우와는 달리, 매년 새로 발생한 숫자가 아니라 누적된 보호아동 숫자임을 감안할 때 입양아동수가 시설보호 아동수보다 훨씬 많았던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보건사회부, 『보건사회통계연보』, 각 연도 참조.

차원에서 다양한 문제를 제기하는 주제가 되어왔다. 즉 입양 외에 선택할 수 있는 아동보호정책의 대안은 무엇인가, 열악한 시설보호의 수준을 어떻게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인가, 요보호아동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을 포함하여 포괄적인 아동복지정책의 방향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광범위한 정책적 차원의 문제를 제기하는가 하면, 동시에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고, 특히 장애아동의 국내입양을 증가시키기 위한 지원방안은 무엇인가, 입양절차를 어떻게 합리화할 것인가, 과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는 무엇인가, 입양후 사후관리를 제도화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입양비용은 어떻게 산출되며 입양기관이 양부모로부터 받을 수 있는 입양비용의 적정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하는 등의 보다 구체적인 문제들에 대한 해답도 요구된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여러 차원의 다양한 문제 중에서 특히 입양비용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그동안 우리 나라에서는 입양시 양부모가 입양비용을 부담한다는 사실이 입양 사실만큼이나 공공연히 거론되지 않는 분위기였으며, 특히 국내입양비에 관한 政府의 基準은 한번도 공식적으로 제시된 적이 없다²⁾.

그러나 1995년 1월 5일자로 전문개정된 入養促進 및 節次에 관한 特例法 제20조에 의하면, 입양기관이 養親이 될 자로부터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入養(알선)費用의 一部를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同法 시행령 제8조에는 그 비용의 算出內譯으로서 ① 입양알선에 소요된 인건비, ② 아동양육비, ③ 입양알선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④ 입양기관의 운영비 및 홍보비의 네가지를 명시하고 있다.

개정된 입양특례법에서 위와 같은 조항을 명시한 것은, 개정되기 전의 입양특례법 시행령(1977.3. 8. 대통령령 제8509호) 제8조에 의하여

2) 정부는 국외입양비에 대해서는 1982년에 양부모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아동당 입양비용의 기준을 US\$1,450으로 지정한 바 있다.

양친될 자로부터 입양알선에 소요된 경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었던 入養費用의 存在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인 동시에, 그동안 후원금(기부금)이라는 명목하에 다분히 非公式的인 성격을 가지고, 기관별로도 징수액의 차이를 보였던 국내입양비를 公式化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개정된 입양특례법에서 입양비용의 존재와 양부모로부터 그 비용의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입양비용의 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제시하도록 명시한 것은 다음과 같은 意味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첫째, 이제까지 입양기관과 양부모 사이에서 비공식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져 왔던 國內入養費를 公式化시킴으로써 앞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국내입양에 대비하여 보다 합리적인 입양비의 授受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입양비용은 市場原理에만 맡길 수 없기 때문에 입양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되, 公的인 價格規制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다.

셋째, 1982년에 제시된 바 있는 國外入養費의 기준을 물가인상 등의 제 여건을 감안하여 현실화함으로써 법적 구속력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배경을 감안하여, 입양기관에서 입양서비스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合理的인 入養費用의 金額과 算出根據를 제시하고자 한다.

한편 입양기관이 양부모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합리적인 입양비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비용분담방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즉 과연 養父母는 입양기관에 입양비를 지불함에 있어서 아동입양에 소요되는 비용 모두를 부담해야 하는가, 그러한 根據는 무엇인가, 대표적인 요보호아동

이라고 할 수 있는 입양대상 아동을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責任은 누구에게 있는가 등의 질문에 대한 해답이 요구된다.

위와 같은 질문은, 입양이 아동복지서비스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한, 입양에 소요되는 모든 費用을 養父母가 부담해야 할 근거는 희박하며, 아동복지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져야 할 國家가 입양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결론을 유도하기도 한다.

실제로 개정된 입양특례법에서는 국가가 입양기관의 운영비를 補助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되었다(동 법 제23조). 이는 곧 입양 및 입양비용에 대한 國家의 責任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養父母가 부담해야 하는 입양비용은 실제 아동입양에 소요되는 비용에서 국가의 補助金을 除한 비용일 것이라는 점은 法的으로도 추론이 가능한 사항일 것이다.

2. 研究目的 및 內容

본 연구는 입양에 소요되는 비용산출과 입양비용의 적절한 부담방식에 대한 논의에 기초하여 입양기관이 양친이 될 자로부터 수납할 수 있는 입양(알선)비의 上限線 책정에 필요한 基礎資料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즉 본 研究의 目的은 첫째, 입양에 소요되는 입양비용을 國內入養과 國外入養別, 內譯別(인건비, 아동양육비, 절차수속비, 입양기관 운영비)로 산출하는 것이다. 둘째, 입양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이 곧 양친이 부담해야 할 입양비가 될 수 없다는 전제하에서, 국가가 책임져야 할 입양비와 양부모가 부담해야 할 입양비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입양기관이 양친이 될 자로부터 수납할 수 있는 입양비 책정의 基礎資料를 제공함으로써 정부가 입양비의 상한선을

책정하는데 필요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研究內容은 다음과 같다. 우선 第2章에서는 입양비용을 분석하고 산출된 입양비용을 분담하는 적정방식에 대한 논의를 위한 몇가지 기본원칙을 제시하기 위해 入養에 대한 觀點을 고아구제 차원, 양부모 중심, 아동복지 관점의 세가지로 정리하고, 국가에 의한 재정적 개입수준에 따른 入養費用負擔類型을 제시하고자 한다.

第3章에서는 적정 入養費用과 分擔方式을 산출하기 위한 基本原則을 入養費用의 現實化, 國內入養의 活性化에 寄與, 國家의 責任強化의 세가지로 제시하며, 그 근거를 밝힌다.

第4章에서는 적정 입양비용을 산출하기 위해 4개 국외입양 및 국내입양 전문기관의 諸特性을 분석하고, 入養機關에서 제시한 入養費用 산출내역을 통해 입양에 소요되는 경비의 必須項目을 도출하며, 항목별 適正費用을 국외입양 및 국내입양별로 계산하고 算出根據를 밝힌다.

第5章에서는 모든 입양대상아를 國內入養하는 경우 필요한 입양비를 산출하기 위해, 國內入養 專門機關 1개와 영아시설 부설 국내입양기관 1개의 자료를 분석하여 입양에 소요되는 경비의 必須項目과 항목별 適正費用 및 算出根據를 제시한다.

第6章에서는 본 연구에서 산출한 입양비용 중 국내입양만을 실시할 경우에 대비한 費用分擔方案을 밝히기 위해 현행 국고보조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국내입양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第7章에서는 앞의 분석결과를 간단히 설명한 후에, 입양비 계산상의 誤差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과 政策建議 사항들, 특히 국가가 부담해야 할 비용에 관련된 건의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3. 研究方法

위의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1996년 현재 전국에 걸쳐있는 28개 입양기관 중에서 국외입양과 국내입양 업무를 모두 실시하는 입양기관 4개 기관(전수), 그리고 국내입양만을 전담하는 국내입양 전문기관 1개 기관(전수), 나머지 23개 국내입양 지정기관 중 1개 기관에 대해 입양비용 算出內譯 資料를 수집·분석하였다. 또한 입양비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위의 기관들을 1~3회 정도 訪問하였다.

본 연구의 分析對象이 되었던 입양기관은 다음 <表 1-1>과 같다.

<表 1-1> 本 研究의 分析對象 入養機關

구분	입양기관명(가나다순)
해외입양과 국내입양을 모두 담당하는 입양전문기관	대한사회복지회 동방아동복지회 한국사회봉사회 홀트아동복지회
국내입양만을 담당하는 입양전문기관	성가정입양원
국내입양 지정기관	충북희망원

둘째, 입양기관을 통해 얻은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적정 입양비용을 산출하기 위해, 入養特例法上的 基準이나 도시임금근로자의 평균임금 등을 고려하여 입양에 소요되는 경비의 必須項目別 適正費用을 계산하였다.

셋째, 입양아동수 및 입양정책의 변화과정, 사회복지 비용부담에 관한 既存 統計 및 文獻資料를 분석하였다.

II. 理論的 背景: 入養에 대한 세가지 觀點과 入養費用 負擔類型

1. 入養에 대한 세가지 觀點

본 연구에서는 入養에 대한 세가지 이념형(ideal type)을 제시해봄으로써 入養에 대한 基本的인 立場을 정리해보고, 兒童福祉에 入각한 入養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일반 國民의 認識 變化와 함께 國家의 강력한 책임의지가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가. 孤兒救濟 次元의 入養

이 관점은 入養을 버려진 아동에 대한 전통적인 해결책의 하나인 고아구제의 차원에서 인식한다. 英國과 美國에서도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걸쳐서 아동기와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이해가 싹트게 되면서 법적, 사회적으로 入養權利가 인정되기 시작하기 전까지는 구빈원이나 사립고아원을 통한 고아구제 차원의 入養이 이루어졌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³⁾.

이 관점에서는 아동의 基本權이나 養父母의 개별적 욕구는 그리 중요시되지 않고, 기본적인 生存의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대두된다. 따라서 친가정으로부터 버림받은 아동을 “누구라도 데려가서 먹이고 재워주기만 하면 되는” 수준으로서 구빈적, 잔여적(residual) 보호수준에

3) 영국에서는 1926년에 入養법이 제정되고, 미국에서는 1851년 메사츄세츠주를 시작으로 1929년에 모든 주에서 入養법이 제정되었다.

머무르기 쉽다. 1950, 60년대의 우리 나라에서도 전쟁고아 및 혼혈아, 그리고 절대빈곤으로 인한 棄兒에 대하여 국외입양이 救貧的 차원에서 이루어진 바 있다.

入養實務에서는, 입양을 신청하는 사람을 慈善을 베푸는 救濟者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다. 이때 國家의 개입여지는 거의 없으며, 설사 개입의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財政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소극적으로 민간기관의 입양을 방관하는 자세일 수 밖에 없게 된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입양비가 거의 존재하지 않거나 혹은 입양기관에 대한 후원금 명목으로 입양기관의 운영비를 약간 보조하는 수준의 입양비가 지급되는 경향을 보인다.

나. 養父母 중심의 入養

사회전체적으로 아동의 基本權이 중시되지 못하고 입양이 兒童福祉의 한 方式으로 정착되지 못한 사회에서는 養父母 중심의 입양이 이루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즉 입양이 親家庭을 가지지 못한 아동에게 바람직한 가정을 제공하는 것이라는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아동의 복지욕구를 중요시하기보다는, 입양을 신청하는 양부모의 욕구(need)가 보다 중요시되기 쉬운 것이다.

이러한 입양관을 가진 사회에서 養父母는 아동에게 더 나은 삶의 環境을 제공하려는 意圖를 갖기보다는, 양부모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兒童을 選擇하고 자신이 원하는 입양방식을 고수하려는 입장을 보인다.

入養實務의 입장에서는, 양부모는 불행한 아동을 救濟하는 사람이 아니라, 親子를 갖지 못한 상실감으로 고통을 받고 있어서, 친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은 상실감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아동과 마찬가지로 社會事業的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클라이언트이다. 그리고 입양

가정은 친부모-자녀로 이루어진 가정과는 달리 입양으로 인한 독특한 문제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사회사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Kirk, 1988).

이러한 입양관을 가진 사회에서는 國家가 아동의 基本的 權利를 보장하려는 강한 責任意志를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입양은 입양을 원하는 양부모와 입양기관간의 직접적인 거래에 의해 이루어지기 쉬우며, 國家의 개입여지는 크지 않다. 정부는 입양대상 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責任意志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財政負擔에 대한 의지도 극히 미미하다. 따라서 정부는 재정부담을 거의 하지 않는 상태에서, 입양이 施設保護보다는 나은 代案이라고 보기 때문에⁴⁾, 양부모와 입양기관 사이에서 다소 방관적인 입장을 취하고, 消極的으로 개입할 수밖에 없게 된다.

정부는 주로 入養機關을 대상으로 각종 공권력을 행사하여 規制 및 監督을 행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나 정부의 구체적인 재정부담이 없는 한, 規制의 實效性은 매우 약할 수 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입양을 원하는 양부모의 수요가 계속 존재하고, 요보호아동에 대한 입양서비스를 대체할 수 있는 공적 서비스가 준비되어 있지 않는 한, 정부의 規制는 形式的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입양비용은 受益者 負擔原則에 의거하여, 입양서비스를 요청하고 서비스를 받은 양부모가 부담하는 것이 당연시되는 경향을 보인다. 그리고 입양비는 입양기관의 自律에 맡겨지기 쉬우며, 입양기관은 비영리법인일지라도 市場原理를 따를 가능성이 높다.

이때 입양비용이란 양부모로 하여금 아동의 구매자로서 높은 商品價値를 가진 아동만을 선정하게 하는 기능을 할 위험마저 가진다. 즉

4) 입양에 대해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정부는 다른 요보호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책임의지도 결여되어 있기 쉬우므로, 시설보호의 수준도 낮을 것이다.

양부모의 자격은 입양비용을 負擔할 수 있는가의 여부로 한정되고, 좋은 양부모가 되기 위한 다른 資格條件은 완화되기 쉬우며, 반면 입양되는 兒童의 조건은 점점 까다로워짐으로써 가정을 필요로 하는 아동, 양자를 원하는 양부모가 많은 현실에도 불구하고 입양이 성립되지 않는 상황을 조장할 수도 있는 것이다(박인선, 1995:291).

다. 兒童福祉의 관점에 입각한 兒童中心 入養

이 관점에서 입양은 입양을 원하는 양부모에 대한 서비스라는 차원을 넘어서, 兒童福祉 增進을 위한 서비스의 한 分野로 인식된다. 즉 좋은 교육적 환경에서 幸福하게 성장할 權利로서의 아동의 基本權을 무엇보다도 중시하고, 이같은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國家 및 社會의 의무를 인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국제연합 총회에서 확인된 바 있는 것으로서, 1989년 국제연합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兒童의 權利에 關한 國際協約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에서는 아동과 관련된 모든 결정에 있어서 兒童의 利益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제3조 1항)고 명시되어 있다. 특히 위의 협약은 入養制度를 인정하거나 허용하는 당사국은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였다(제21조)⁵⁾.

아동복지의 증진을 추구하는 이러한 관점은 아동의 기본적인 생존권의 확보 뿐만 아니라 아동이 누릴 수 있는 생활의 질을 중요시한다는 점에서 구빈적 입양관과 다르다. 또한 양부모의 개별적 욕구보다는 아동의 개별적 욕구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양부모 중심의 입양관과도 구별된다.

5) 아울러 國際入養은 아동이 위탁양육자나 입양가족에 두어질 수 없거나 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出生國에서 양육될 수 없는 경우의 대체수단으로 고려될 수 있다(제21조 b)는 점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입양관을 가지고 있는 사회에서 양부모는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아동을 선택하거나 自身이 원하는 입양방식을 고수하기보다는, 입양이 兒童에게 더 나은 삶의 環境을 제공하기 위한 가정을 제공하려는 노력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兒童中心의 入養方式을 받아들인다.

그리고 入養機關은 가정방문 등을 포함하는 철저한 事前調査와 教育을 통해 아동의 복지를 보장할 수 있는 양부모를 選定하고, 아동의 적응상태 등을 파악하기 위한 事後管理에 노력을 기울인다. 즉 입양전에 양부모가 아동에게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양부모의 조건을 중요시하며, 破養은 양부모의 자격이 부족한 경우에만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러한 사회에서 國家는 保護를 필요로 하는 모든 아동에 대한 확고한 責任意志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⁶⁾. 그리고 입양사업은 아동에게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해줄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이루어지는 國家的 兒童福祉 對策의 일환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이때 아동복지의 관점에 입각한 입양을 활성화시키려는 國家의 적극적인 責任意志는 직접적인 財政支援의 형태로 나타날 것이며, 정부의 재정지원의 내용과 방법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세가지 관점 중에서, 입양이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복지서비스여야 하며, 국가 및 사회는 아동이 좋은 교육적 환경에서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의무를 져야 한다는 兒童福祉 觀點을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받아들이고자 한다.

6) 요보호아동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제공은, 미국과 같이 전통적으로 국가개입을 거부하고 민간기관의 자발적인 문제해결 노력에 의존하였던 국가에서조차, 정부에 의한 공적지출로 충당할 정도로 국가의 책임이 중시되는 분야이다.

2. 入養費用 負擔類型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서 費用이란 사회복지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지불하는 대가를 의미하며, 특히 비영리기관의 경우 사업에 소요된 支出을 보상하기 위해 지출의 일부 혹은 전부를 요구하기도 한다. 이것은 영리기관이 收益을 창출하기 위해 비용을 요구하는 것과는 달라서, 상품가치가 높을수록 높아지는 市場價格과는 현격한 差異를 보인다.

따라서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費用을 사용자에게 부담시키는 방식은 선진 복지국가들에서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社會福祉 財源調達 方式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선진 복지국가들의 경우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使用者로 하여금 전체 지출의 一部分을 부담하게 하고, 國家가 나머지를 부담하는 경우도 많다.

일반적으로 복지서비스의 공급유형을 국가에 의한 재정적 개입수준에 따라 분류한 결과는 다음 <表 2-1>과 같다.

<表 2-1> 公的介入 水準別 福祉서비스 供給體系 類型

분류	유형	상품생산	상품판매	판매가격 (생산가격)	상품내용 (서비스수준)
사회복지 서비스	(1)	×	×	×	×
	(2)	×	×	×	공적규제
공적복지 서비스	(3)	×	×	공적규제/지원	공적규제
	(4)	×	공적독점	공적규제/지원	공적규제
	(5)	공적독점	공적독점	공적규제	공적규제

註: ×는 공적인 관여가 없는 것을 뜻함.

資料: 이혜경, “탁아정책 모델과 재정제도의 선택,” 『우리 아이들의 육아현실과 미래』, 한울, 1991, p.126.

본 연구에서는 위의 분류를 입양에 적용시켜 입양비용 부담유형을 크게 5가지의 유형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우선 兩 極端에 다음과 같은

2개의 유형이 존재할 수 있다.

① 國家가 입양서비스를 직접 提供하고, 費用도 全額 負擔하는 유형

이것은 입양서비스를 국가 혹은 공공기관이 직접 제공하고, 입양에 드는 비용도 전액 租稅收入을 통해 국가가 부담하는 유형이다. 이때 입양을 원하는 양부모는 서비스를 無料로 혹은 實費로 이용하게 되기 쉽다.

② 입양서비스 및 비용을 市場메카니즘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유형

이 유형은 사립사영 입양기관은 입양과 관련된 市場價格을 지불할 수 있는 양부모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극히 제한적인 경우(예를 들면, 심한 장애아의 경우)에만 例外로 하는 경우이다. 이때 국가는 입양 및 입양비용에 대해 自由放任의 태도를 가지며, 가격도 거의 규제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양 극단적 유형 사이에 다음과 같은 세가지 입양비 부담 유형이 존재할 수 있다.

③ 私立私營 입양기관에서 입양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는 價格 및 서비스 수준을 規制監督하는 유형

이 유형에서 입양서비스는 사립사영기관을 통해서 제공된다. 국가는 직접 財政負擔을 하지 않거나 지극히 낮은 수준으로 부담하지만, 입양비용의 價格基準을 제시하고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유지·확보하기 위해 公 권력을 행사하여 서비스 水準을 規制·監督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때 국가의 직접적 재정부담이 없으므로 실질적 규제효과는 줄어들 수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유형은 가격과 서비스 수준에 대한 국가의 직접적인 개입이 있다는 점에서 앞의 유형 ②와 구별된다.

이 경우 입양기관이 다른 收入源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입양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결국 養父母가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입양비용은 저소득층이 접근하기 어려울만큼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이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사람만이 양부모로 選定될 가능성이 높다. 즉 공공연히 명시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양부모는 中産層 이상에 국한되기 쉽다는 특성을 가진다.

- ④ 私立私營 입양기관에서 입양서비스를 제공하되, 국가가 補助金을 통해 가격 및 서비스 수준을 實質的으로 규제감독하는 유형

입양서비스의 제공을 사립사영기관에 맡기되, 양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입양비용, 서비스내용 및 질적 수준에 관해 정부가 基準을 제시하고 規制·監督하며, 이 기준이 실제로 지켜질 수 있도록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이다. 즉 입양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보조함으로써 결정된 가격과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는 실질적인 효과를 기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위의 유형③과 구별된다.

이때 國家의 補助方法은 또 다시 다음의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Gilbert et al., 1993:170~171). 즉 첫째는 無條件的인 一括補助金 (Lump-Sum Grants)으로서, 기관의 모든 목표를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기관중심적(Agency-Oriented) 보조방식이다. 둘째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 特定內譯을 指定하여 支援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면, 人件費 보조를 통해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든가, 서비스 이용료를 낮추어 低所得層의 接近을 쉽게 한다든가 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부족분에 대해서는 국고를 투입하는 방법이다.

- ⑤ 國家가 입양서비스의 제공을 사립사영 입양기관에 委託하되, 입양비용을 거의 전부 부담하는 유형

입양서비스의 제공은 사립사영기관에 맡기되, 서비스를 이용자(양부모)에게 제공하는 과정에 정부가 직접 介入하기 위해 공급비용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경우이다. 즉 국가가 양부모 選定에 관한 權限과 서비스 供給權限을 독점하기 위해서 공급비용을 국고부담으로 하여, 양부모에게 무료 혹은 사회시장 가격으로 공급한다. 이는 앞의 ④유형

에 비해 국가의 재정적인 책임이 강화된 경우로서 미국의 서비스 買入(Purchase of Service) 제도가 바로 이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예이다. 예를 들면, 기본적 節次手續費 정도만 양부모가 부담하고, 인건비, 아동양육비, 기관운영비 및 홍보비 등을 모두 국가가 부담하는 대신 양부모 선정에 대한 權限이 국가에게 있으므로 입양기관은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다. 이 유형은 이미 입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립사영 입양기관의 接近性과 專門性을 활용함으로써 특수한 집단의 욕구에 더 잘 반응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정부의 入養政策을 강력히 추진하고, 양부모나 입양대상 아동을 확보하려는 입양기관들간의 지나친 競爭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이상에서 제시한 세가지 관점과 입양비 부담방식은 다음 <表 2-2>와 같이 要約될 수 있다.

<表 2-2> 세가지 觀點別 財源調達 및 入養費 負擔方式

구 분	구빈적 입양	양부모중심 입양	아동중심 입양
특징	아동의 기본적 생존을 위한 구빈적, 잔여적(residual) 접근	양부모의 선택과 입양 방식이 중요시 되는 접근	행복하게 성장할 아동의 기본권 중시
국가의 개입	거의 없음.	소극적 개입 입양기관에 대한 규제중심	적극적 개입
재원조달방식	민간차원의 자선에 의존	주로 양부모가 부담하는 입양비에 의존	정부의 재정부담 + 양부모의 입양비
입양비 결정방식	입양비가 거의 존재하지 않음.	입양기관의 자율적 결정, 시장가치 우세	정부의 가격통제 기능이 강함. 양부모부담 입양비 결정에도 사회적 가치 고려함.

Ⅲ. 研究의 基本原則

아직도 우리 나라에서 兒童福祉의 觀點에 입각한 아동중심 입양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은, 입양실무의 책임이기 이전에 우리 社會 全般의 문제일 것이다. 특히 국가가 행복하게 성장할 아동의 基本權과 요보호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責任意志를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입양기관에 대해 규제중심의 消極的 介入을 해왔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국외입양이 시작되었던 戰後의 사정과는 판이한 社會經濟的 與件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요보호아동의 보호문제를 國外入養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를 제기한다. 일반 국민들도 國內入養에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따르고, 특히 장애아동의 국내입양 事例는 거의 없다는 이유 때문에 국외입양이 시설보호보다 나은 대안이라는 데에 쉽게 同意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내입양이 어렵고, 국외입양이 시설보호보다 나은 대안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보다 深層的인 分析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본 연구의 기본원칙을 제시함에 있어서, 국내입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고, 아울러 입양비의 현실화라는 원칙과 그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1. 入養費의 現實化

그동안 정부는 1982년에 국외입양의 입양비로 US\$ 1,450弗을 제시한 적이 있을 뿐, 국내입양비의 기준이나 사회경제적 여건변화 및 물가수준

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재조정된 국외입양비 기준은 제시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입양비용에 대한 論議 자체가 타부시되어 왔던 분위기에서 벗어나 입양비용을 산출하고 그에 기초하여 合理的인 入養費用分擔方式이 공식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하는 시도의 일환이다. 정부가 제시하는 입양비의 기준이 현실적이지 못할 때, 입양비는 후원금 혹은 기부금이라는 跛行的인 형태로 징수됨으로써 입양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져오고, 양부모의 부담을 오히려 加重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입양기관들이 現在 받고 있는 入養費의 水準과 4개 입양기관으로부터 입수한 入養費用 算出資料를 참고로 하여 입양비의 수준을 현실화하기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

1995년 말 현재, 국외입양과 국내입양을 모두 실시하는 4개의 입양전문기관이 양부모로부터 징수하고 있는 國內入養費는 최저 120만원에서 최고 170만원까지이며, 국외입양비는 최저 US\$3,550에서 최고 US\$6,450 정도인 것으로 나타난다(表 5-5 참조). 한편 우리 나라의 입양기관들이 받고 있는 國外入養費의 수준은 國際比較를 통해볼 때에도 낮은 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表 4-1 참조)⁷⁾.

2. 國內入養의 活性化에 寄與

본 연구는 入養費用 분석에 초점을 맞추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입양비용과 입양비용의 분담방식을 제시하는 작업은 결코 가치중립적(Value Free)인 것이 될 수 없다고 보는 입장에 기초하여 있다.

7) 우리나라의 해외입양비가 낮은 이유 중의 하나로서 변호사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들 수 있다.

〈表 3-1〉 國外入養費의 國際比較

국가	입양 아동수 ¹⁾ (단위:명)	총입양비용 ²⁾ (단위:\$)		대기기간 (단위: 월)	양부모 조건	
		입양비	기부금		결혼상태	연령
한국	1,765	8,710	3,500	9~12	3년 이상의 결혼기간	45세 미만
필리핀	358	6,000	3,500	9~18	3년 이상의 결혼기간	남편:25~45세 아내:25~40세
베트남	105	8,600	3,500	6~9	부부 또는 독신여성	엄격한 제한 없음
칠레	61	12,000	2,500	3~10	5년 이상의 결혼기간	30~45세
중국	330	12,125 (부모중 1인의 교통비 포함)	2,500	9~12	부부 또는 독신	35세 이상
구아테말라	-	18,665~ 20,165	2,500	9~15	부부 또는 독신여성	-
러시아		15,050	2,500	6~9	부부 또는 독신여성	-
총입양아수	7,348					

註: 1) 입양아동수는 1993년도 자료

2) 입양비는 1996년 현재 미국 메릴랜드주의 경우임.

資料: Holt International의 내부자료

따라서 본 연구는 입양비용산출과 분담방식의 제시가 국내입양의 활성화라는 정책방향에 부합되어야 한다는 기본원칙 하에서 이루어졌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에 국내입양의 需要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실제로 국내입양률은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즉 <表 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6~90년의 기간 동안 26.8%를 기록했던 국내입양 비율은 1991~95년에는 34.6%로 증가하였다. 개인들끼리의 불법 비밀입양까지 감안하면, 실제 국내입양의 수요는 더 높을 것이며(송순화, 1994),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障礙兒童의 국내입양 사례도 미미하지만, 증가하는 추세이다.

〈表 3-2〉 入養兒童數의 變化推移(1955~95년)

(단위: 명)

연도	국외입양아동수 (연평균입양아수)	국내입양아동수 (연평균입양아수)	계(연평균입양아수)
1955~57	1,216(405)	알 수 없음	1,216(405)
1958~60	2,532(844)	168(56)	2,700(900)
1961~70	7,275(727)	4,206(420)	11,481(1,148)
1971~80	48,247(4,824)	15,304(1,530)	63,551(6,355)
1981~85	35,078(7,015)	15,424(3,084)	50,502(10,100)
1986~90	30,243(6,048)	11,079(2,215)	41,322(8,264)
1991~95	10,974(2,194)	5,817(1,163)	16,791(3,358)

資料: 1955~57: 보건사회부, 『보건사회통계연보』, 1962.
나머지는 보건사회부, 내부자료

둘째, 심한 장애아동과 같이 국내입양이 곤란한 아동의 경우 한국내 施設保護보다는 국외입양이 더 나은 代案이라는 논리는, 장애아동 보호에 대한 일반 국민의 認識水準이 낮고 社會的 與件이 미숙한 지금의 상황에서는 타당한 일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러한 아동들을 계속 국외입양시킴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要보호아동에 대한 福祉對策은 영원히 마련되지 못할 것이다. 즉 短期的이고 近視眼的인 해결책에 안주하는 것은 보다 長期的인 兒童保護對策을 마련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현실적으로 “국내입양이 곤란한” 아동의 判定은 결국은 입양기관의 판단에 맡겨질 수밖에 없으므로 국내입양이 곤란한 아동의 判定基準의 公正性이나 客觀性은 결여될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면 早産兒의 경우, 정상분만아에 비해 장애를 가질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이 모두 장애아인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입양정책이 국내입양을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원칙하에서 입양비용을 산출하고자 하였다.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민의 인식수준과 사회적 여건의 성숙이 필요하다

며, 이를 위해서는 개별 입양기관의 양부모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의 홍보가 아니라 국민의 인식을 제고시킬 수 있는 홍보가 요구된다. 또한 의료문제를 가진 아동의 국내입양이 미미하다는 현실에 기초하여 의료문제를 가진 아동의 국내입양이 활발히 이루어질 경우에 적용시킬 수 있는 국내입양비도 산출하고자 한다. 이는 의료문제를 가진 아동의 국내입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입양비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시도이다.

3. 國家의 責任強化

서비스 사용자에게 복지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징수하는 방식은 가장 보편적인 재원조달 방법 중의 하나이다. 비용징수방식의 長點으로는 일반적으로, ① 서비스 사용자로 하여금 심리적 측면에서 스티그마(stigma)나 羞恥心을 느끼지 않게 한다는 점, ② 단순한 慈善이 아니라라는 점을 보인다는 상징적인 측면, ③ 社會的 責任感을 강화시킨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Parker, 1980:24~39).

그러나 비용징수방식은 아무리 적은 비용이라도 부담이 될 수 있는 수요자에게는 사용을 抑制하는 효과를 가져오거나, 혹은 자원이 부족할 때 優先順位에서 밀려나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의 분야에서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전체 비용의 一部만을 부담하게 하거나, 혹은 서비스 수요자의 所得水準 등을 고려한 비용을 계산함으로써 빈곤한 클라이언트를 보조하는 방식을 사용하기도 한다(Gilbert et al., 1993:167).

위와 같은 논리는 양부모가 부담하는 入養費에도 적용될 수 있다. 즉 양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입양비는 市場商品과는 달리, 상품의 생산비를 기초로 삼는 費用主義에 의존해서는 안되며, 입양욕구를 방해하지 않을 만큼의 가격이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① 국가가 입양에 드는 비용 중 일부를 보조하고, ② 입양이 관계자들에게 부당한 재정적 이익을 주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하며, ③ 입양기관의 부당한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는 방법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특히 요보호아동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제공은 정부의 공적지출로 충당되어야 하는 국가의 책임에 관한 사항이다. 즉 아동의 친부모가 아동을 보호할 수 없거나, 보호하는 데 실패했을 때, 국가가 아동을 보호하고 부모로서 봉사하는 것은 오래전부터 확립되어 온 국가역할 중의 하나이다. 이것은 민간기관의 장점과 중요성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민간기관은 재정상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안정되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고 인식했기 때문이다. 특히 특별한 문제를 가진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케이스웍 상담과 양육가정(Foster Home), 입양가정(Adoptive Home), 그룹홈(Group Home)에 배치하는 일 등은 모두 국가 및 공공기관의 책임이다(Kammerman & Kahn, 1989:192~195). 따라서 정부는 입양비용의 일부 혹은 상당부분을 보조함으로써 입양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양부모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가 국내입양의 활성화라는 정책방향에 부응하기 위해 國內入養에 드는 비용 중 상당부분을 보조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때 정부가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의 根據로는, 1995년 개정된 입양특례법 제 23조 2항에 명시된 바 있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양기관의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는 조항을 들 수 있다.

한편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에는 입양의 양육지정이 관계자들에게 부당한 재정적 이익을 주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제21조 d)고 명시되어 있다.

IV. 國內 및 國外 入養專門機關의 入養費用 分析結果

1. 入養費用 算出을 위한 基礎資料 分析

가. 4개 入養機關의 入養現況

이 章에서는 정부가 지정한 27개의 入養기관 중 國內入養과 國外入養을 모두 담당하고 있는 4개의 入養專門機關의 자료를 중심으로 國內入養비용과 國外入養비용을 산출하고자 한다. 이 4개의 入養기관은 國外入養의 100%, 國內入養의 70.6%(1995년 현재)를 담당하는 등 우리나라 入養업무의 거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入養專門機關이라는 점에서 이들 기관의 자료를 분석하여 적정한 入養비용을 산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 될 것이다.

4개 入養기관의 入養현황 및 國內/國外入養의 比重을 1995년도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본 <表 4-1>에 의하면, 각 入養기관마다 연간 入養規模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으며, 전체 入養중 國內入養이 차지하는 비율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있다. 가장 入養아동수가 많은 A입양기관은 1,486명을, B입양기관은 1,047명의 아동을 入養시키고 있다. 그 다음은 C입양기관으로 563명을 入養시키고 있으며, D입양기관은 132명을 入養시키고 있다.

전체 入養 중 國內入養이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A입양기관과 D입양기관이 가장 낮아서 각각 약 27%, 23%이며, B입양기관이 35%, C입양기관이 42%이다.

〈表 4-1〉 入養機關別 入養現況 및 構成(1995年)

(단위: 명, (%))

	A입양기관	B입양기관	C입양기관	D입양기관
인수된 아동수 ¹⁾	1,393	630 ²⁾	653	133
건강아동	1,143 (82.1)	408 (64.8)	521 (79.8)	88 (66.2)
미숙아	180 (12.9)	-	-	34 (25.6)
장애아동	70 (5.0)	222 ³⁾ (35.2)	132 ⁴⁾ (20.2)	11 (8.3)
입양의 구성	1,486	1,047	563	132
국내	394 (26.5)	368 (35.1)	235 (41.7)	30 (22.7)
해외	1,092 (73.5)	679 ⁵⁾ (64.9)	328 (58.3)	102 (77.3)
입양아의 특성				
국내입양	394	368	235	30
• 건강아동	380 (96.4)	368 (100.0)	235 (100.0)	30 (100.0)
• 의료문제아동	14 (3.6)	0	0	0
해외입양	1,092	658	328	102
• 건강아동	567 (51.9)	342 (52.0)	157 (47.9)	57 (55.9)
• 장애아동 ⁶⁾	525 (48.1)	316 ⁷⁾ (48.0)	171 ⁸⁾ (52.1)	45 ⁹⁾ (44.1)

註: 1) 1995년도에 인수된 아동 중 일부는 아직 입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각 입양기관별 아동인수 현황과 그 특성을 파악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임.

2) 총인수된 1,040명의 아동중 최종적으로 보호조치된 아동임. 총인수아동의 33.4%인 347명이 미조치 상태에 있음.

3) 의료문제아로 인수시 저체중아는 198명임.

4) 미숙아 포함

5) 국내의 외국인에게 입양된 21건 포함

6) 의료문제아동과 미숙아동 포함

7) 인수시 저체중아동 165명(그 중 계속 의료문제를 갖고 있는 아동은 85명)과 장애아동 33명 포함

8) 저체중아 112명과 장애아 59명 포함

9) 인수시 저체중아 34명 포함

제기관의 국외입양아 중 건강한 아동이 차지하는 비율은 50% 내외이다. 그러나 障礙兒童으로 분류된 아동 중에는 인수시의 低體重兒가 상당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서 실제 장애아동의 비율은 훨씬 낮을 것으로 생각된다. B입양기관의 경우를 보면 실제적인 장애아동은 인수시 저체중아로 계속 의료문제를 가지고 있는 아동 85명과 선천적 장애아동 33명으로 국외입양아동의 17.9%이다.

한편 입양기관에서의 장애아동의 分類基準을 살펴보면, 뇌성마비, 사시기형, 언청이, 선천성 심장병, 선천성 이상, 사고, 매독 등의 질병을 가진 아동, 혼혈아 등이 장애아로 분류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류에는 지속적인 治療와 手術로 극복될 수 있는 아동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으며 그들의 국내입양의 가능성은 훨씬 클 것으로 생각된다.

나. 入養機關의 歲入과 歲出現況

각 入養機關이 제출한 결산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歲入과 歲出現況을 비교·검토하였다. 그러나 각 입양기관이 제시한 세입과 세출은 입양외의 사업(장학후원, 거택구호, 장애아동후원, 특별지원)에 사용된 제반 비용도 포함하고 있고, 그러한 입양외 사업의 규모와 구성이 기관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構成比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歲入을 분석한 <表 4-2>에 의하면, 양부모로부터 공식적인 入養費로 받고 있는 금액보다는 비공식적으로 받고 있는 入養寄附金의 비중이 더 높은 실정이다. 또한, 歲出을 분석한 <表 4-3>에 의하면, 세출 중 사업비의 비중이 가장 높아 지출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인건비와 운영비의 비중이 높다.

<表 4-2> 入養機關別 歲入現況

(단위: %)

세입원	A입양기관	B입양기관	C입양기관	D입양기관
총세입 ¹⁾	100.0	100.0	100.0	100.0
입양관계수입				
입양수속금	29.9	37.5	31.6	32.7
입양기부금	35.7	43.1	60.3	66.9
기부금	9.4	8.2	3.5	0.0
법인전입금	14.5	10.8	-	0.0
기타 ²⁾	10.5	0.3	4.6	0.4

註: 1) A입양기관과 C입양기관은 94년도, B입양기관, D입양기관은 95년도 자료임.
 2) 기타는 이월금, 잡수입 등을 포함하는 것임.

<表 4-3> 入養機關別 歲出現況

(단위: %)

세출내역	A입양기관	B입양기관	C입양기관	D입양기관
인건비	32.5	35.5	32.3	48.8
여비	1.0	-	1.8	0.3
사업비	43.2	46.8	48.5	41.5
운영비	19.9	16.0	14.5	8.8
홍보비	1.4	1.8	1.1	-
기타	2.0	-	1.8	0.7
총세출 ¹⁾	100.0	100.0	100.0	100.0

註: 1) A입양기관과 C입양기관은 94년도, B입양기관과 D입양기관은 95년도 자료임.

다. 入養機關의 人的構成

각 入養機關의 人的構成을 入養特例法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에 기초하여 재구성한 결과를 <表 4-4>에 제시하였다. 복지법인의 총인원중 입양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제시된 인원은 A입양기관과 B입양기관의 경우는 40% 내외이고 C입양기관과 D입양기관의 경우는 50% 정도를 조금 넘고 있다.

入養特例法에 의하면 최소한 입양아동 50명당 아동상담원을 한 명 두도록 되어있으나, 입양기관마다 실제 아동상담원 대비 입양아동수에 큰 차이가 있다. 兒童相談員 1명이 적게는 연간 20명, 많게는 66명의 입양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입양규모가 중간수준인 입양기관을 기준으로 하여 보면 아동상담원의 2배에 해당하는 補助人力(보호시설이나 부속의원에서 직접 양육에 관련 하는 인원, 서류처리 등 행정적 보조인력 및 기관운영을 위한 관리직)이 고용되어 있다. 이러한 상담원 대비 보조인력수는 입양기관마다 相異하다. B입양기관과 C입양기관의 경우는 보조인력수가 아동상담원의 2배 정도이나, A입양기관은 상대적으로 낮아 보조인력이 아동상담원의 1.2배 정도이다. 한편, D입양기관의 경우는 보조인력이 아동상담원의 7배에 달하고 있다. 제입양기관이 전체적으로 입양규모에 비하여 보조인력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아동상담원과 보조인력의 業務分擔方式에 따라서 즉, 아동상담원이 본래의 전문적인 일만 담당하는가 아니면 행정적인 업무까지 담당하는가에 따라서 아동상담원과 보조인력의 구성비가 기관별로 상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醫療人の 경우 入養特例法에 의하여 의사 1인 이상을 고용 또는 촉탁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는 모든 기관에서 준수되고 있다. 그러나 기관별로 의료인 대비 입양아수에는 큰 差異가 있다. 규모가 작은 기관의 경우 의료인 1인당 입양아수가 적은 편이다.

의료인의 構成에 있어서도 機關別 差異가 있다. A입양기관과 B입양기관의 경우는 看護士의 수가 看護補助士보다 많으나 D입양기관의 경우는 간호보조사가 더 많이 고용되어 있다. 또한 의료인의 구성이 다양하며 자격증별 賃金水準의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이러한 의료인의 구성비가 입양에 소요되는 비용에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임금수준이 매우 높은 의사를 고용하는가 또는 囑託으로 확보하고 있

는가의 여부도 입양소요 비용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입양대상 兒童의 狀態를 판단함에 있어서, 특별한 의료적 관심을 요하는 아동인지 아니면 위탁모에게서 양육되어도 문제가 없는 아동인지를 판단하는 基準이 기관마다 상이할 수 있다. 의료인력의 고용규모와 형태가 이러한 判斷에 기초하여 결정될 것으로 생각된다.

〈表 4-4〉 入養機關別 人的構成

(단위: 명, %)

	A입양기관	B입양기관	C입양기관	D입양기관
총인원	145	91	92	21
재단 총인원 대비	145/366	91/209	92/181	21/40
입양관련종사자	(39.6)	(43.5)	(50.8)	(52.5)
기능별 구성비				
아동상담원	62(48.4)	28(30.8)	28(30.4)	2(9.1)
보조인력	74(44.5)	52(57.1)	60(65.2)	14(77.3)
의료인	9(7.0)	11(12.0)	4(4.3)	5(13.6)
의료인 구성	의사: 1인 약사: 1인 간호사: 3인 간호보조:2인 임상병리:1인 X선기사:1인	의사: 1인 - 간호사: 6인 간호보조:3인 임상병리:1인 -	- - 간호사: 4인 - -	(촉탁의:2인) 간호사: 1인 간호보조:4인 - -
각 기능별 담당입양아수				
아동상담원 1인당	1,486/62=24	1,047/28=37	563/28=20	132/2=66
입양아수		1,047/52=20	563/60=9	132/17=7
보조인력 1인당	1,486/74=20	1,047/11=95	563/4=141	132/3=44
입양아수				
의료인 1인당	1,486/9=165			
입양아수				
조직구성별 인원 ¹⁾				
사무국(총무국)	26(25.0)	13(18.8)	13(27.7)	7(33.3)
일시보호소	20(19.2)	18(26.1)	12(25.5)	11(52.4)
부속의원	12(11.5)	10(14.5)	0(0.0)	
국내외 입양관련부서	46(44.2)	28(40.6)	22(46.8)	3(14.3)

註: 1) 이는 서울본부에 근무하는 인원만을 대상으로 하여 살펴본 것임. A입양기관의 경우는 41명(전체 인원의 23.5%), B입양기관의 경우는 22명(전체 인원의 24.2%), C입양기관의 경우는 45명(전체 인원의 48.9%)이 지방사무소에서 입양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라. 入養機關에서 실시하고 있는 現行 入養節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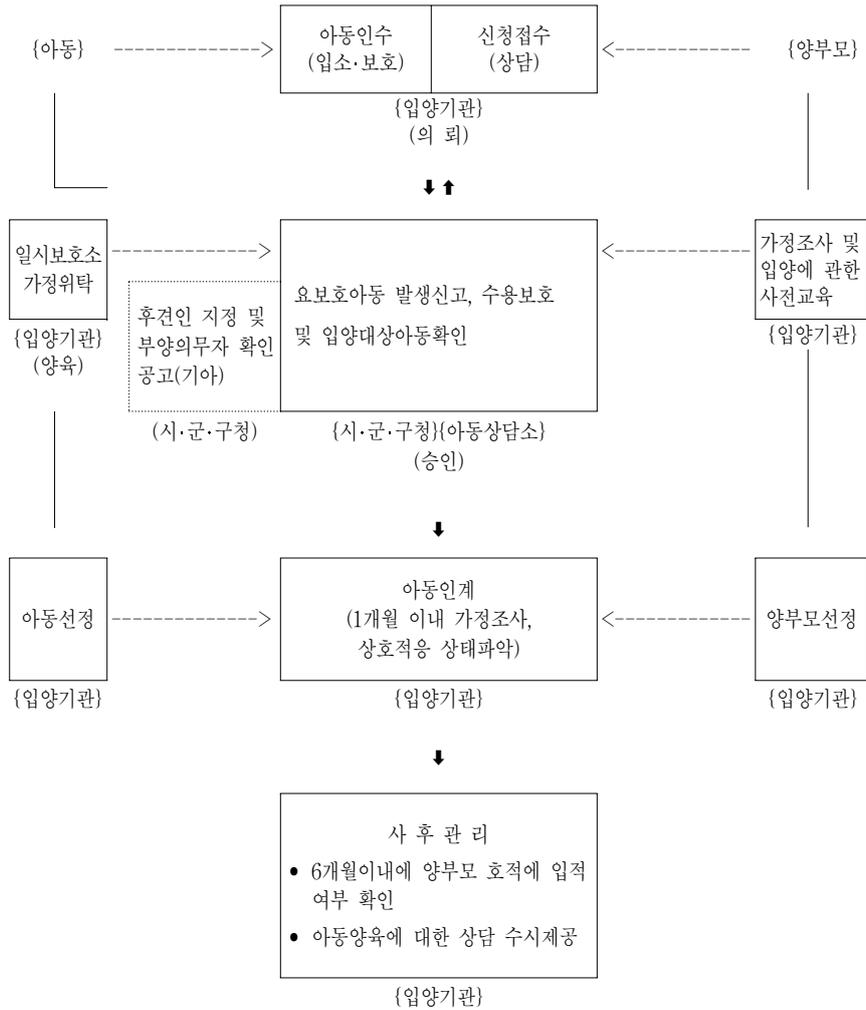
현재 각 입양기관이 현행 아동복지법과 입양특례법에 기초하여 실시하고 있는 入養의 節次는 [圖 4-1]과 [圖 4-2]와 같다. 국내입양의 경우 미혼모아동의 경우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주요 입양절차는 친부모로부터의 아동의 인수 및 양육, 행정적 절차를 통한 입양업무의 승인, 양부모 신청접수 및 상담등을 통한 아동의 인계 및 사후관리 등의 3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입양기관에서는 아동상담원이 입양대상아동으로 판단되는 아동을 친부모 또는 시설장으로부터 인수를 하게 되는데 이때 친부모와의 상담을 실시하여 아동상담카드를 작성하게 되며, 더불어 입양절차에 필요한 서류인 ①입양동의서, ②인우보증서 ③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④인감증명, ⑤출생증명서를 받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주로 아동상담원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인수된 아동은 건강검진에 기초하여 일시보호소 또는 가정위탁을 통하여 양육된다. 아동의 건강상태가 나쁜 경우는 의료진과 의료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일시보호소에서, 건강한 아동의 경우는 위탁모에 의해서 양육되게 된다. 가정위탁의 경우는 아동상담원이 위탁모를 지도·감독하게 되며 모든 아동의 건강상태에 대한 검사가 입양기관 의료진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이루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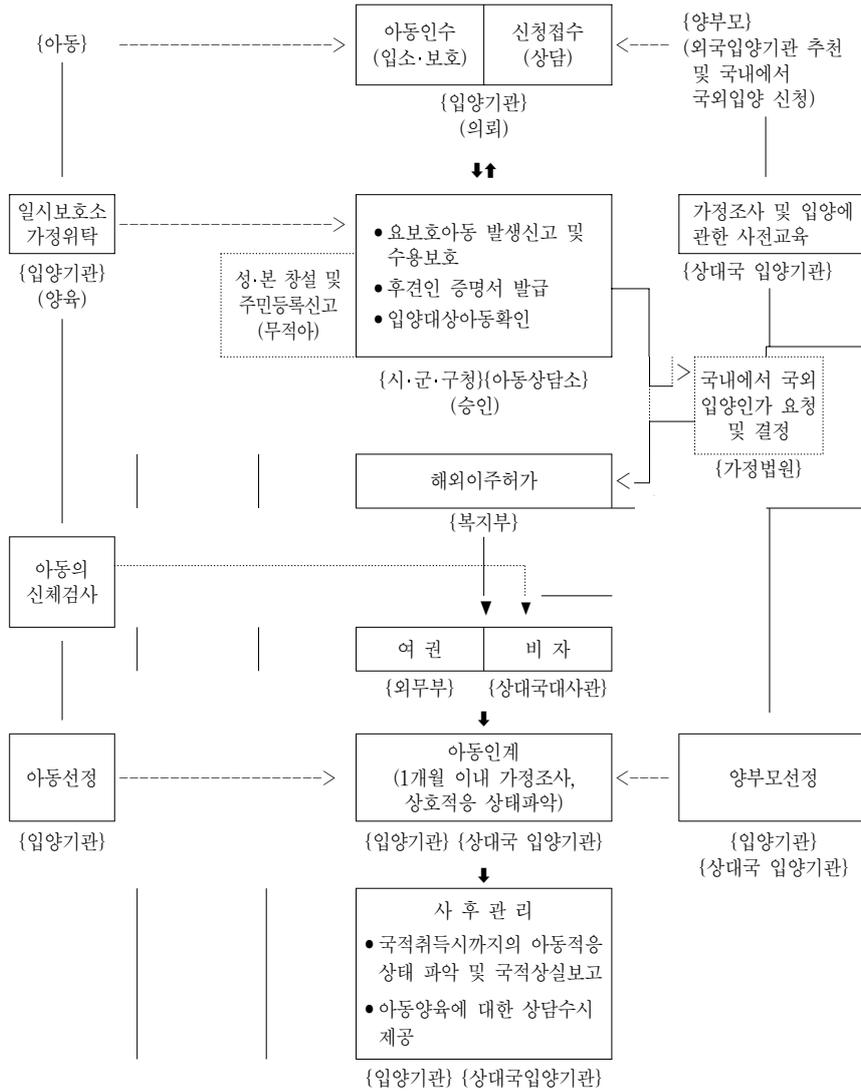
둘째로, 입양기관은 아동인수시 작성된 제서류를 공문과 함께 해당 시·군·구청의 아동복지과에 제출하여 요보호아동수용승인서와 입양대상아동확인서를 발급받게 된다. 현재, 입양기관에 따라서는 입양대상아동확인과정의 서울시립 아동상담소에서 반복되어 실시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입양대상아동이 기아인 경우는 후견인설정과 부양의무자 확인공고의 과정이 추가된다. 이러한 행정과정은 주로 보조인력에 의해서 수행되게 된다.

[圖 4-1] 國內入養節次



註: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사업지침』 1996, p.49에 기초하여 재구성한 것임.

[圖 4-2] 國外入養 및 國內에서의 國外入養 節次



註: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사업지침』, 1996, p.50에 기초하여 재구성된 것임.

세째로, 입양기관의 아동상담원은 입양을 희망하는 부부의 입양신청서를 접수하고, 가정조사를 통하여 입양을 희망하는 사람이 적격자인지에 대한 상담을 하게되며, 적격자로 판단된 신청자에게 구체적인 입양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이러한 양부모에 대한 상담은 필요에 따라서 1회 이상 반복되기도 한다. 최초의 면접후 입양희망자는 입양기관에 ① 호적등본 1통, ② 주민등록 등본 1통, ③ 양부모 건강진단서1부(해당자의 경우는 불임진단서)를 제출하게 된다. 또한, 입양기관은 양부모될 사람의 가정조사를 통하여 입양에 대한 부부의 태도, 가정의 안정도 및 성숙도를 파악하여 양부모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를 판단하게 된다.

이상과 같은 절차에 의하여 입양대상아동과 입양적격자임에 확인된 양부모를 대상으로 개별 입양희망자에 대한 아동의 선정이 이루어져 가정배치를 하게 되며, 양부모를 위한 사전교육을 1~2회 실시하게 된다. 입양후 1개월 후에 아동상담원은 입양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의 적응도를 조사하고 입양의 실질적인 성과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사후관리를 한다. 또한 6개월 이내에 양부모의 호적에 입적되었는지를 확인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은 비밀입양을 선호하는 풍토로 인하여 잘 수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양부모의 선정과정과 사후관리는 입양기관의 아동상담원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다.

國外入養의 경우는 국내입양의 경우 필요한 행정절차인 요보호아동 수용신청 및 입양대상아동확인서 발급외에도 무적아인 경우는 취적(구청 호적계와 가정법원 경유)과 주민등록신고(동사무소)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또한, 보건복지부로부터 해외이주허가를 받아야 하며, 외무부로부터 여권을 발급받아야 하고, 상대국 대사관으로부터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는 절차를 추가로 수행하여야 한다. 이외에도 미국의 경우는 아동에 대한 후견인 증명서를 제출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국외입양의 경우(local adoption)는 가정법원에 국내에서의 국외입양인가를 요청하는 과정이 해외이주허가 신청전에 추가로 수행되어야 한다. 이렇게 國外入養은 국내입양에 비하여 行政的인 節次가 증가되는 반면, 양부모로부터의 입양신청과, 상담, 가정조사등은 상대국 입양기관에 의하여 수행되므로 아동상담원이 수행해야 하는 역할은 줄어들게 된다.

2. 入養機關이 提示한 入養費用 分析

가. 入養機關이 提示한 入養費用⁸⁾

保健福祉部는 적정한 入養費의 상한선을 책정하기 위해 각 입양기관에게 入養費用을 산출하도록 요청한 바 있으며, 각 입양기관이 아동 1인당 입양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제시한 금액은 <表 4-5>와 <表 4-6>에 정리되어 있다. 表에서 보이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國內入養과 國外入養의 경우 모두 기관별로 제시한 入養費用이 현재 받고 있는 入養費보다 훨씬 많고, 특히 國內入養의 경우 그 차이가 더 크다. 둘째, 國外入養의 경우 1982년에 정부에서 제시한 바 있는 US\$1,450의 2~3.5배에 해당하는 寄附金을 별도로 받고 있다. 셋째, 4개 입양기관이 제시한 총 입양소요비용 중 각 항목의 비중이 기관마다 상이하며, 특히 人件費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각 입양기관이 상이한 賃金水準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이한 算出方法을 사용한 데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산출방법과 임금수준에 대한 원칙의 정립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8) 입양기관에서 제시한 입양비중 사무상의 착오로 틀리게 기재된 액수는 추 후에 바로 잡아서 분석에 사용하였다.

〈表 4-5〉 入養機關이 提示한 入養費用(國內入養)

(단위: 원, (%))

구분	A입양기관	B입양기관	C입양기관	D입양기관
인건비	640,000 (35.1)	1,149,778 (45.0)	1,325,140 (49.9)	1,374,670 (51.2)
아동양육비	685,000 (37.6)	681,000 (26.6)	349,020 (13.2)	769,992 (28.7)
절차비용	216,000 (11.8)	219,000 (8.6)	74,600 (2.8)	216,665 (8.1)
운영비 ¹⁾	233,000 (12.8)	362,000 (14.2)	733,240 (27.7)	249,980 (9.3)
홍보비	50,000 (2.7)	144,000 (5.6)	172,010 (6.5)	73,936 (2.7)
계	1,824,000 (100.0)	2,555,778 (100.0)	2,654,010 (100.0)	2,685,243 (100.0)
현재 총입양비	1,700,000	1,500,000	1,200,000	1,500,000
· 공식입양비	1,200,000	700,000	1,000,000	-
· 기부금형태	500,000	800,000	200,000	-

註: 1) 판공비, 재산유지비, 사무비, 공공비 포함.

〈表 4-6〉 入養機關이 提示한 入養費用(國外入養)

(단위: 원, (%))

구분	A입양기관	B입양기관	C입양기관	D입양기관
인건비	1,135,000 (19.2)	1,341,830 (31.4)	1,325,140 (26.0)	2,831,820 (53.4)
아동양육비	2,285,500 (38.6)	2,106,000 (49.2)	2,089,080 (41.1)	1,586,184 (29.9)
절차비용	670,000 (31.6)	332,220 (7.8)	352,530 (6.9)	216,665 (4.1)
운영비	582,000 (9.8)	354,000 (8.3)	1,320,810 (25.9)	514,958 (9.7)
홍보비	50,000 (0.8)	143,000 (3.3)	-	152,307 (2.9)
계	4,722,000 (100.0)	4,277,050 (100.0)	5,087,580 (100.0)	5,301,934 (100.0)
현총입양비(\$)	5,450 ²⁾	3,550	6,200	6,450
· 정부기준액	1,450	1,450	1,450	1,450
· 기부금형태	4,000	2,100	4,750	5,000
	(4,360,000원)	(2,840,000원)	(4,960,000원)	(5,160,000원)

註: 1) 판공비, 재산유지비, 사무비, 공공비 포함.

2) 원래 제시한 금액에는 항공료 1,200,000원이 포함된 1,870,000원이 절차비용으로 포함되어 있었으나, 타 입양기관은 항공료를 제외한 비용을 제시하였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1,200,000원을 제외한 금액을 제시한 입양비로 간주하여 분석하였음.

나. 提示된 兒童 1人當 入養費用의 項目別 檢討

1) 人件費

입양아 1인당 소요되는 인건비를 산출함에 있어서 입양기관별로 금액에 큰 차이가 있다. 국내입양의 경우는 640,000원부터 1,374,670원, 국외입양의 경우는 1,135,000원에서 2,831,820원까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人件費의 차이는 각 입양기관의 임금수준의 차이라기보다는 입양아 1인당 소요되는 인건비를 산출하는 方法에 있어서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A입양기관의 경우는 입양과정에 관여하는 각 職員이 담당하는 兒童數에 기초하여 人件費를 계산하였다. 또한, 국외입양의 경우는 국내입양에 비하여 養育期間이 평균 5배가 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인건비에 加重值를 두고 있어, 인건비가 국내입양의 거의 2배에 해당하고 있다. 이러한 산출방법은 입양과정에 필수적인 아동상담원과 보조인력 등을 구분하여 살펴보고 있다는 점에서는 타당성을 갖고 있으나 醫療人力에 대한 고려가 없으며, 각 기능별 직원의 賃金水準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D입양기관의 경우는 年 一時保護 인원과 平均 保護日數를 고려하여 인건비를 산출하였다(국외입양의 경우 장애아 등을 포함한 의료문제아의 보호일수가 길어서 평균보호일수가 206일이었음).

B입양기관과 C입양기관은 공통적으로 總人件費를 總入養兒數로 나누고 있어서 국내입양의 경우와 국외입양의 경우 인건비가 同一하다. 그러나 과연 국내입양과 국외입양에 드는 인건비를 동일하게 산출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疑問이 제기될 수 있다. 국내입양은 소요기간은 짧지만 여러 단계의 相談이나 介入이 필요하고, 국외입양은 입양에 소요되는 기간이 긴 반면, 相談節次는 더 간단하며 대신 서류준비 등 行政的 節次

가 더 많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상이하다. 따라서 국외입양의 경우에는 아동상담원보다 補助人力이 수행해야 할 일이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입양과 국외입양 사이의 인건비의 차이는 국외입양의 比重이 높은 입양기관(A입양기관과 D입양기관)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각 기관이 가지고 있는 運營方針의 차이가 인건비 산출 방법에도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

<表 4-7> 入養機關別 人件費 額數와 算出方法

구분	내 용			
	A입양기관	B입양기관	C입양기관	D입양기관
산출방법	(총인건비÷1인당 담당아동수)× 양육기간	총인건비÷ 입양아수	총인건비 ÷ 총입양아수	인건비÷연일시보 호인원×보호일수 (국내는 해외의 1/2일)
산출액 (단위: 원)	국내: 640,000 해외: 1,135,000	국내: 1,149,778 해외: 1,341,830	국내·외: 1,325,140	국내: 1,374,670 해외: 2,831,820

2) 兒童養育費

兒童養育費 또한 입양기관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國內入養의 경우 아동 1인당 양육비는 349,020원부터 827,000원까지의 차이를 보이고 있고, 국외입양의 경우도 1,586,184원부터 2,531,000원까지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海外入養의 경우 입양에 걸리는 시간이 길고 특별한 관심을 요하는 의료문제를 가진 아동이 많기 때문에 국내입양보다 많은 양육비가 제시되어 있는데, 國外入養의 아동1인당 양육비는 국내입양의 3~4.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兒童養育費중 委託費는 그 산출근거가 분명하다. 즉, 위탁모에게 하루에 지불되는 위탁비(현재 일당 10,000원)가 국내입양의 경우 1개월, 국외입양의 경우는 5개월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되므로 입양기관별 차

이는 크지 않다.

반면, 消耗品 및 醫療費에 있어서는 기관별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消耗品의 경우 그 산출 額數가 국내입양의 경우는 13,178원에서 142,000원까지, 국외입양의 경우는 27,147원에서 346,000원까지로 그 폭이 매우 크다. 이는 각 입양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소모품의 질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고, 총소모품비를 국내입양과 국외입양별로 어떻게 나누어 계산하였는가에 따라서 금액이 상이해진 것으로 판단된다.

醫療費의 경우에도 기관별 제시한 금액에 차이가 있는데, 이는 각 입양기관마다 所有하고 있는 의료시설과 의료인력에 있어서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예를 들어 A입양기관과 B입양기관은 全擔醫師를 고용하고 자체내에 인큐베이터 등의 의료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C입양기관의 경우는 同一 法人의 병원을 이용하다가 최근에 들어서는 小兒科 醫師를 고용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반면 D입양기관은 囑託의 형태로 의사를 고용하고 있다. 이러한 의료진 고용형태의 차이도 입양기관이 제출한 인건비와 의료비에 차이를 가져오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각 입양기관은 현실적으로 分娩費를 지불하지 못하는 未婚母에게 분만비를 보조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지만, 公式的으로는 입양기관이 미혼모에게 분만보조비 또는 사후조리를 위한 지원을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비용이 의료비에 포함된 것으로 추측되며, 이것이 결과적으로 의료비 액수를 증대시킨 것으로 보인다.

〈表 4-8〉 入養機關別 兒童養育費의 比較(國內入養)¹⁾

(단위: 원)

항목별	A입양기관	B입양기관	C입양기관	D입양기관
위탁비	355,000	320,000	258,000	437,077
일시보호비	-	50,000	-	-
분유비	25,000	14,400 ²⁾	15,300	138,534
간식비	20,000	-	-	-
소모품	142,000	50,000	35,720	13,178
의료비	245,000	200,000	60,000	173,031
신체검사	(25,000)	(50,000)	(30,000)	-
예방접종,비상의약품	(20,000)	(50,000)	(30,000)	-
외래 및 입원진료비	(200,000)	-	-	-
기타(위탁가정관리비)	40,000	10,000	-	-
총액수	827,000	644,400	349,020	769,992

註: 1) 입양기관별로 분류방법이 달라서 공통되는 항목별로 재구성하였기 때문에 실제 총 아동양육비는 <表 4-5>에서 제시된 아동양육비와 약간의 차이가 있음.
 2) B입양기관에서 제출한 산출내역에는 144,000원으로 제시되어있으나, 타기관과 비교한 결과 단순한 착오로 판단되어 수정하였음.

〈表 4-9〉 入養機關別 兒童養育費의 比較(國外入養)¹⁾

(단위: 원)

항목별	A입양기관	B입양기관	C입양기관	D입양기관
위탁비	1,675,000	1,600,000	1,419,000	900,379
일시보호비	-	50,000	-	-
분유비	100,000	73,400	107,100	285,399
간식비	80,000	25,000	82,500	-
소모품	346,000	40,000	67,440	27,147
의료비	390,000	184,000	413,040	356,444
신체검사	(50,000)	(24,000)	-	-
예방접종,비상의약품	(40,000)	(160,000)	-	-
외래 및 입원진료비	(300,000)	-	-	-
기타(위탁가정관리비)	40,000	10,000	-	-
총액수	2,631,000	1,981,000	2,089,080	1,586,184

註: 1) 입양기관별로 분류방법이 달라서 공통되는 항목별로 재구성하였기 때문에 실제 총 아동양육비는 <表4-6>에서 제시된 아동양육비와 약간의 차이가 있음.

3) 節次費用

國內入養의 경우 기관별로 절차비용의 차이가 매우 커서 A입양기관과 C입양기관의 경우 7만원을 조금 넘는 액수인 데 비하여 D입양기관의 경우는 21만원이 넘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다. 이는 절차비용에 포함되는 項目에 대한 標準化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입양기관 訪問을 통하여 얻은 정보에 의하면, 제반 서류비를 사무비로 계산하는 경우, 또는 아동이송비를 교통비 등의 항목으로 계산하는 경우도 있다.

각 기관마다 제출한 項目을 比較한 결과 사진 및 서류비, 아동이송비는 공통적으로 포함이 되어있지만 기타 항목은 기관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國內入養의 경우, 事後管理費는 B입양기관에만, 양부모교육비는 C입양기관에만 독립된 항목으로 포함되어 있다. 한편, 未婚母가 經濟的 能力이 없을 때 未婚母의 분만비를 보조해주거나 산후조리를 위한 지원을 해주는 등의 未婚母 相談活動費가 B입양기관의 경우만 독립된 항목으로 제시되어 있다.

書類費를 책정함에 있어서 입양아동 발생유형 중 가장 비중이 높은 未婚母의 경우를 기준으로 하였다. 미혼모의 경우 입양절차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① 친권포기 및 입양동의서 2부, ② 미혼부모 보호자의 입양동의서 3부, ③ 인우보증서 2부, ④ 출생증명서, ⑤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⑥ 인감증명서 등이며, 기타의 경우도 서류비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國外入養의 경우, 事後管理費와 出國用品費가 일부 기관에서만 제시되어 있지만 입양비에 包含시켜야 할 항목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이외에도 여권발급, 비자신청 및 비자신체검사(美國의 경우) 등이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서류에 대한 公證을 요구하고 있어, 기관별로 공증료를 포함시키고 있다.

〈表 4-10〉 入養機關에서 提示한 節次費用의 比較(國內入養)

(단위: 원)

내역	A입양기관	B입양기관	C입양기관	D입양기관
사진	20,000	5,000	5,000	196,778
서류비	14,000	10,000	5,000	-
아동이송비	40,000	54,000	33,330	19,888
미혼모 상담활동비	-	100,000	-	-
양부모교육비	-	-	31,270	-
사후관리비	-	50,000	-	-
총계	74,000	219,000	74,600	216,665

〈表 4-11〉 入養機關에서 提示한 節次費用의 比較(國外入養)

(단위: 원)

내역	A입양기관	B입양기관	C입양기관	D입양기관
사진	40,000	5,000	15,000	196,778
서류비(공증료 포함)	14,000	17,000	10,000	-
여권.비자료	180,000	207,700	166,200	-
비자신체검사	-	45,000	-	-
호적등본	10,000	6,000	-	-
아동이송비	80,000 ¹⁾	3,270	33,330	19,888
미혼모상담활동비	-	100,000	-	-
공항세	-	9,000	8,000	-
출국용품비	-	24,250	50,000	-
사후관리비	-	15,000	-	-
총계	324,000	432,220	352,530	216,665

註: 1) 제출한 금액은 1,280,000원이었으나 이에는 항공비 1,200,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항공료를 제외한 아동이송비인 80,000원을 제시하였음.

4) 運營費

運營費의 경우 기관별로 제시한 금액이 다를 뿐만 아니라 포함된 항목에 있어서도 기관별로 相異한 分類方法을 택하고 있으며, 국내입양과 국외입양의 운영비를 同一하게 계산한 기관(B입양기관과 C입양기관)이 있는가 하면 국외입양의 운영비를 훨씬 높게 잡은 기관(A입

양기관과 D입양기관)도 있다.

運營費는 입양기관의 규모와 입양기관이 행하고 있는 입양의 사업規模와 種類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입양아 1명을 기준으로 하여 운영비를 산출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規模의 經濟가 작용할 경우, 입양아동수가 많은 기관의 운영비가 낮을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오히려 그 反對인 것으로 나타났다. 입양아수가 많은 기관일수록 아동 1인당 운영비가 급격히 많아져서, A입양기관의 경우 아동 1인당 운영비가 D입양기관의 32만원의 약 3배에 해당하는 94만원이나 되었다. 이는 입양기관의 세출에는 입양의 사업도 포함되어 규모가 큰 입양기관일수록 입양의 사업을 위해 지출하는 운영비의 규모가 커짐을 보여주는 것이다.

〈表 4-12〉 各 入養機關이 提示한 運營費 및 歲出에 基礎한 運營費 比較¹⁾
(단위: 원)

세출내역	A입양기관	B입양기관	C입양기관	D입양기관
제시한 운영비				
국내	233,000	362,000	416,090	249,980
해외	582,000	354,000	416,090	514,958
세출에 기초한 아동1인당 운영비	941,704	558,654	336,881	318,029
년간 입양아동수(명)	1,486	1,047	563	132

註: 1) A입양기관과 C입양기관은 1994년도, B입양기관과 D입양기관은 1995년도 자료임.

5) 弘報費

기관마다 행하고 있는 弘報의 내용 뿐만 아니라 홍보비의 규모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A입양기관의 5만원에서부터 C입양기관의 17만원까지 그 폭이 매우 크다.

〈表 4-13〉 入養機關別 弘報內容 및 弘報費

(단위: 원)

항목	A입양기관	B입양기관	C입양기관	D입양기관
내용	미혼모 예방교육, 대중매체 광고, 홍보책자 발간	홍보물 제작 팸프렛 제작 기타 홍보물 광고비	홍보기획비 광고비 기타 홍보물	국내입양육성비 상당사업비
국내	50,000	144,000	172,010	73,936
국외	50,000	143,000	-	152,307

3. 入養費用 算出의 基準

입양기관이 사용한 상이한 산출기준의 검토와 입양기관의 방문조사를 통하여 본 연구에서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基準을 추출하였다.

가. 人件費

原則 1: 입양과정에 관여하는 직원을 機能別로 나누어 인건비를 산출하도록 한다. 입양특별법에 제시되어있는 기준에 의거하여 직원은 크게 兒童相談員, 補助人力(보호시설이나 부속의원에서 직접 양육에 관련하는 인원, 서류처리 등 행정적 보조인력, 기관운영을 위한 관리직 포함), 醫療人으로 구분하도록 하며, 각 인력구성마다 상이한 인건비 기준을 고려하여 인건비를 산출한다.

原則 2: 國外入養의 경우 국내입양에 비하여 소요되는 기간이 길므로 인건비 산출에 加重值를 둔다. 또한, 아동상담원, 보조인력, 의료인은 입양소요기간 연장에 따른 역할과 비중의 변화 정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각 인력구성별로 상이한 가중치를 두도록 한다.

나. 養育費

原則 1: 통상 소요되는 入養期間을 고려하여 아동양육비를 산출하도록 한다. 입양아의 대부분이 정상아인 국내입양의 경우는 최대 1개월이 소요되며, 국외입양의 경우는 평균 5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原則 2: 아동양육비에는 委託費(위탁모 정규사례비 및 위탁모 특별사례비), 粉乳費 및 간식비, 消耗品費, 醫療費를 포함하도록 한다. 아동의 인수에서부터 입양될 때까지 위탁보호를 하는 경우 위탁모에게 일당으로 사례비를 지급하는 것 외에도 위탁모의 장기적인 참여를 위해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위탁모 사례비와 더불어 위탁모 특별 사례비를 책정하도록 한다. 일시보호비용은 인건비와 운영비에 포함된다.

原則 3: 위탁모의 謝禮費는 현재 입양기관에서 지불하고 있는 금액으로 한다. 현재 입양기관에서는 1일당 10,000원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原則 4: 醫療費에는 신체검사비, 예방접종 및 비상약품비, 외래 및 입원진료비를 포함하도록 한다. 국외입양의 경우는 의료문제로 인하여 장기적인 입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이 상당부분 있으며 이 경우 간병인비가 지급되어야 하므로 국외입양의 경우는 의료비에 看病人費를 추가로 포함하도록 한다.

다. 節次費用

- 原則 1: 절차비용에는 寫眞 및 書類費, 서류작성 및 행정적 절차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旅費, 兒童移送費, 양부모교육비, 사후관리비를 포함한다. 事後管理는 현실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강조되어야 할 항목이며, 養父母教育은 바람직한 입양을 위해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강조하여야 할 항목이라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 제시할 入養費에 포함시키도록 한다.
- 原則 2: 國外入養의 경우는 여권발급, 비자신청 및 비자신체검사비를追加하도록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제서류에 대한 공증료를 入養費用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이는 공증 대신 機關長의 署名으로 대신하는 곳(C입양기관과 D입양기관)도 있어, 앞으로는 모든 입양기관이 공증 대신 기관장의 서명으로 대신하도록 하는 것이 經費 節減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 原則 3: 국외입양의 경우는 國家別로 절차와 비용에 차이가 있으므로 국외입양중 그 비중이 큰 美國의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 原則 4: 未婚母의 아동이 입양아동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미혼모의 무리한 流産 시도로 발생하는 의료문제아 및 未熟兒를 예방한다는 측면에서 미혼모의 예방적 관리를 위한 미혼모 相談活動費를 책정하도록 한다. 그러나, 입양기관간의 입양대상 아동의 확보를 위한 競爭으로 分娩補助費를 지급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전체적으로 입양비용을 높이고 있는 실정이므로, 금액을 最小限으로 한다.

라. 運營費

原則 1: 運營費는 수용비 및 수수료, 제세공과금 및 통신비, 재산유지비(운영비), 판공비, 서식인쇄비 등을 포함한다.

原則 2: 운영비의 경우 국내입양과 국외입양을 위한 운영비의 뚜렷한 差異가 없으므로 국내입양과 국외입양의 운영비를 同一하게 계산한다.

마. 弘報費

原則 1: 國內入養의 活性化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국내입양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요구되나, 機關別 弘報는 자칫 기관간의 경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정부차원에서의 국내입양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국내입양비용에 弘報費를 포함시키지 않는다.

原則 2: 國外入養의 경우 대기하고 있는 양부모가 많으며 타국가에 비하여 入養費가 비싸지 않기 때문에 굳이 홍보를 활성화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國外入養費用에도 弘報費를 포함시키지 않도록 한다.

4. 適正 入養費用 算出과 算出根據

가. 入養費用 算出의 基準이된 必要人力과 서비스

본 절에서 이루어지는 國內 및 國外入養費用의 算出은 現行 入養기관에서 行하고 있는 入養節次에 기초하여 이루어졌다. 즉, 現行 入養절차의 각 단계별 필요한 인력과 제공되는 서비스를 정리하고(表 4-11 참조), 그에 기초하여 각 단계별로 소요되는 비용의 항목을 <表 4-12>와 같이 파악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入養절차상에 변화가 발생하면 그에 따라서 入養비용도 변화할 수 있다⁹⁾.

9) 現行 入養절차에는 중복되는 과정과 불합리한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現行 入養절차를 재검토하고 합리적인 개선책을 모색함으로써 入養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表 4-14〉 入養節次の 各 段階別 必要人力과 提供되는 서비스

대상	입양절차	담당인력	제공되는 서비스의 종류
아동	아동인수	아동상담원	친부모 상담 서류작성 (입양동의서, 출생증명서, 인우보증서,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본 인감증명, 상담지도카드)
	아동보호 일시보호소 가정위탁	보조인력/의료인 위탁모/의료인 아동상담원	아동양육 아동양육 양육자 관리
	아동선정	아동상담원	상담 및 의사결정
양부모	양부모로부터의 신청접수	보조인력	서류작성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양부모건강진단서) 불입진단서(해당자))
	양부모 상담 및 가정조사	아동상담원	상담 및 가정조사에 기초하여 양친가정조사서 작성
	양부모 선정	아동상담원	상담 및 의사결정
	양부모 사전교육	아동상담원	교육
	양부모사후관리	아동상담원	상담
시·군·구청 아동상담소	수용보호신청	보조인력	행정절차수행:시·군·구청에 요보호아동명단 및 공문발송, 요보호아동수용의뢰공문접수
	입양대상아동 확인	보조인력	행정절차수행:시·군·구청/아동 상담소에 입양대상아동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구비 및 확인서접수 (입양동의서 1부, 출생증명서 1부, 인우보증서 1부,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본 1부, 인감증명1부, 상담지도카드)

〈表 4-15〉 入養節次의 各 段階別 必要人力과 提供되는 서비스

대상	입양절차	담당인력	제공되는 서비스의 종류
아동	아동인수	아동상담원	친부모 상담 서류작성 (입양동의서, 출생증명서, 인우보증서,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본, 인감증명, 상담지도카드)
	아동보호 일시보호소 가정위탁	보조인력/의료인 위탁모/의료인 아동상담원	아동양육 아동양육 양육자 관리
	지정병원에서의 신체검사	보조인력	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 실시
	아동선정 사후관리	아동상담원 아동상담원	상담 및 의사결정 상담
양부모	양부모로부터의 신청접수	보조인력	서류접수
	양부모 선정	아동상담원	상담 및 의사결정
시·군·구청 아동상담소	수용보호신청	보조인력	행정절차수행:시·군·구청에 요보호아동명단 및 공문발송, 요보호아동수용의뢰공문접수
	입양대상아동 확인	보조인력	행정절차수행:시·군·구청/ 아동상담소에 입양대상아동 확인서발급에 필요한 서류구비 및 확인서접수 (입양동의서 1부,출생증명서 1부, 인우보증서 1부,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본 1부 인감증명1부, 상담지도카드)
시·군·구청 가정법원 구청 동사무소	성·분 창설 및 주민등록신고	보조인력	행정절차수행 (성 및 분 창설허가 신청서, 사진)

〈表 4-15〉 繼續

대상	입양절차	담당인력	국내입양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
복지부 아동복지과	해외이주허가	보조인력	서류제출 (아동호적등본 1부, 사진2매 입양대상아동확인서 1부 입양동의서 각 1부 (기관장, 동의권자), 양친가정조사증명서 1부 입양서약서 1부 아동상담지도카드 1부 출생증명서 1부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본 1부 인감증명 1부
외부부 여권과	여권발급	보조인력	서류제출 (이주허가 통보서 1부 여권용 사진 2 부 재정보증서 1부 여권발급 신청서 1부)
대사관	비자발급	보조인력	서류제출 (비자신청서 2부, I-640 형식 1부 신체검사서 1부, 사진 2매, 여권, 호적등본 1통, 후견인 지정서1부, 후견인 진술서 1부, 재정보증서 1부)
법무부	양부모사후관리	보조인력	국적상실 보고

〈表 4-16〉 入養節次의 各 段階別 所要費用 項目(國內入養)

입양절차	서비스의 종류	소요비용 항목
아동인수	친부모 상담	아동상담원 인건비 미혼모상담활동비 여비
	서류작성	서류비 여비 아동이송비
아동보호 일시보호소 가정위탁 아동선정	아동양육 양육자 관리·상담 의사결정	인건비(보조인력, 의료인) 양육위탁비 분유비 및 보조식품비 소모품비 신체검사비 예방접종,비상의약품 외래 및 입원진료비 아동상담원 인건비 아동상담원 인건비
양부모로부터의 신청접수	양부모로부터 신청서 및 구비서류접수	아동상담원 인건비
양부모 가정조사 및 상담	상담에 기초하여 양친가정조사서 작성	아동상담원 인건비 보조인력 인건비 서류비 여비
양부모 사전교육	교육	아동상담원 인건비 양부모교육비
양부모 선정	상담 및 의사결정	아동상담원 인건비
양부모사후관리	상담	아동상담원 인건비 보조인력 인건비 사후관리비
수용보호신청 및 입양대상아동 확인	행정절차수행	보조인력 인건비 서류비 여비

〈表 4-17〉 入養節次の 各 段階別 所要費用 項目(國外入養)

입양절차	서비스의 종류	소요비용 항목
아동인수	친부모 상담 서류작성	아동상담원 인건비 미혼모상담활동비 서류비 여비 아동이송비
아동보호 일시보호소 가정위탁	아동양육 양육자 관리	인건비(보조인력, 의료인) 양육위탁비 분유비 및 보조식품비 소모품비 신체검사비 예방접종,비상의약품 의래 및 입원진료비 아동상담원 인건비
아동선정	상담 및 의사결정	아동상담원 인건비
아동의 사후관리	사후관리	사후관리비
양부모 선정	상담 및 의사결정	아동상담원 인건비
수용보호신청 및 입양대상아동 확인	행정절차수행	보조인력 인건비 서류비 여비
성·분 창설 및 주민등록 신고	행정절차수행	보조인력 인건비 서류비 여비
신체검사 해외이주허가 여권 비자신청 국적상실보고	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 행정절차수행	신체검사비, 보조인력 인건비 보조인력비 서류비 여비

나. 國內入養

국내입양비용은 다음과 같은 3가지 基本前提에 기초하여 산출되었다. 첫째, 入養機關에서 제시한 자료를 근거로 하여, 현재 입양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입양서비스의 제항목들이 누락없이 포함되도록 하

며, 아동양육이 일정한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入養費用을 現實化한다. 둘째, 入養비용 산출은 入養機關에서 제출한 資料, 入養기관 방문을 통하여 入養서비스 종사자들로부터 획득한 情報, 入養特例法에 명시된 내용, 아동보호시설 또는 國內入養지정기관에 대한 國庫補助의 기준과 내용을 참고로 한다.

1) 人件費

가) 入養兒 1名當 兒童相談員 人件費

입양특례법에 따르면 兒童相談員의 역할은 ① 인수상담, ② 양친에 대한 조사(home study), ③ 입양전 양부모에 대한 敎育 실시, ④ 입양성립후 6개월까지 양친과 입양아의 상호적응 상태에 대한 事後管理(적응상태에 대한 관찰 및 서비스제공, 아동양육에 대한 정보제공, 입양가정을 수시로 상담할 수 있는 창구개설 및 상담요원의 배치)등이다.

兒童相談員 人件費 算出의 前提

1. 아동상담원 1인당 연간 50명의 아동을 입양시킨다.
2. 아동상담원의 연봉은 18,000,000원을 기준으로 한다.

前提 1은 입양아동 50명당 1명의 아동상담원을 두게 되어 있는 入養特例法에 기초한 것이다. 前提 2에서 연봉기준으로 제시된 1천8백만 원은 1995년 현재 도시근로자의 연평균임금이 14,400,000원이며, 生活指導員의 경우 國고보조금과 지방비보조금을 합하여 실제 지급되고 있는 年俸이 연간 14,586,360원 정도(國內入養지정기관인 F보육원의 17호봉인 생활지도원의 임금수준임)인 것에 비하면 약간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입양특례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연간 아동상담원이 50명의 아동에 대해 良質의 相談(앞으로는 사후관리를 위한 상담의 비

중도 증가할 것임)을 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現實과, 앞으로 아동상담원이 좀 더 전문적인 업무를 행하고 기타 제반 행정업무는 보조 인력에 의하여 수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기초하여 다소 높은 賃金水準을 제시하였다.

入養兒 1名當 兒童相談員 人件費 $18,000,000\text{원}/50\text{명} = 360,000\text{원}$
--

나) 入養兒 1名當 補助人力 人件費

補助人力은 ① 보호시설이나 부속의원에서 직접 養育에 關連하는 인원, ② 서류처리 등 行政的 補助人力, ③ 기관운영을 위한 管理職으로 구성된다.

補助人力 人件費 算出의 前提 1. 아동상담원 대비 보조인력의 比率을 1대 1로 하며, 보조인력 1인당 年間 50명의 아동의 入養을 補助하는 것으로 한다. 2. 補助人力의 年俸은 15,000,000원을 기준으로 한다.

前提1은 현재 각 入養기관의 보조인력이 담당하는 아동의 수는 평균 50명보다 적지만(表 4-4 참조), 국내입양 절차에 필요한 補助人力의 필요성이 國外입양보다 적고, 기관운영의 合理化를 통하여 기관당 보조인력의 수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앞으로는 入養업무가 아동상담원을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보조인력의 수를 감소(즉 보조인력 1인당 담당아동수를 증가시킨 것임)시킨 결과이다. 또한, 보조인력은 학력수준 및 경력에 따라서 임금수준에 많은 偏差가 있을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아동상담원보다 약

간 낮은 도시근로자 연평균임금수준인 15,000,000원을 기준임금으로 제시하였다.

————— 入養兒 1名當 補助人力 人件費 —————

$$15,000,000\text{원}/50\text{명} = 300,000\text{원}$$

다) 入養兒 1名當 醫療人 人件費

- 醫療人 人件費 算出의 前提 —————
1. 의사와 기타 의료인(간호사, 간호보조원, 임상병리사)으로 나누어 인건비를 산출한다.
 2. 기관당 1인의 의사가 고용되며 1인의 의사가 연간 1,000명의 아동을 담당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며, 기타의료인의 경우는 연간 아동 120명을 담당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3. 의사의 경우는 연봉을 50,000,000원으로 한다. 기타의료인의 경우는 15,000,000원을 기준으로 한다.

의료인의 인건비는 入養特例法에 의하면 의사 1인(또는 이상)을 고용 또는 촉탁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기관당 1인의 의사가 고용되며 年俸이 50,000,000원인 것을 기준으로 하여 인건비를 산출한다. 이 액수는 현재 입양기관에서 고용되어 있는 의사의 연봉수준에 기초하여 결정된 것이다. 의사 한명이 연간 담당하는 兒童數는 기관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중간수준의 입양규모를 기준으로 하여 연간 1,000명을 담당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기타 의료인의 경우는 의료인이 갖고 있는 자격에 따라서 임금수준에 차이가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年俸 15,000,000원을 기준으로 하고, 연간 담당하는 아동의 수를 120명으로 계산하였다.

— 入養兒 1名當 醫療人 人件費 —

500,000,000원/1,000명 = 50,000원
150,000,000원/120명 = 125,000원

라) 入養兒 1名當 總人件費

입양아 1명당 총인건비는 아동상담원의 인건비, 보조인력인건비, 의료인 인건비를 합한 금액인 835,000원으로 산출되었다. 총인건비 중 아동상담원의 인건비는 43%인 36만원이며, 보조인력 인건비는 36%인 30만원, 의료인 인건비는 21%인 17만 5천원이다.

— 入養兒 1名當 總人件費 —

아동상담원 인건비+보조인력인건비+의료인 인건비 = 835,000원		
360,000	300,000	175,000
(43.1%)	(35.9%)	(21.0%)

2) 兒童養育費

가) 入養兒 1名當 養育委託費

— 養育委託費 算出의 前提 —

1. 위탁모에게 지불되는 정규 사례비는 1일에 10,000원으로 책정한다.
2. 평균 30일간의 양육기간이 필요하다.
3. 위탁모 특별 사례비로 월 정규사례비의 3%인 1만원으로 책정한다.

위탁모가 1명 이상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1명의 위탁모가 1명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다. 따라서 위탁모

1인이 아동 1명을 양육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여 양육위탁비를 산출하도록 하였다. 委託母에게 정규적으로 1일에 10,000원의 위탁비를 지급하는 것 외에도 위탁모 관리를 위해 非定期的으로 보너스 형식의 금액이 지급되고 있다. B입양기관의 예산을 검토한 결과, 장기적으로 아동을 위탁받고 있는 위탁모에 대한 特別謝禮費를 지불하고 있으며, 그 금액은 월 정규사례비의 3% 미만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위탁모 특별사례비로 월 정규사례비의 3%인 1만원으로 산출하였다.

— 入養兒 1名當 養育委託費 —	
위탁모	정규사례비: 10,000원×30일 = 300,000원
위탁모	특별사례비: 10,000원

나) 入養兒 1名當 粉乳費 및 補助食品費

— 粉乳費 및 補助食品費 算出의 前提 —	
1.	한통에 2,500원하는 분유가 한달에 10통이 필요하다.
2.	보조식품비로 1개월에 5,000원이 필요하다.

제입양기관에서 제시한 분유값은 1통당 1600~2500원 사이이나, 최근 분유값의 인상이 이루어졌으므로, 분유값을 한통에 2,500원을 기준으로 하고 한달에 10통 소비하는 것을 前提로 한다. 또한, 현실적으로는 국내입양이 1개월 내에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보조식품이 필요없는 경우도 많으나 아동이 건강상의 문제로 일반분유의 2배 이상하는 특수분유(예: 설사분유)를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고, 주스등 보조식품도 필요하므로, 아동영양의 일정 수준을 확보한다는 의미에서 補助食品費로 5천원을 책정한다.

— 入養兒 1名當 粉乳費 및 補助食品費 —

분유비: 2,500원×10통 = 25,000원

보조식품비: 5,000원

다) 入養兒 1名當 消耗品費

— 消耗品費 —

입양아 1명당 100,000원의 소모품비를 책정한다.

아동양육에는 아동피복, 아동침구, 우유병, 세제 등의 소모품이 필요 불가결하다. 각 입양기관에서 산출한 소모품비는 3만 5천원에서 15만원까지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나, ① 良質의 양육을 위해서는 일정한 수준의 소모품의 공급이 필요하며, ② 현재 국내입양기관(영아시설)에 한달에 1인당 87,000원이 이러한 항목으로 보조되고 있고, ③ 본 연구가 入養費用의 上限線을 산출하는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소모품비를 100,000원으로 책정하였다¹⁰⁾.

라) 入養兒 1名當 身體檢査

— 身體檢査費 算出의 前提 —

신체검사비에는 일반적인 신체검사비와 더불어 先天性대사이상 검사비를 포함한다.

양부모에게 아동의 身體事項에 대한 精確한 情報를 제공해야 한다

10) 입양기관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아동침구는 20,000원, 대형수건 4,000원, 소창 5,000원, 찜통 3,000원, 피복 20,000원, 우유병 960원, 세탁비누 250, 유아비누 500원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이 외에도 종이귀저기등 아동양육에 필요한 모든 물품이 위탁모에게 지급되고 있다.

는 점에서 신체검사는 필수적이며, 특히 장애의 방지를 위해서는 선천성 대사이상검사가 꼭 필요하다. 이 검사에 필요한 비용이 18,000원이므로 선천성대사이상검사를 신체검사에 포함시킨다는 前提하에 신체검사비를 28,000원으로 책정한다. 따라서 입양기관에서 선천성 대사 이상검사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入養兒 1名當 身體檢查費

입양아 1명당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 18,000원

입양아 1명당 일반신체검사비: 10,000원

마) 入養兒 1名當 豫防接種 및 非常醫藥品/外來 및 入院診療費

豫防接種 및 非常醫藥品/外來 및 入院診療費 算出의 前提

예방접종 및 비상의약품과 외래 및 입원 진료비로 각각 10,000원을 책정한다.

入養兒 1名當 豫防接種 및 非常醫藥品/外來 및 入院診療費

예방접종 및 비상의약품: 10,000원

외래 및 입원진료비: 10,000원

국내입양이 이루어지는 1개월내에 아동에게 예방접종되어야 할 것은 BCG와 간염접종 뿐이지만, 현재 대부분 入養後 養父母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국내입양아의 대부분이 건강한 아동이므로 입양전에 발생하는 外來 및 入院診療費의 지출은 미미한 실정이다. 그러나, 예방접종을 入養費 산출내역에서 제외시킬 경우 자칫 입양기관이 豫防接種에 대한 관심을 소홀히 하여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항상 發病의 위험이 있는 영유아임을 감안하여 실비의 수준에서 아동양육비에 포함시키도록 한다.

바) 入養兒 1名當 總兒童養育費

總養育費는 養育委託費, 粉乳費 및 補助食品費, 消耗品費, 身體檢査費, 豫防接種 및 非常醫藥品, 外來 및 入院診療費등을 합한 金額 488,000원으로 算出되었다. 總養育費 中 양육위탁비의 비중이 가장 높아 64%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이 소모품비로 20.5%이다.

入養兒 1名當 粉乳費			
總養育費			
양육위탁비 + 분유비 및 보조식품비 + 소모품비 + 신체검사비 +			
310,000	30,000	100,000	28,000
(63.5%)	(6.1%)	(20.5%)	(5.7%)
예방접종 및 비상약품+ 외래 및 입원진료비 = 488,000원			
10,000	10,000		
(2.0%)	(2.0%)		

3) 節次費用

寫眞費

사진관 이용시 드는 비용을 기초로 하여 입양아 1명당 5,000원의 사진비를 책정한다.

書類費

실제 서류작성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만을 포함하며, 입양아 1명당 5,000원의 서류비를 책정한다.

旅費

입양아 1명당 여비로 20,000원을 책정한다.

여비는 입양과정에 필요한 서류작성 및 행정절차의 수행을 위해 입양상담원 및 보조인력이 사용하는 交通費를 말한다. 지리적 거리에 따라 입양아 1인당 소요되는 교통비에는 큰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평균 20,000원을 책정한다.

— 兒童移送費 —

입양아 1명당 50,000원의 移送費를 책정한다.

이는 아동을 인수하거나(Intake) 양부모에게 아동을 데려다주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교통비로, 지리적 거리에 따라 입양아 1인당 소요되는 교통비에는 큰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평균 50,000원을 책정한다.

— 未婚母 相談活動費 —

입양아 1명당 미혼모 상담활동비로 100,000원을 책정한다.

未婚母 중 상당수가 分娩費 支拂 能力이 없는 실정이며 산후조리를 위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 미혼모에 대한 상담활동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미혼모가 분만비를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 입양기관이 아이를 退院시키기 위해서는 병원에 분만비를 지불해야 한다는 현실을 감안하여 미혼모 상담활동비를 100,000원으로 책정한다.

그러나, 미혼모 활동상담비가 개별 입양기관에 의해 미혼모를 확보하는 수단으로 轉用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정부의 행정감독이, 장기적으로는 입양대상아동 및 양부모에 대한 정보의 공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養父母教育費 —

입양아 1명당 양부모교육비로 100,000원을 책정한다.

입양이 아동과 양부모 모두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양부모에 대한 事前教育이 필수적이므로 入養費 항목에 포함시키도록 한다. 이에는 양부모교육을 위한 教材 開發, 외부강사진 초빙시 講義料, 다과비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입양기관에서 良質의 양부모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시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감독기능이 필요하다. 양부모 교육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고 費用을 節減하기 위해서 입양신청자에 대한 교육을 共同으로 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사) 入養兒 1名當 事後管理費

事後管理費

입양아 1명당 사후관리비로 100,000원을 책정한다.

秘密入養이 국내입양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국내입양의 경우 사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으나, 아동과 양부모간의 適應狀態를 확인함으로써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에서 사후관리가 중요하다. 入養特例法에서도 입양성립후 6개월까지 양자와 양친의 상호적응상태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입양의 경우 현실적으로 양부모교육보다도 사후관리의 실현가능성이 낮다는 점에서, 사후관리비를 50,000원으로 책정한다.

아) 入養兒 1名當 總節次費用

입양아 1명당 총절차비용은 330,000원으로 미혼모상담활동비와 양부모교육비가 각각 30%로 비중이 높고, 다음이 사후관리비로 15%를 차지하고 있다.

각 입양기관이 제시한 운영비가 입양사업은 물론 기타 附帶事業을

위해 필요한 운영비도 포함시키고 있고, 입양사업을 위해 直接的으로 필요한 운영비의 算出이 어려우며, 기관의 운영방법에 따라서 節減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운영비를 입양기관이 제시한 금액중 최저금액인 25만원을 책정한다.

— 入養兒 1名當 總節次費用 —		
사진 및 서류비 + 여비 및 아동이송비 +		
10,000	70,000	
(3.0%)	(21.2%)	
미혼모상담활동비 + 양부모교육비 + 사후관리비 = 330,000원		
100,000	100,000	50,000
(30.3%)	(30.3%)	(15.2%)

4) 運營費

— 運營費 —
기관의 規模와 상관없이 운영비를 입양아 1명당 250,000원으로 책정한다.

5) 算出된 國內入養費用

이상의 算出根據에 의해 제시된 總入養費用은 <表 4-18>에 제시되어 있다. 總入養費는 1,903,000원이며, 이중 인건비는 835,000원으로 43.9%, 아동양육비는 488,000원으로 25.6%, 절차비용은 330,000원으로 17.3%, 운영비는 250,000원으로 13.1%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4개 입양기관에서 제시한 國內入養費用의 평균액수(2,429,758원)보다 낮고, 현재 받고 있는 입양비보다는 높은 액수이다(表 4-20 참조).

〈表 4-18〉 본 연구에서提示한 國內入養費用

(단위: 원, (%))

항목	비용	내역	
인건비	835,000 (43.9)	아동상담원인건비	360,000
		보조인력인건비	300,000
		의료인의 인건비	175,000
아동양육비	488,000 (25.6)	양육위탁비: 위탁모 정규사례비	300,000
		위탁모 특별사례비	10,000
		분유비 및 보조식품비	30,000
		소모품비	100,000
		(피복, 이불, 기저기, 우유병 등)	
		신체검사(선천성대사이상검사포함)	28,000
		예방접종, 비상약품	10,000
		외래 및 입원진료비	10,000
		절차비용	330,000 (17.3)
		서류비	5,000
		여비	20,000
		아동이송비	50,000
		미혼모 상담활동비	100,000
		양부모교육비	100,000
		사후관리비	50,000
운영비	250,000 (13.1)	기관운영에 필요한 제반운영비	250,000
합계	1,903,000 (100.0)		

〈表 4-19〉 본 연구에서提示한 國內入養費用과 4個 機關 提示額의 內譯比較

(단위: 원, (%))

구분	본연구	A입양기관	B입양기관	C입양기관	D입양기관
인건비	835,000 (43.9)	640,000 (35.1)	1,149,778 (45.0)	1,324,140 (49.9)	1,374,670 (51.2)
아동양육비	488,000 (25.6)	685,000 (37.6)	681,000 (26.6)	349,020 (13.2)	769,992 (28.7)
절차비용	280,000 (17.3)	216,000 (11.8)	219,000 (8.6)	74,600 (2.8)	216,665 (8.1)
운영비	250,000 (13.1)	233,000 (12.8)	362,000 (14.2)	733,240 (27.7)	249,980 (9.3)
홍보비	-	50,000 (2.7)	144,000 (5.6)	172,010 (6.5)	73,936 (2.7)
계	1,903,000 (100.0)	1,824,000 (100.0)	2,555,778 (100.0)	2,654,010 (100.0)	2,685,243 (100.0)

〈表 4-20〉 本 研究에서 提示한 國內入養費用과 4個 機關 提示額의 比較
(단위: 원)

구 분	A입양기관	B입양기관	C입양기관	D입양기관
현재입양비	1,700,000	1,500,000	1,200,000	1,500,000
입양기관에서 제시한 입양비용	1,824,000	2,555,778	2,654,010	2,685,243
본 연구에서 제시한 입양비용	1,903,000	1,903,000	1,903,000	1,903,000

다. 國外入養

국외입양비용은 다음과 같은 3가지 基本前提에 의하여 산출되었다. 첫째, 國外入養의 절반가량이 의료문제를 갖고 있는 아동이지만, 의료문제가 입양의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國外入養費用은 정상아와 의료문제아를 모두 포함하여 平均의 개념으로 산출한다. 둘째, 國外入養費用의 산출은 國內入養費用의 산출근거에 준하며,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만 정리하여 제시한다. 셋째, 국외입양비용은 국내입양비용에 기초하여 가중치를 두어 산출하도록 한다(表 4-21 참조). 절차비용의 일부인 여비, 아동이송비, 미혼모 상담활동비, 사후관리비 등은 국내입양과 동일한 비용이 소요된다. 그러나 양육기간의 증대에 따라서 증가요인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양육기간과는 비례관계가 없는 항목인 아동상담원과 보조인력의 인건비, 소모품비는 1.5배의 가중치를 두도록 한다. 한편 사진, 서류비는 양육기간과는 상관이 없지만 입양절차의 증가에 따라서 갖추어야 할 서류가 많다는 점에서 국내입양의 2배로 산출하기로 한다.

그러나 국외입양의 절반 가량이 의료문제를 갖고 있다는 점 때문에 의료관련 비용 즉 의료인 인건비, 신체검사, 예방접종, 비상약품비 등은 입양소요기간인 5개월의 절반에 해당하는 2.5배의 가중치를 두도록 한다. 더불어 아동양육비중 양육위탁비와 분유비 및 보조식품비는 양육기간에 정비례하므로 5배의 가중치를 두도록 한다.

〈表 4-21〉 本 研究에서 國外入養費用 算出에 使用한 加重値

내용별	항목	내역	가중치
국내입양과 동일한 비용	절차비용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비 • 아동이송비 • 미혼모 상담활동비 • 사후관리비 • 기관운영에 필요한 제반운영비 	1
	운영비		
양육기간의 증대에 따른 추가비용발생	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상담원 인건비 • 보조인력인건비 	1.5
	아동양육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모품비 (피복, 이불, 기저귀, 우유병등) 	
절차의 증가에 따른 비용증가	절차비용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진 • 서류비 	2
국외입양아의 특성상 증가하는 비용	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인 인건비 	2.5
	아동양육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체검사(선천성대상이상검사 포함) • 예방접종, 비상약품 	
양육기간에 정비례하는 추가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육위탁비: 위탁모 정규사례비 위탁모 특별사례비 	5
국외입양에만 필요한 비용	아동양육비 절차비용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병인비 • 비자대 및 여권 • 출국용품비 	-

1) 人件費

가) 入養兒 1名當 兒童相談員 人件費

아동상담원이 국외입양에 있어서 담당하게 되는 역할은 ① 아동 인수(Intake) 상담, ② 상대 입양기관에서 행한 양친에 대한 조사(Home Study) 자료 檢討 및 兒童 選定, ③ 모국방문서비스(모국방문사업, 모국어 연수사업, 모국에 대한 자료지원 사업 등), ④ 親父母와의 상봉 주선과 같은 事後管理 등이다.

국내입양에 비하여 국외입양은 입양에 소요되는 期間이 길며, 서류 준비등 行政的 節次가 더 많지만, 국내입양에 비하여 상담 절차가 아주 적기 때문에 국내입양의 1.5배로 人件費를 산출한다.

— 兒童相談員 人件費 算出의 前提 —

아동상담원의 인건비는 국내입양의 1.5배로 산출한다.

— 入養兒 1名當 兒童相談員 人件費 —

아동상담원 인건비: $360,000\text{원} \times 1.5 = 540,000\text{원}$

나) 入養兒 1名當 補助人力 人件費

— 補助人力 人件費 算出의 前提 —

1. 아동상담원 대비 보조인력의 비율을 1대 2로 한다.
2. 보조인력의 인건비는 국내입양의 1.5배로 산출한다.

아동상담원 대비 補助人力의 비율을 1대 2로 한것은 국외입양에 필요한 행정적 절차가 많아서 보조인력이 담당할 수 있는 아동의 수가 적기 때문으로, 국내 입양의 1대 1에 비하여 높은 것이다. 또한 국외 입양에 소요되는 期間이 국내입양에 비하여 길기 때문에 국내입양의 1.5배 加重值를 두도록 한다.

— 入養兒 1名當 補助人力의 人件費 —

보조인력 인건비: $600,000\text{원} \times 1.5 = 900,000\text{원}$

다) 入養兒 1名當 醫療人 人件費

— 醫療人 人件費 算出의 前提 —

의료인 인건비는 국내입양비의 2.5배로 한다.

국내입양에 비하여 養育期間이 길며, 면밀한 의료적 관심이 필요한

아동이 많으나, 기간에 정비례하는 것은 아니므로 加重値를 양육기간인 5개월의 1/2에 해당하는 2.5배로 한다.

<p>————— 入養兒 1名當 醫療人の 人件費 —————</p> <p>의료인 인건비 = 175,000원 × 2.5 = 437,500원</p>
--

라) 入養兒 1名當 總人件費

입양아 1명당 총인건비는 아동상담원의 인건비, 보조인력 인건비, 의료인 인건비를 합한 금액인 1,877,500원으로 산출되었다. 총인건비중 아동상담원의 인건비는 29%인 54만원이며, 보조인력 인건비는 48%인 90만원, 의료인 인건비는 23%인 43만 7천 5백원이다. 국내입양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兒童相談員 인건비의 비중이 낮은 대신에 補助人力의 인건비 비중이 높다.

————— 入養兒 1名當 總人件費 —————		
아동상담원 인건비+보조인력 인건비+의료인 인건비 = 1,877,500원		
540,000	900,000	437,500
(28.8%)	(47.9%)	(23.3%)

2) 兒童養育費

가) 入養兒 1名當 養育委託費/ 粉乳費 및 補助食品費

<p>————— 養育委託費/ 粉乳費 및 補助食品費의 前提 —————</p> <p>국외입양에는 평균 5개월이 소요되므로 국내입양의 5배로 산출한다.</p>

—— 入養兒 1名當 養育委託費/ 粉乳費 및 補助食品費 ——
위탁모 정규사례비: $300,000\text{원} \times 5 = 1,500,000\text{원}$
위탁모 특별사례비: $10,000\text{원} = 50,000\text{원}$
분유비 및 보조식품비: $30,000\text{원} \times 5 = 150,000\text{원}$

나) 入養兒 1名當 消耗品費

—— 消耗品費 算出의 前提 ——
양육기간에 比例하지 않으므로, 國內입양의 1.5배의 加重值를 준다.

—— 入養兒 1名當 消耗品費 ——
소모품비: $100,000\text{원} \times 1.5 = 150,000\text{원}$

다) 入養兒 1名當 身體檢査/豫防接種 및 非常醫藥品

—— 身體檢査費/豫防接種 및 非常醫藥品算出의 前提 ——
가중치를 양육기간이 5개월의 1/2에 해당하는 2.5배로 한다.

國內입양에 비하여 ① 양육기간이 길며, ② 면밀한 의료적 관심이 필요한 아동이 많고 ③ 지속적으로 상대입양기관에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러나 기간에 정비례하는 것은 아니며 國外입양아의 절반가량만이 의료문제를 갖고 있으므로 가중치를 양육기간이 5개월의 1/2에 해당하는 2.5배로 한다.

—— 入養兒 1名當 身體檢査費/豫防接種 및 非常醫藥品 ——
신체검사비: $28,000\text{원} \times 5 \times 0.5 = 70,000\text{원}$
예방접종 및 비상약품비: $10,000\text{원} \times 5 \times 0.5 = 25,000\text{원}$

라) 入養兒 1名當 外來 및 入院診療費/看病人費

—— 外來 및 入院診療費/看病人費 算出의 前提 ——

입양아 1명당 외래 및 입원진료비로 100,000원, 간병인비로 200,000원을 책정한다.

국외입양아가 국내입양아에 비하여 醫療問題를 가질 確率이 높기는 하나 경미한 경우는 입양기관에서 고용 또는 촉탁으로 근무하고 있는 醫師의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외래 진찰이나 입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전체 아동의 一部일 것이다. 따라서 입양아 1명당 외래 및 입원진료비를 100,000원으로 책정한다. 또한 입원시 필요한 看病人費를 별도로 책정한다. 기관별로 준고용상태의 특정 간병인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입양기관에서 간병인에게 지불하고 있는 금액과 국외입양 규모의 검토를 통하여 입양아 1인당 간병인비를 20,000원으로 책정한다.

—— 入養兒 1名當 外來 및 入院診療費/看病人費 ——

외래 및 입원진료비: 100,000원
간병인비: 200,000원

마) 入養兒 1名當 總兒童養育費

—— 入養兒 1名當 總養育費 ——

양육위탁비 + 분유 및 보조식품비 + 신체검사/예방접종비 +
1,550,000 150,000 95,000
(75.1%) (7.3%) (4.6%)
외래 및 입원치료비/간병인비 = 2,065,000원
120,000
(5.8%)

兒童養育費는 2,065,000원으로 양육위탁비가 가장 비중이 높아 75%를 차지하고 있다. 국내입양과 비교하여 보면 소모품비의 비중이 낮은 대신 양육위탁비와 외래 및 병원진료비의 비중이 높다.

3) 節次費用

가) 入養兒 1名當 寫眞 및 書類費

寫眞 및 書類費 算出의 前提

국내입양의 2배의 加重치를 둔다.

국외입양은 국내입양에 비하여 필요한 서류 및 사진이 많으므로 국내입양의 2배의 加重値를 준다.

入養兒 1名當 寫眞 및 書類費

입양아 1명당 사진비: $5,000 \times 2 = 10,000$ 원

입양아 1명당 서류비: $5,000 \times 2 = 10,000$ 원

나) 入養兒 1名當 비자대 및 旅券

비자대 및 旅券 관련 費用 算出의 前提

美國의 경우를 기준으로 하여 비용을 산출한다.

入養兒 1名當 비자대 및 旅券 관련 費用

비자대 및 여권비: $160,000(\$200) + 40,000 = 200,000$ 원

다) 入養兒 1名當 旅費

旅費費用

국내입양과 同一한 액수인 20,000원을 입양아 1명당 旅費로 책정한다.

국내입양의 경우와 동일한 과정이 필요하므로 국내입양의 경우와 동일한 금액을 책정한다.

라) 入養兒 1名當 兒童移送費

兒童移送費 算出의 前提

1. 아동인수까지의 소요 旅費는 국내입양과 동일하게 책정하며 공항이용료로 10,000원을 첨가한다.
2. 航空料는 국가별로 상이하므로 入養費와 별도로 받는 것을 原則으로 한다.

入養兒 1名當 兒童移送費

이송비: 50,000원
 공항이용료: 10,000원

마) 入養兒 1名當 未婚母 相談活動費 및 事後管理費

未婚母 相談活動費 및 事後管理費 算出의 前提

국내입양의 경우와 동일한 금액을 책정한다.

입양특례법은 국외입양의 경우 입양아가 입양된 국가의 국적을 취득할 때까지 사후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외입양아동에 대한 持續的인 事後管理가 필요하다. 또한 앞으로 사후관리서비스에 대한

需要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입양특례법은 입양기관으로 하여금 국외로 입양된 입양아를 위하여 모국방문사업 등 입양아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입양자가 成年이 되어서 요청하는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후관리비를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기본적인 사후관리에 필요한 금액으로 50,000원을 책정한다.

入養兒 1名當 未婚母 相談活動費 및 事後管理費 미혼모 상담활동비: 100,000원 사후관리비: 50,000원
--

바) 入養兒 1名當 出國用品費

出國用品費 出國用品費로 50,000원을 책정한다.

국외입양의 경우 가방, 한국안내 책자 등 出國用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출국용품비로 50,000원을 책정한다.

사) 入養兒 1名當 總節次費用

入養兒 1名當 總節次費用			
사진 및 서류비	비자대 및 여권	여비	이송비
20,000	200,000	20,000	60,000
(4.0%)	(40.0%)	(4.0%)	(12.0%)
미혼모상담활동비 + 사후관리비 + 출국용품비 = 500,000원			
100,000	50,000	50,000	
(20.0%)	(10.0%)	(10.0%)	

총절차비용은 500,000원으로서, 이중 비자 및 여권비용이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혼모 상담활동비 20%, 이송비 12%, 사후관리비와 출국용품비가 각각 10%를 차지하고 있다.

4) 運營費

국내입양을 위해 필요한 운영비와 국외입양을 위해 필요한 운영비를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국내입양의 경우와 동일한 금액을 책정한다.

5) 算出된 國外入養費用

이상의 산출근거에 의해 제시된 입양아 1명당 國外入養費用은 <表 4-22>에 제시되어있다. 즉 總入養費用은 4,692,500원이며, 이중 인건비는 1,877,500원으로 40.0%, 아동양육비는 2,065,000원으로 44.0%, 절차비용은 500,000원으로 10.7%, 운영비는 250,000원으로 5.3%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입양기관에서 제시한 입양비용의 평균(4,847,141원)보다는 적지만 기부금을 포함하여 양부모로부터 받고 있는 총입양비와는 비슷한 액수이다(表 4-24 참조).

〈表 4-24〉 本 研究에서 제시한 國外入養費用과 4個 機關 提示額의 比較
(단위: 원)

구 분	A입양기관	B입양기관	C입양기관	D입양기관
현재 입양기관이 받고 있는 입양비	4,360,000	2,840,000	4,960,000	5,160,000
입양기관이 제시한 입양비용	4,722,000	4,277,050	5,087,580	5,301,934
본연구가 제시한 입양비용	4,692,500	4,692,500	4,692,500	4,692,500

V. 國內入養機關의 入養費用 分析結果

1. 國內入養의 現況

國內入養을 할 수 있도록 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지정을 받은 27개 기관 중에서 4개 기관은 국외입양과 국내입양을 동시에 담당하고 있고, 23개 기관은 國內入養만을 담당하고 있다. 國內入養機關의 수는 전체의 85%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입양시킨 아동의 수는 전체 國內入養의 30% 내외의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表 5-1 참조). 이는 각 國內入養 지정기관이 入養을 주업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유아시설이나 아동상담소 등에서 副次的인 사업으로 國內入養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表 5-2와 表 5-3 참조). 23개 기관 중 입양업무만을 담당하는 入養專門機關은 1개이며, 國內入養의 규모도 가장 커서 4개의 국내외 입양기관을 제외한 국내입양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총입양의 1/3을 담당하고 있다.

〈表 5-1〉 國內入養의 入養機關 種類別 構成比

(단위: 명, (%))

	1991	1992	1993	1994	1995
총계	1,088 (100)	1,027 (100)	1,085 (100)	1,239 (100)	1,321 (100)
국외입양지정기관 (4개)	735 (67.6)	669 (65.1)	726 (66.9)	849 (68.5)	932 (70.6)
국내입양지정기관 (23개)	353 (32.4)	358 (34.9)	359 (33.1)	390 (31.5)	389 (29.4)

資料: 보건복지부, 아동복지과 내부자료.

〈表 5-2〉 國內入養機關의 年入養規模別 分布(1995年 現在)

(단위: 개소)

입양규모	기관수
총계	23
5명 이하	10
10~20명	7
21~100명	5
101명 이상	1

資料: 보건복지부, 아동복지과 내부자료.

〈表 5-3〉 國內入養機關의 機關種類別 分布

(단위: 개소)

기관종류	기관수
총계	23
일시보호소	2
보육원·육아원	15
아동상담소	4
복지관	1
입양전문기관	1

資料: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사업지침』, 1996.

本章에서는 第4章에서 살펴본 국내입양과 국외입양을 모두 실시하는 기관의 國內入養費用 산출과는 달리, 모든 入養對象兒를 국내입양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산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입양전문기관 1개 기관의 자료와 국내입양지정기관 중 가장 그 수가 많은 영유아시설 1개 기관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영아시설에서 이루어지는 국내입양은 국내·외 입양전문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국내입양과 마찬가지로 건강한 아동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국내·외 입양전문기관의 경우에 비하여 입양소요 기간이 길고 국고보조를 받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국내입양지정기관에

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다수의 入養이 건강한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嬰兒施設의 資料는 현재의 정상아 중심의 국내입양만을 수행하는 대부분의 國內入養指定機關에 해당하는 국내입양비용을 파악하는데 기초가 된다. 그러나 이들 국내입양지정기관에서는 건강한 아동을 주요 입양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숙아와 장애아의 국내입양이 활성화될 경우에 필요한 비용을 추정하는데는 制限點이 있다. 따라서 국내입양이 활성화되었을 경우에 예상되는 입양비용을 추정하는 데는 醫療問題를 가진 아동의 입양이 비교적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國內入養專門機關의 資料가 함축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반면, 一時保護所나 兒童相談所의 경우는 入養規模가 적을 뿐만 아니라 입양대상아동의 양육이 그 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국내입양비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한계를 가지는 것으로 판단되어 本分析對象에서 除外하였다.

2. 國內入養指定機關의 入養費用(正常兒 위주의 國內入養)

가. 基礎資料分析

1) 歲入·歲出 分析

현재 정상아의 국내입양만을 수행하고 있는 국내입양지정기관에서의 國內入養費用을 산출하기 위하여 국가보조를 받으면서 국내입양을 실시하고 있는 E영아시설의 자료를 기초자료로 사용하였다. E영아시설은 國內入養機關으로 지정되어 영아시설의 施設과 人力을 활용할 수 있고 국가보조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4개 국내·외 입양전문기관이나 1개 국내 입양전문기관과 세입과 세출의 구성에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다. E영아

시설의 세입을 살펴보면 政府補助金과 양부모로부터 징수하는 入養費 收入이 각각 전체 세입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表 5-4 참조).

이는 국외입양과 국내입양을 모두 담당하는 입양기관의 경우 寄附金과 財團轉入金이 세입의 약 20% 내외만을 차지할 뿐 대부분의 수입이 입양수속금 혹은 입양기부금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하여 政府補助金의 비중이 높은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입양수입이 전체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현저히 낮다.

〈表 5-4〉 嬰兒施設 國內入養部署의 歲入·歲出 現況
(E 嬰兒施設의 境遇)

(단위: 원, (%))

특성	금액
세입	29,620,600(100.0)
정부보조금	14,986,000(50.6)
입양기부금	13,800,000(46.6)
기타	834,600(2.8)
세출	29,629,600(100.0)
인건비	14,586,360(49.2)
사업비	2,920,000(9.9)
운영비	1,523,240(5.1)
홍보비	600,000(2.0)
기타	10,000,000(33.8)

歲出의 경우를 살펴보면, 영아시설의 사무실과 집기를 사용함으로써 運營費를 절감하고 있으나, 세입 중 일정 부분을 영아시설의 특별사업비로 사용하고 있어서 실제로는 項目分類上의 差異에 불과할 뿐이다.

또한 사업비의 비중이 약 10%로 국내외 입양전문기관의 40~50%에 비하여 현저히 낮다. 이는 영유아 시설에서 국가보조로 양육되고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입양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養育費가 들지 않기 때문이다. 즉 국내입양비용 중 상당부분을 政府補助로 충당하고 있는 것이다.

人件費의 경우, 의료인력은 전적으로 영아시설에 고용되어 있는 의료인에 의존하고 있어 의료인 관련 인건비 지출이 없고, 補助人力의 경우도 영아시설 인력의 도움을 일부 받고 있다. 따라서 입양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상담원 1인의 인건비만이 歲出에서 계산되고 있으며, 인건비는 세출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인건비는 국고보조만으로는 부족하여 道費로 不足額을 충당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입양업무 종사자의 月給水準이 낮다는 것은 아직도 입양업무 종사자에 대한 待遇가 개선되어야 함을 시사해주고 있다.

2) 人的 構成

E영아시설의 경우 한 명의 입양담당자가 相談과 事務를 겸하고 있으므로 연 23명을 입양시킨 1995년의 아동상담원 1인당 입양아수는 23명이다. 이는 국외입양과 국내입양을 동시에 담당하고 있는 4개 입양전문기관과 비교하여 볼 때 비교적 낮은 비율이다. 그러나 국내입양 지정기관에서는 兒童相談員이 이들 4개 기관에서 보조인력이 담당하는 역할도 직접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入養擔當者가 담당하고 있는 業務量이 적은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한편 兒童의 養育은 영아시설에서 비입양대상아와 함께 이루어지고 있으며, 영아시설 소속 직원에 의하여 의료서비스가 실시되고 있다.

3) 嬰兒施設에서 받고 있는 入養費

E영아시설에서 양부모로부터 받고 있는 입양비는 1996년 현재 60만원으로 項目別로 보면 양육비에 委託費가 없고 人件費, 入養節次費, 運營費, 弘報費 등의 항목도 전혀 포함되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입양비의 산출이 3개월 정도의 아동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서 국

내·외 입양을 담당하고 있는 4개기관의 경우보다 다소 개월수가 많은 아동이 입양되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었다.

현재 養父母로부터 60만원 가량의 入養費를 받고 있는데 그 산출근거를 보면, 의류비가 30만원으로 1/2을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분유비와 의료비가 각각 15만원을 차지하고 있다. 1995년도 현재 23명이 입양되어서 입양비 수입은 13,800,000원이었다(表 5-5 참조).

〈表 5-5〉 E 嬰兒施設에서의 入養費 算出內譯

(단위: 원, %)

항목	세부항목	액수	비율
아동양육비	분유비	150,000	25.0
	의류비	300,000	50.0
	의료비	150,000	25.0
총 입양비		600,000	100.0

나. 國家補助를 받는 國內入養指定機關의 入養費用 算出

국내입양지정기관에서는 현재 양부모로부터 60만원의 入養費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는 인건비와 기타 양육관련 비용을 國家로부터 補助받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실제 입양아 1인당 소요되는 入養費用은 이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산출되었다.

國內·外入養專門機關에서 이루어지는 국내입양의 대부분이 1개월 이내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비하여 국내입양지정기관에서는 그보다 입양소요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입양에 소요되는 기간을 3개월로 전제하고 국내입양지정기관에서의 아동양육비를 산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국내입양지정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국내입양에 소요되는 입양비용은 총 2,583,000원으로 산출되었다(表 5-6 참조). 양육기간의 연장에 따라서 아동양육비가 증대되어 총 입양비용의 45.2%

에 해당하는 1,168,000원으로 산출되었고, 또한 인건비가 835,000원으로 32.3%, 절차비용이 330,000원으로 12.8%, 운영비가 250,000원으로 9.7%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국내입양지정기관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2,583,000원의 27%에 해당하는 698,000원으로 산출되었다. 이 액수는 현재 E영아원에서 받고 있는 금액 보다 98,000원이 많은 금액이다. 산출된 입양비용은 제4장에서 제시된 국내입양비용산출의 기본전제에 기초하고 3개월이라는 입양소요기간을 고려하여 산출된 것이다. 人件費는 전액 國庫補助와 道費로 충당이 되고 있어 국내입양지정기관에서는 부담하지 않고 있으며, 兒童養育費 중 예방접종 및 비상의약품과 외래 및 입원진료비도 政府補助에 의해 충당되고 있어 직접 부담하고 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粉乳 및 補助食品費의 경우는 4개 입양기관에 비하여 入養期間이 길고, 국가보조만으로는 충족되기 어려운 점이 있어 국내입양지정기관에서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국내입양지정기관이 부담해야 하는 입양비용에 세부항목으로 포함시켰다. 또한, 消耗品費는 일부 국고보조가 가능하므로 4개 국내외입양기관의 입양비에서 책정된 10만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5만원을 국내입양지정기관이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책정하였다.

또한 현재 영아시설에서 양육되고 있는 아동이 입양대상 아동이므로 養育委託費와 兒童移送費는 국내입양지정기관에서는 부담하지 않는 항목이다. 養父母教育費와 事後管理費는 이들 기관에서는 전혀 시행되고 있지 않지만 입양전문 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 同一한 수준의 입양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국내입양지정기관이 부담해야 하는 입양비용에 포함시켰다. 따라서 입양기관에서 良質의 養父母教育과 事後管理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감독기능의 강화가 요구된다. 運營費는 영아시설의 사무실과 인력을 일부 활용하고 있어서 별도의 지출비용은 요구되지 않으나, 반대급부로 영아원에 사업

비를 보조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국내입양지정기관이 직접부담해야 하는 入養費用에 포함시키도록 하였다

〈表 5-6〉 본 研究에서 提示한 國內入養指定機關의 入養費用

(단위: 원)

항 목	내 역	국내입양지정기관이 직접부담해야 하는 국내입양비용	입양아 1인당 총 소요비용
인건비	아동상담원인건비	국고보조	360,000
	보조인력인건비	×	300,000
	의료인의 인건비	×	175,000
아동양육비	양육위탁비: 위탁모 정규사례비	×	300,000×3=900,000
	위탁모 특별사례비	×	10,000×3= 30,000
	분유비 및 보조식품비	30,000×3=90,000	30,000×3= 90,000
	소모품비	50,000	100,000
	(피복, 이불, 기저귀, 우유병 등)		
	신체검사(선천성대사이상검사포함)	28,000	28,000
	예방접종, 비상약품	×	10,000
	외래 및 입원진료비	×	10,000
절차비용비	사진	5,000	5,000
	서류비	5,000	5,000
	여비	20,000	20,000
	아동이송비	×	50,000
	미혼모 상담활동비	100,000	100,000
	양부모교육비	100,000	100,000
	사후관리비	50,000	50,000
운영비	기관운영에 필요한 제반운영비	250,000	250,000
합계		698,000	2,583,000

〈表 5-7〉 國內入養指定機關의 算出된 入養費用과 直接負擔費用 比較

(단위: 원, (%))

항목	직접부담 총비용(A)	총입양소요비용(B)	차액(B-A)
인건비	0(0.0)	835,000(32.3)	835,000(44.3)
아동양육비	168,000(24.1)	1,168,000(45.2)	1,000,000(53.1)
절차비용	280,000(40.1)	330,000(12.8)	50,000(27.0)
운영비	250,000(35.8)	250,000(9.7)	0(0.0)
합계	698,000(100.0)	2,583,000(100.0)	1,885,000(100.0)

이러한 기준에 기초하여 계산된 入養費用중 운영비가 25만원으로 총액의 35.8%이며, 아동양육비가 16만 8천원으로 24.1%, 절차비가 28만원으로 40.1%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실제 입양에 소요되는 비용의 구성에 비하여 아동양육비의 비중이 낮아지고 절차비용과 운영비의 비중이 높은 것이다.

이러한 분석결과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국내입양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입양비용이 증가하며, 그 증가액의 대부분은 아동양육에 소요되는 양육비이다. 국내입양지정기관의 경우는 영아시설에 지급되고 있는 국고보조에 의존하여 이를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입양기간의 연장에 따르는 비용에 대한 국고보조가 없다면 결국은 양부모의 부담으로 남겨질 부분인 것이다.

3. 國內入養專門機關의 入養費用

第4章에서 제시한 국내·외 입양전문기관의 國內入養費用은 미숙아나 장애아동이 거의 국내입양되지 않고 있는 現實을 감안하여 제시된 것이기 때문에 미숙아나 장애아동을 국내입양하는데 소요되는 추가비용이 고려되지 못하였다. 또한 國內入養指定機關의 入養費用分析은 입양기관이 국내입양만을 수행할 경우 발생하게 되는 입양소요기간의 연장에 따른 입양비용의 증가와 현행 국고보조하에서 국내입양지정기관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산출하는데 기초를 제공해주는 하지만, 현재 국내입양지정기관에서는 정상아의 국내입양만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입양의 활성화가 이루어져 미숙아나 장애아동들도 국내입양이 가능해질 경우 입양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하는데는 제한점을 갖고 있다.

國內入養이 活性化되기 위해서는 미숙아나 장애아동을 장기간 양육

하면서 양부모를 찾을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本節에서는 미숙아나 장애아동의 국내입양이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국내입양전문기관의 基礎資料를 분석하고, 그에 기초하여 모든 입양대상 아동을 국내입양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 國內入養專門機關의 基礎資料 分析

1) 入養兒의 特性

우리나라의 유일한 국내입양전문기관인 F입양원은 1989년도에 설립되어 “우리 아이는 우리 손으로”라는 모토아래 國內入養만을 실시하고 있다. F입양원이 다른 국내입양지정기관이나 국내·외 입양전문기관과 差別化되는 점은 의료문제를 가지고 있는 아동의 국내입양을 등한시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국내·외 입양전문기관의 경우 대부분의 미숙아나 장애아동이 國外入養되고 있는데 비하여(表 4-1 참조), F입양원에서는 총입양아의 20%가 醫療問題를 가지고 있는 兒童으로서 기관에서 장기간 아동을 보호하면서 양부모를 찾기위해 노력하고 있다(表 5-8 참조).

〈表 5-8〉 F入養院의 入養現況 및 構成(1994年)

(단위: 명)

입양아의 특성	아동수(%)
건강한 아동	116(80.6)
의료문제가 있는 아동	28(19.4)
총아동	144(100.0)

이러한 노력은 醫療問題를 가진 아동도 이들을 장기간 보호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만 주어진다면 국내입양될 수 있다는 전제에 의한 것으로 國內入養을 活性化시키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시도가

다. 즉 F입양원의 자료에 의하면, <表 5-9>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내 입양된 의료문제아동 중 절반 이상이 인수시 未熟兒로서, 이는 미숙아가 다른 의료문제를 가진 아동에 비해 비교적 國內入養이 容易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¹¹⁾.

<表 5-9> F入養院의 醫療問題를 가진 兒童의 醫療問題 類型別 分布 (단위: 명)

의료문제유형	1991	1992	1993	1994	1995	계
미숙아	9	9	17	23	15	73
훈혈아	-	-	-	1	-	1
질병아(매독, 패혈증)	-	-	-	5	6	11
물리치료대상(중추신경부조화증등)	-	4	3	2	2	11
RH 혈액형	1	1	-	-	1	3
심장병	-	1	1	2	-	4
간질	-	-	-	1	1	2
사경	-	-	-	1	3	4
선천성사시	-	-	1	-	-	1
언청이	-	-	1	-	-	1
손, 발, 코 기형	-	-	-	3	-	3
팔기형	1	-	-	1	-	2
뇌수종후천성청각장애	-	-	-	1	-	1
안검하수증	-	2	-	-	-	2
합계	11	17	23	42	28	121

즉 제반 여건이 마련된다면 먼저 미숙아의 國內入養이 활성화될 수 있는 可能性을 의미하는 것이다. 저체중아 다음으로 빈도가 높은 의료 문제아동은 疾病과 物理治療 대상아동으로 지난 5년간 각각 11명씩 國內入養되었다. 즉, 질병 또는 물리치료 대상아동과 같이 시간이 걸 리지만 궁극적으로는 건강한 아동이 될 수 있는 경우에도 國內入養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이는 이들 아동이 건강

11) 앞 장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해외입양된 장애아동 중 상당수가 저체중아 입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해지는데 걸리는 養育期間의 長期化와 治療비용증가에 따르는 費用의 負擔이 장애아동의 국내입양율이 저조한 한 원인이라는 것을 뜻한다.

F입양원에서 현재 보호중인 醫療問題 兒童의 자료를 보면 대부분이 저체중이나 물리치료를 받고 있는 아동이며, 심한 장애아동의 수는 매우 적는데 이는 이 기관에 장애아동을 돌볼 수 있는 專門的인 施設이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심한 장애아동을 보호하지 못하는 것으로 짐작된다. 또한 현재 보호하고 있는 醫療問題를 갖고 있는 兒童의 25%가 1년 이상의 보호를 받고 있어서 제4장에서 이루어진 國內·外 入養 專門機關의 국내입양비 산출의 前提가 되었던 1달이라는 양육기간을 넘어서고 있는 아동이 대부분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아동의 인수에서 입양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는 데 따르는 양육비 부담이 입양기관으로 하여금 醫療問題를 가진 兒童의 국내입양 노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을 추측케 한다.

〈表 5-10〉 障礙兒童의 保護期間(F入養院의 現在 保護중인 障礙兒童의 境遇)
(단위: 명)

특성	입양아수
1개월 미만	3
1~3개월 미만	5
3~12개월 미만	4
1년 이상	4
총 아동수	16

〈表 5-11〉 D入養機關의 海外入養된 兒童의 入養所要期間
(단위: 명)

특성	입양아수
5개월 미만	14
5~6개월 미만	41
6~7개월 미만	26
7~8개월 미만	7
8~12개월 미만	10
1년 이상	4

2) 歲入과 歲出現況

國內入養專門機關인 F입양원은 종교계 기관으로 타 기관과는 다른 특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F입양기관 자료 분석 결과를 일반화시키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表 5-12>를 보면 F입양원이 국외 및 국내입양을 모두 실시하는 입양 전문기관에 비하여 入養費 관련수입이 22.4%로 낮은 반면 寄附金과 法人轉入金의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F입양원이 宗教機關으로써 재단의 재정상태가 좋고 신도들로부터의 寄附金이 비교적 수월하게 모아질 수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러한 수준의 기부금이나 법인전입금이 다른 國內入養專門機關에도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表 5-12> F入養院의 歲入·歲出現況

(단위: 원, (%))

구성	액수
세입	589,558,058(100.0)
입양기부금	131,900,000(22.4)
기부금	207,670,280(35.2)
법인전입금	221,378,140(37.5)
기타(이월금, 잡수입등)	28,609,638(4.8)
세출	589,558,058(100.0)
인건비	232,770,122(39.5)
여비	4,093,660(0.7)
사업비	92,132,460(15.6)
운영비	193,192,380(33.5)
홍보비	11,017,500(1.9)
기타	52,351,936(8.9)

3) 人的構成

앞에서 지적된 것처럼 F입양원이 종교관련 기관이기 때문에 갖는 특수성은 人的 構成에도 나타나고 있다. 18명의 전체 인원중 2명이 宗

敎人으로서 이중 1人이 無報酬로 일하고 있다. 무보수로 일하고 있는 1명의 직책이 총무이므로 정상적으로 보수를 지급할 경우에 예상되는 人件費 負擔을 저하시키고 있다.

인력의 기능별 구성비를 보면 4개 국내외 입양전문기관에 비하여 큰 차이는 없지만 補助人力의 구성비가 약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능별 담당 입양아수를 살펴보면 兒童相談員의 경우 1인당 연간 담당하는 입양아수는 26명으로 비교적 낮은 편이다. 보조인력의 담당 입양아수도 낮은 편이며, 특히 醫療人力이 담당하는 입양아수는 현저히 낮다. 이는 低體重兒와 障礙兒 등 특별한 의료적 관심을 요하는 아동을 많이 양육하고 있는데 따르는 결과로 보이며, 기관 운영에 있어서 높은 인건비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더불어 타 기관과는 달리 간호보조원이 없고 전부 看護士라는 점도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表 5-13 참조).

〈表 5-13〉 F入養院의 人的構成

(단위: 명)

내 용	구 성
총인원	18(100.0)
기능별 구성비	
아동상담원	5(26.3)
보조인력	11(57.9)
의료인	2(15.8) (축탁의: 4명)
각 기능별 담당입양아수	
아동상담원 1인당 입양아수	130/5=26
보조인력 1인당 입양아수	130/11=11
의료인 1인당 입양아수	130/6=22
조직구성별 인원	
사무국(총무국)	3(15.8)
일시보호소·부속의원	11(57.9)
기타	5(26.3)

4) 國內入養專門機關이 제시한 入養費用 分析

F入養院에서 제시한 國內入養費의 構成比를 보면 4개 國內·외 입양 전문기관에 비하여 人件費의 비중이 높다. 1명이 무보수로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人件費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앞에서 지적되었던 것처럼 職員이 담당하고 있는 아동의 수가 비교적 적고, 앞의 4개 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賃金水準이 높은데 기인하다. 즉 4개 기관의 인건비가 1인당 130만원 내외인데 비하여, F입양원의 경우에는 170만원 선으로 높은 편이다(表 5-14 참조).

〈表 5-14〉 F入養院에서 提示한 入養費用의 算出內譯

(단위: 원, (%))

내역	항목별	액수(%)
인건비		1,772,307(56.7)
아동양육비		528,075(16.9)
	위탁비	75,000
	분유비	147,692
	간식비	9,230
	소모품	104,615
	의료비	191,538
절차비용		6,442(0.2)
	사 진	5,539
	서류비	923
운영비		695,373(22.2)
홍보비		123,076(3.9)
총계		3,125,294(100.0)

註: 의료비에는 신체검사, 예방접종,비상의약품, 외래 및 입원진료비 등이 포함됨.

반면 兒童養育費의 비중은 약 17%로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自願奉仕者가 委託母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양육에 필요한 物品 중 상당 부분이 喜捨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련 비용이 전부 입

양비용에 계산된다면 입양비는 더 높아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F입양원의 運營費와 弘報費는 타 기관에 비하여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이 기관이 비교적 最近에 설립되어서 시설유지에 필요한 基本的인 裝備들(예를 들면 시설용 냉장고, 세탁기, 인큐베이터의 추가구입 등)을 계속 구입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홍보비의 비중이 높은 이유는季刊으로 발간되는 소식지 때문이다.

결국 F입양원에서 제시한 入養費用의 絶對 額數는 310만원이 넘고 있어서 4개 입양전문기관에서 제시한 입양비가 250만원 내외인 것에 비하여 60만원 이상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A입양기관에서 제시한 180만원의 2배에 약간 못 미치는 금액이다. 이는 4개 기관이 국외입양에 따르는 入養寄附金 등으로 국내입양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赤字를 매꾸거나, 또는 대부분 건강한 아동을 국내입양시킴으로써 養育期間이 1개월에 못 미쳐 실제 國內入養에 드는 비용이 매우 적다는 점에도 그 원인이 있을 것이다. F입양원은 國內入養만을 담당할 뿐 아니라 상당수의 의료문제아를 국내입양시키고 있기 때문에 비용부담이 높으며, 그에 따라 財團補助와 寄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양비용이 높게 산출되는 것으로 보인다.

나. 國內入養活性化時的 國內入養費用 算出

1) 醫療問題兒 國內入養費用 算出의 基準(保護期間: 2~6個月)

모든 入養對象 兒童이 國內入養이 될 경우 소용되는 입양비용은 다음과 같은 基本前提에 기초하여 산출되었다. 첫째, 1개월 이내에 입양되는 모든 아동에 대하여는 第4章에서 제시된 국내입양비용과 동일한 금액이 소요되는 것으로 본다. 둘째, 본 절에서는 2~6개월 사이에 이루어지는 국내입양에 대한 입양비용을 산출하도록 한다. 이는 國內入

養이 活性化되어 모든 入養대상아동이 國內入養될 경우에 1개월 이내에 入養이 이루어지지 않는 아동은 대부분이 醫療問題를 가지는 兒童 일 것이므로 第4章에서 산출된 것보다 많은 費用이 소요될 것으로 판 단되기 때문이다. 또한 양육기간이 6개월이 넘어서는 경우는 고려하지 않았는데, 이는 6개월을 넘어서는 장기간의 양육을 거쳐 入養되는 아 동의 경우는 의료문제 의 문제의 종류와 심각성에 있어서 多樣性을 가 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入養아의 경우는 의료문제 의 다양성을 고려한 개별 아동별 入養비의 책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 으로 판단되므로 본 절에서는 논의하지 않기로 한다.

2) 人件費

가) 入養兒 1名當 兒童相談員 人件費

—— 兒童相談員 人件費 算出의 前提 ——

아동상담원의 인건비는 건강한 아동의 국내입양비의 1.5배로 산출한다.

즉 건강한 아동의 입양에 비하여 입양에 소요되는 期間이 길며, 相 談의 節次가 길고 복잡하기 때문에 정상아 國內入養의 1.5배로 인건비 를 산출한다.

—— 入養兒 1名當 兒童相談員 人件費 ——

아동상담원 인건비: $360,000\text{원} \times 1.5 = 540,000\text{원}$

나) 入養兒 1名當 補助人力 人件費

————— 補助人力 人件費 算出의 前提 —————
 보조인력의 인건비는 국내입양의 1.5배로 산출한다.

입양에 소요되는 기간이 건강한 아동의 국내입양에 비하여 길기 때문에 1.5배의 가중치를 둔다.

————— 入養兒 1名當 補助人力의 人件費 —————
 보조인력 인건비: $300,000\text{원} \times 1.5 = 450,000\text{원}$

다) 入養兒 1名當 醫療人 人件費

————— 醫療人 人件費 算出의 前提 —————
 의료인 인건비는 국내입양비의 3배로 한다.

건강한 아동에 비하여 양육기간이 길며, 면밀한 의료적 관심이 필요한 아동이 많으나, 기간에 정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가중치를 양육기간 6개월의 1/2에 해당하는 3배로 한다.

————— 入養兒 1名當 醫療人의 人件費 —————
 의료인 인건비 = $175,000\text{원} \times 3 = 525,000\text{원}$

라) 入養兒 1名當 總人件費

총인건비는 아동상담원 인건비, 보조인력 인건비, 의료인 인건비를 합한 금액인 1,515,000원으로 산출되었다. 총인건비 중 아동상담원의 인건비는 36%인 54만원이며, 보조인력 인건비는 30%인 45만원, 의료

인 인건비는 35%인 52만 5천원이다. 人件費의 構成을 보면 정상아의 국내입양비에 비하여 아동상담원과 보조인력의 인건비가 낮아진 대신 의료인 인건비의 비중이 높아진 것이다.

入養兒 1名當 總人件費		
아동상담원 인건비+보조인력 인건비	의료인 인건비	총액
540,000	450,000	525,000
(35.6%)	(29.7%)	(34.7%)

3) 兒童養育費

가) 入養兒 1名當 養育委託費

養育委託費/粉乳費 및 補助食品費/外來 및 入院診療費/看病人費 算出의 前提
정상아 국내입양비를 기준으로 하고, 보호기간에 비례하여 책정한다.

入養兒 1名當 養育委託費/粉乳費 및 補助食品費/ 外來 및 入院診療費/看病人費
위탁모 정규사례비: 300,000원×양육기간
위탁모 특별사례비: 10,000원 ×양육기간
분유비 및 보조식품비: 30,000원×양육기간
외래 및 입원진료비: 100,000원×양육기간
간병인비: 200,000원×양육기간

나) 入養兒 1名當 消耗品費

— 消耗品費 算出의 前提 —

양육기간에 비례하지 않으므로, 정상아 국내입양의 1.5배의
가중치를 준다.

— 入養兒 1名當 消耗品費 —

소모품비: $100,000\text{원} \times 1.5 = 150,000\text{원}$

다) 入養兒 1名當 身體檢査/豫防接種 및 非常醫藥品

— 身體檢査費 算出의 前提 —

가중치를 정상아 국내입양의 2.5배로 한다.

건강한 아동의 국내입양에 비하여 醫療問題를 가진 兒童은 ① 양육
기간이 길며, ② 면밀한 의료적 관심이 필요한 아동이 많다. 그러나
기간에 정비례하는 것은 아니므로 가중치를 2.5배로 계산한다.

— 入養兒 1名當 身體檢査費 —

신체검사비: $28,000 \times 2.5 = 70,000\text{원}$

예방접종 및 비상약품비: $10,000 \times 2.5 = 25,000\text{원}$

4) 節次費用

가) 入養兒 1名當 寫眞 및 書類費/旅費/兒童移送費/未婚母 相談活動費/
養父母教育費

寫眞 및 書類費/旅費/兒童移送費/
未婚母 相談活動費/養父母教育費 算出의 前提
정상아의 國內입양과 동일한 금액을 책정한다.

入養兒 1名當 寫眞 및 書類費/旅費/
兒童移送費/未婚母相談活動費/養父母教育費
서류비: 5,000원
여비: 20,000원
아동이송비: 50,000원
미혼모 상담활동비: 100,000원
양부모교육비: 100,000원

나) 入養兒 1名當 事後管理費

事後管理費 算出의 前提
양육기간에 비례하지 않으므로, 정상아 國內입양의 2배의
가중치를 준다.

入養兒 1名當 事後管理費
사후관리비: $50,000 \times 2 = 100,000$ 원

5) 運營費

정상아의 국내입양을 위해 필요한 운영비와 동일한 금액을 책정한다.

6) 醫療問題兒童의 國內入養費用

이상의 산출근거에 의해 제시된 總入養費用은 <表 5-15>와 <表 5-16>에 제시되어있다. 즉 총입양비용은 保護期間에 상관없이 책정된 금액인 2,390,000원과 보호기간에 비례하여 책정되는 금액의 두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입양비용은 보호기간 1개월당 460,000원이 증가하여 2개월시는 3,310,000원, 3개월시는 3,770,000원, 4개월시는 4,230,000원, 5개월시는 4,690,000원, 6개월시는 5,150,000원으로 산출되었다.

〈表 5-15〉 醫療問題兒의 國內入養費用(保護期間 2~6個月)
(단위: 원)

항목	비용	내역	
고정액			
인건비	1,515,000	아동상담원 인건비	360,000×1.5
		보조인력인건비	300,000×1.5
		의료인 인건비	175,000×3
아동양육비	245,000	소모품비(피복, 이불, 기저귀, 우유병 등)	100,000×1.5
		신체검사(선천성대사이상검사 포함)	28,000×2.5
		예방접종, 비상약품	10,000×2.5
절차비용비	380,000	사진	5,000
		서류비	5,000
		여비	20,000
		아동이송비	50,000
		미혼모 상담활동비	100,000
		양부모교육비	100,000
		사후관리비	100,000
운영비	250,000	기관운영에 필요한 제반운영비	250,000
보호기간 비례액			
아동양육비	460,000× 보호기간	양육위탁비: 위탁모 정규사례비	300,000×보호기간
		위탁모 특별사례비	10,000×보호기간
		분유비 및 보조식품비	30,000×보호기간
		외래 및 입원진료비	100,000×보호기간
		간병인비	20,000×보호기간

註: 1) 입양까지 소요된 개월수

〈表 5-16〉 保護期間別 入養費用
(단위: 원)

항목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인건비	1,515,000	1,515,000	1,515,000	1,515,000	1,515,000
아동양육비	1,165,000	1,625,000	2,085,000	2,545,000	3,005,000
절차비용	380,000	380,000	380,000	380,000	380,000
운영비	250,000	250,000	250,000	250,000	250,000
합계	3,310,000	3,770,000	4,230,000	4,690,000	5,150,000
정상아 국내 입양비와의 차액	1,407,000	1,867,000	2,327,000	2,787,000	3,247,000

VI. 國內入養 活性化를 위한 費用分擔方案

앞 장의 연구결과는 비용을 누가 負擔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입양에 소요되는 全體 費用만을 계산한 것이다. 따라서 앞에 제시된 입양비용을 모두 養父母가 부담해야 할 것인가, 특히 미숙아나 장애아동 등 醫療問題를 가지는 아동의 국내입양비를 양부모가 모두 부담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본 연구에서는 국내입양의 활성화라는 정책방향에 부응하기 위해 政府가 國內入養에 소요되는 비용 중 상당부분을 보조해야 한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삼은 바 있다. 정부가 입양비용 중 일부를 보조하는 것은 入養機關에게 국내입양에 따르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養父母의 비용부담 완화효과를 가져온다는 長點 외에도, 입양기관의 價格 및 서비스 수준을 실질적으로 規制·監督할 수 있다는 政策的 意義를 가지는 것이다. 이 장에서는 먼저 현재 입양기관 및 양부모에게 지급되고 있는 入養關聯 國庫補助의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국고보조를 改善하기 위한 방안을 국고보조 方式의 改善과 국고보조 內容의 擴大로 나누어 제시하며, 이러한 국고보조가 이루어질 경우에 養父母가 부담해야 하는 입양비를 산출하고자 한다.

1. 入養關聯 國庫補助 現況

현재 입양관련 국고보조금은 크게 入養機關에 대한 補助金과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대한 養育補助金으로 분류된다.

가. 入養機關에 대한 國庫補助

1995년에 개정된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特例法 제23조 제2항에서는 정부가 입양기관의 運營에 필요한 비용을 매년 豫算의 範圍안에서 보조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해 1996년 현재 정부가 입양기관에 대해 보조하고 있는 운영비는 기관당 年間 약 10,134천원이며, 그 內譯은 다음과 같다.

① 相談員 1명의 인건비

- 봉급(인/월): 472,000원(보육사 4호봉 기준)
- 상여금: 연간 400%
- 정근수당: 50~100%
- 의료보험료: 급여총액의 1.6%
- 국민연금: 급여총액의 2.0%

② 사무용품비 등: 기관당 연 1,200천원(보건복지부, 1996).

이같은 입양기관에 대한 보조는 運營費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언급이 부족한 상태에서, 人件費의 일부와 事務用品費를 보조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근거가 매우 미약하다.

뿐만 아니라, 국고보조되고 있는 相談員의 봉급이 월 472,000원으로 너무 낮은 수준이어서 입양기관이 정말 필요로 하는 資格을 갖춘 상담원을 확보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 예를 들면 국내입양 지정기관인 E영아시설의 경우 상담원 1명에 대해 1995년 1년동안에 지출한 인건비 총액은 14,586,360원이었다. 1996년부터 지급되는 국고보조금 중 인건비 총액인 8,934천원 외의 不足額(1995년 기준 약 5,652천원)을 지방정부의 보조금(道費)으로 충당해야 하는 실정이다.

한편 국내입양 지정기관은 E영아시설과 같이, 대부분 보호시설을 갖추고 있는 곳이므로,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기준에 의하여 入養前 兒

童養育에 드는 비용(양육자 인건비, 의료비, 분유 및 간식비, 소모품비)을 국고보조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이것이 입양전 아동양육비를 국고보조 없이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입양전문기관과의 差異點이라고도 볼 수 있다.

兒童福祉施設 運營支援 基準에 의해 국내입양 지정기관에 대해 보조되는 양육비 내역 및 금액은 다음과 같다(1996년 영아시설 기준).

- ①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계보호비 월 92,000원
- ② 영아분유 급식비 인/일 529원 × 365일
- ③ 의약품비 연 24,190원
- ④ 난방연료비 4인당 1일 1,786원 × 180일
- ⑤ 위생대 인/일 2,057원 × 365일
- ⑥ 종사자 인건비
- ⑦ 시설관리운영비(건물유지비, 기준경비, 차량유지비 포함)

1995년의 韓國保健社會研究院의 아동복지시설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영아시설 아동 1인당 연간 3,272천원의 국고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응석 외, 1995). 1996년부터 생계보호비, 영아분유 급식비, 난방연료비가 상당 수준 상승된 것을 감안하면, 1996년 현재 영아시설 아동 1인당 국고보조금은 月 30만원을 훨씬 上廻할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와 같은 입양기관에 대한 국고보조 방식 및 내용이 가지는 問題點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양육비에 대한 국고보조는 生活保護法의 적용을 받는 아동복지시설 부설 국내입양 지정기관에게만 지급될 뿐 입양전문기관(4개 국내 및 국외입양 전문기관과 1개의 국내입양 전문기관)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결국 입양전문기관을 통해 아동을 입양하는 경우에는 養父母가 양육비를 全額 부담하게 됨으로써 입양지정기관을 통한 입양에 비해 양부모의 부담이 훨씬 과중한 실정

이다.

둘째, 1996년부터 시작된 입양기관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기관당 定額으로 지급하는 방식은, 기관당 국내입양 아동수가 10명 이하인 기관에서부터 394명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는 점을 감안하지 못한 방식으로 국고보조의 機關別 衡平性의 문제를 야기한다. 뿐만 아니라 국고보조금을 입양기관에 定額으로 지급하는 현행 보조방식은 양부모의 부담을 낮추는 데 기여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가진다.

셋째, 1996년부터 시작된 입양기관에 대한 국고보조금 중 兒童相談員의 人件費 水準이 지나치게 낮은 것으로 보인다.

나. 入養家庭에 대한 國庫補助

1995년에 개정된 입양특례법 제23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입양된 障礙兒童 등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의료비 등 양육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때 양육보조금의 지급대상과 지급범위는 다음과 같다.

먼저 양육보조금의 支給對象은 ① 지체, 시각, 청각, 언어장애 또는 정신지체 등 정신적 결함으로 인하여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아동, ② 분만시 조산, 체중미달, 분만장애, 유전 등으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이다.

양육보조금의 支給範圍는 ①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입양가정에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양육보조수당(1996년 현재 인/월 10만원), ② 의료비 중 비급여분을 제외한 본인부담금(1996년 현재 인/연 20만원 범위내)이다.

장애아동에 대한 양육보조금 혹은 의료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養育補助金 支給申請書에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입

양아동의 진료비 영수증을 첨부하여 市長・郡守・區廳長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지급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입양아동의 장애 및 질환상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외에도 1994년 이후부터 적용되어온 입양가정에 대한 支援事業은 다음과 같다.

- ① 주택분양 및 전세자금: 입양가정당 500~1000만원 할증지원
- ② 입양된 아동의 중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면제
- ③ 입양된 장애아동에 대해 국립의료원에서 18세까지 무료진료
- ④ 연말정산 소득공제 중 부양가족 및 교육비 공제대상에 입양자도 포함

그러나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입양가정에 대한 국고보조가 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얼마나 實質的인 도움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疑問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보건복지부의 내부자료에 의하면, 입양가정에 대한 국고보조가 지급되기 시작된 1996년 1월부터 9월까지의 기간동안 장애아동 입양가정에 대한 養育補助金の 적용대상자는 16명에 불과했고, 같은 기간동안 지급된 장애아동 醫療費도 242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2. 國庫補助 改善方案

이상에서 살펴본 입양관련 국고보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은 크게 국고보조 方式의 改善과 국고보조 內容의 擴大라는 두 가지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가. 國庫補助方式의 改善

입양기관에 대한 국고보조 방식은 다음과 같은 두가지를 감안하여 개선되어야 한다.

1) 兒童別 國庫補助方式의 사용

현행과 같은 입양기관당 定額 보조방식을 지양하여 아동별 국고보조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현행 입양기관당 정액보조 방식은 기관당 국내입양 兒童數를 감안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기관별 국고보조의 衡平性 문제를 야기하므로, 입양기관별 국내입양 兒童數를 감안한 국고보조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養父母의 入養費 負擔을 輕減하는 國庫補助方式의 사용

현재와 같이 국고보조금을 입양기관에게 定額으로 지급하는 방식은 양부모의 負擔을 낮추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아동당 總入養費用에서 아동당 국고보조금을 뺀 금액만을 양부모가 부담하는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국고보조금이 양부모의 負擔을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나. 國庫補助 內容의 擴大

1) 入養機關에 引受되는 모든 兒童에 대한 養育費 補助

현재 생활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국내입양 지정기관에만 養育費를 보조할 뿐, 입양전문기관(4개 국내 및 국외입양 전문기관과 1개의 국내입양 전문기관)에 인수된 아동에 대한 양육비는 養父母가 모두 부담함으로써 입양전문기관을 통해 아동을 입양하는 양부모의 負擔이 상대적으

로 過重하다는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입양기관에 인수되는 모든 아동을 生活保護對象者로 인정하여 양육비를 보조한다. 즉 국내입양 지정기관에 대해서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기준에 의해 양육비를 보조하듯이, 입양전까지 입양기관에서 보호되는 아동에 대한 養育費를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다.

國家가 입양전 양육비를 보조하는 근거는 입양기관에 인수되는 아동보호 혹은 양육의 一次的 責任이 국가에게 있다는 점을 인정하여, 입양전까지의 양육비만이라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데 있다. 특히 이 비용은 요보호아동을 영아시설 및 육아시설에서 18세까지 보호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면 매우 낮은 액수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2) 兒童相談員 人件費 補助

1996년부터 입양기관에 대해 아동상담원 인건비를 보조하고 있으나 基準이 너무 낮아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된 인건비 중에서 兒童相談員 人件費만이라도 全額 보조하도록 한다.

3) 養父母教育費 및 事後管理費 支援

質 높은 입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책정된 양부모교육비와 사후관리비를 국고보조한다.

4) 未熟兒나 障礙兒童에 대한 特別한 考慮

미숙아나 장애아동 등 醫療問題를 가지는 아동에게 소요되는 입양비에 대한 정부의 보다 積極的인 補助가 요구된다. 따라서 미숙아나 장애아동 등 의료문제를 가지는 아동의 국내입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의료문제를 가지는 아동을 입양하는 양부모로 하여금 健康한 兒童을 입양하는 데 드는 入養費 以上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국고보조가 요구된다. 즉 의료문제를 가지는 아동을 입양하는 양부모라 할지라도 건강한 아동을 입양하는데 드는 입양비만을 부담하도록 하고,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는 국가가 부담하도록 한다.

3. 養父母 負擔 入養費

이상에서 제시된 바와 같은 국고보조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양부모가 부담해야 할 입양비는 入養專門機關을 통해 아동을 입양하는가, 혹은 國內入養 指定機關을 통해 아동을 입양하는가에 따라 다르게 산정된다.

가. 入養專門機關을 통한 入養의 경우

입양전문기관을 통해 아동을 입양하는 경우 양부모가 부담해야 할 입양비는 人件費 중 보조인력 인건비, 의료인 인건비, 節次費用 중 사진, 서류비, 여비, 아동이송비, 미혼모 상담활동비, 그리고 運營費이다.

즉 보조인력 인건비 300,000원, 의료인 인건비 175,000원, 양부모교육비와 사후관리비를 제외한 절차비용 180,000원, 운영비 250,000원, 합계 905,000원이 입양전문기관을 통해 아동을 입양하는 양부모가 부담해야 할 입양비이다(表 6-1 참조). 이 금액은 의료문제를 가지지 않는 건강한 아동의 총입양비용인 1,903,000원의 47.6%에 해당되는 금액이며, 나머지 998,000원은 國庫補助金으로 충당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表 6-1〉 入養專門機關을 통한 入養時 養父母負擔 入養費

(단위: 원)

항목		국고보조금	양부모부담액
인건비	아동상담원인건비	360,000	-
	보조인력인건비	-	300,000
	의료인인건비	-	175,000
아동양육비	양육위탁비:정규사례비	300,000	-
	특별사례비	100,000	-
	분유비 및 보조식품비	30,000	-
	소모품비	100,000	-
	신체검사	28,000	-
	예방접종, 비상약품	10,000	-
	의래 및 입원진료비	10,000	-
	절차비용	-	5,000
절차비용	사진	-	5,000
	서류비	-	5,000
	여비	-	20,000
	아동이송비	-	50,000
	미혼모상담활동비	-	100,000
	양부모교육비	100,000	-
	사후관리비	50,000	-
운영비	제반운영비	-	250,000
합계		998,000	905,000

한편 본 연구에서는 醫療問題를 가지는 아동의 입양시 양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입양비도 건강한 아동을 입양할 때 부담해야 하는 입양비와 同一해야 한다고 본다. 즉 앞으로 국내입양이 활성화되어 의료문제를 가지는 아동이 대부분 국내입양될 경우를 가정할 때, 의료문제를 가지는 아동에 소요되는 養育費의 상당부분을 國庫補助金으로 충당함으로써 의료문제를 가지는 아동을 입양하는 양부모라 할지라도 건강한 아동을 입양할 때 부담해야 하는 입양비 이상을 부담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表 6-2 참조).

<表 6-2> 醫療問題兒童 入養時 養父母負擔 入養費(保護期間 2~6個月)
(단위: 원)

항목		국고보조금	양부모부담액
고정액			
인건비	아동상담원인건비	360,000×1.5	-
	보조인력인건비	300,000×0.5	30,000
	의료인인건비	175,000×2	175,000
아동양육비	소모품비	100,000×1.5	-
	신체검사	28,000×2.5	-
	예방접종, 비상약품	10,000×2.5	-
절차비용비	사진	-	5,000
	서류비	-	5,000
	여비	-	20,000
	아동이송비	-	50,000
	미혼모상담활동비	-	100,000
	양부모교육비	10,000	-
	사후관리비	10,000	-
운영비	제한운영비	-	250,000
보호기간 비례액			
아동양육비	양육위탁비: 정규사례비	300,000×보호기간	-
	특별사례비	100,000×보호기간	-
	분유비 및 보조식품비	30,000×보호기간	-
	외래 및 입원진료비	100,000×보호기간	-
	간병인비	20,000×보호기간	-
합계			905,000

나. 國內入養 指定機關을 통한 入養의 경우

국내입양 지정기관을 통한 입양의 경우 養父母가 부담해야 하는 입양비는 입양전문기관을 통한 입양비에 비해 훨씬 적어진다. 第5章에서 살펴본 E 영아시설의 경우처럼, 국내입양 지정기관에서는 총소요비용의 약 3/4을 國庫補助金 및 地方費補助金으로 충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구체적인 항목과 액수를 제시하기는 힘들지만, <表 6-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영아시설에 인수된 아동의 국내입양을 위해 실질적으로 국고 혹은 지방비로 보조되고 있는 액수는 1,885,000원이나 되는 것으로 推定된다.

따라서 국내입양 지정기관을 통해 아동을 입양하는 양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입양비의 內譯은 아동양육비 중 분유비 및 보조식품비, 소모품비 일부, 신체검사비, 절차비용 중 사진비, 서류비, 여비, 미혼모 상담활동비, 그리고 기관운영비로서 아동양육비 168,000원, 절차비용 130,000원, 운영비 250,000원, 합계 548,000원이다(表 6-4 참조).

〈表 6-3〉 國內入養指定機關에 대한 直·間接 補助實態

(단위: 원, %)

항목	내역	보조실태	보조형태	실질적인 보조액
인건비	아동상담원인건비	국고+지방비보조	직접보조	835,000(44.3)
	보조인력인건비	영아원 인력사용	간접보조	
	의료인의 인건비	영아원 인력사용	간접보조	
아동양육비	위탁모 정규사례비	영아원 인력사용	간접보조	1,000,000(53.1)
	위탁모 특별사례비	영아원 인력사용	간접보조	
	소모품비	일부 국고보조	직접보조	
	예방접종, 비상약품	국고보조	직접보조	
	외래 및 입원진료비	국고보조	직접보조	
절차비용	아동이송비	국고보조	직접보조	50,000(27.0)
합계				1,885,000(100.0)

〈表 6-4〉 國內入養指定機關을 통한 入養時 養父母負擔 入養費

항목	내역	양부모부담 입양비	
인건비	아동상담원인건비	국고보조	
	보조인력인건비	-	
	의료인력인건비	-	
아동양육비	양육위탁비:위탁모 정규사례비	-	
	위탁모 특별사례비+	-	
	분유비 및 보조식품비	30,000×3=90,000	
	소모품비	50,000	
	신체검사	28,000	
	예방접종, 비상약품	-	
	외래 및 입원진료비	-	
	절차비용	사진	5,000
		서류비	5,000
		여비	20,000
아동이송비		-	
미혼모상담활동비		100,000	
운영비	양부모교육비	국고보조	
	사후관리비	국고보조	
운영비	제반운영비	250,000	
합계		548,000	

VII. 結論 및 政策建議

1. 結論

가. 研究結果 要約

本 研究은 입양에 소요되는 비용산출과 입양비용의 적절한 분담방식에 대한 논의에 기초하여 입양기관이 양친이 될 자로부터 수납할 수 있는 입양비의 上限線 책정에 필요한 基礎資料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다.

즉 本 研究의 目的은 첫째, 입양에 소요되는 입양비용을 國內入養과 國外入養別, 內譯別로 산출하는 것이며, 둘째, 입양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모두 양친이 부담할 수는 없다는 전제하에서 國家가 책임져야 할 입양비용과 養父母가 부담해야 할 입양비를 제시하는 것이었다.

위의 研究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研究방법은 첫째, 1996년 현재 전국에 걸쳐있는 28개 입양기관 중에서 國外입양과 國內입양 업무를 모두 실시하는 입양전문기관 4개 기관(전수), 그리고 國內입양만을 전담하는 國內입양 전문기관 1개 기관(전수), 나머지 23개 國內입양 지정기관 중 1개 기관에 대해 입양비용 算出內譯 資料를 수집·분석하는 것이었다. 둘째, 입양기관을 통해 입수한 資料를 기초로 하여 적정 입양비용을 산출하기 위해 입양에 소요되는 경비의 필수항목별 적정비용을 계산하고, 셋째, 기존 통계 및 문헌자료를 분석하였다.

本 研究의 分析 結果는 크게 네가지로 요약된다.

1) 國內 및 國外 入養專門機關의 入養費用

4개의 국외 및 국내 입양전문기관을 대상으로 입양비용을 분석한 결과 國內入養의 경우 건강한 아동의 입양에 소요되는 기간을 1개월로 전제하여 1,903,000원(1995년말 가격 기준), 國外入養의 경우는 입양에 소요되는 기간을 5개월로 전제하여 4,692,500원(1995년말 가격 기준)으로 산출되었다.

위의 비용수준은 국내입양비의 경우 4개 입양기관이 현재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금액(기부금 포함 1,200,000원부터 1,700,000원)을 훨씬 上廻하고 있으며, 국외입양비의 경우에도 4개 입양기관이 현재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금액(기부금 포함 2,840,000원부터 5,160,000원) 중 2개 기관의 입양비를 상회하는 것이다.

內譯別로는 국내입양비의 경우 인건비가 835,000원(총액의 43.9%), 양육비가 488,000원(25.6%), 절차비용이 330,000원(17.3%), 운영비 250,000원(13.1%)으로, 국외입양비의 경우에는 인건비가 1,877,500원(총액의 40.0%), 양육비가 2,065,000원(44.0%), 절차비용이 500,000원(10.7%), 운영비가 250,000원(5.3%)으로 계산되었다(表 7-1 참조).

〈表 7-1〉 國內·外 入養을 同時에 實施할 境遇의 入養費用 (단위: 원)

항목	국내입양비용	국외입양비용
인건비	835,000	1,877,500
아동양육비	488,000	2,065,000
절차비용비	330,000	500,000
운영비	250,000	250,000
합계	1,903,000	4,692,500

2) 國內入養 指定機關의 入養費用

주로 건강한 아동의 국내입양을 담당하는 국내입양 지정기관의 경우, 입양에 소요되는 기간을 3개월로 前提할 때, 총소요비용은 2,583,000원으로 계산된다. 이는 입양전문기관의 입양소요기간이 1개월인데 비해, 국내입양 지정기관의 양육기간은 평균 3개월로 길어지는 데 따르는 養育費 증가 때문이다(表 7-2 참조).

3) 國內入養 專門機關의 入養費用

앞으로 국내입양이 活性化되고 未熟兒나 障礙兒童도 거의 국내입양이 될 경우에 소요되는 입양비용을 분석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본 연구에서는 국내입양 전문기관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즉 醫療問題를 갖고 있는 아동의 대부분이 국내입양된다고 가정하고, 입양비를 보호기간에 상관없는 固定額과 保護期間 比例額의 두가지 차원에서 산출하였다. 즉 2~6개월 이내에 국내입양이 가능한 의료문제아동의 경우, 입양되기까지의 보호기간과 상관없이 고정적인 입양비용은 2,390,000원(인건비 1,515,000원, 아동양육비 중 소모품비, 신체검사비, 예방접종 및 비상약품비 245,000원, 절차비용비 380,000원, 운영비 250,000원)으로, 보호기간에 비례하는 입양비용은 월 양육비 460,000원(양육위탁비 및 위탁모관리비 월 310,000원, 분유비 및 보조식품비 30,000원, 외래 및 입원진료비 100,000원, 간병인비 20,000원)에 양육기간(個月數)을 곱한 금액이다.

따라서 입양비용은 보호기간 1개월당 460,000원씩 증가하여 2개월간 보호 후 입양시에는 3,310,000원, 3개월후 입양시 3,770,000원, 4개월후 입양시 4,230,000원, 5개월후 입양시 4,690,000원, 6개월후 입양시 5,150,000원으로 산출되었다.

결국 입양대상 아동이 건강한 아동인지, 혹은 의료문제를 가지는 아동인지에 따라서, 그리고 입양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에 따라서 국내 입양에 소요되는 총비용은 <表 7-2>와 같이 달라진다.

<表 7-2> 入養對象兒童의 特性 및 入養所要期間別 國內入養費用
(단위: 원)

아동특성 입양소요 기간	건강한 아동		의료문제를 가진 아동				
	1개월 이내	1개월 이상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인건비	835,000	835,000	1,515,000	1,515,000	1,515,000	1,515,000	1,515,000
아동양육비	488,000	1,168,000	1,165,000	1,625,000	2,085,000	2,545,000	3,005,000
절차비용비	330,000	330,000	380,000	380,000	380,000	380,000	380,000
운영비	250,000	250,000	250,000	250,000	250,000	250,000	250,000
합계	1,903,000	2,583,000	3,310,000	3,770,000	4,230,000	4,690,000	5,150,000

4) 國內入養 活性化를 위한 費用分擔方案

본 연구에서는 현행 입양기관에 대한 國庫補助 方式 및 內容을 검토하여 국내입양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국고보조의 改善方案을 제시하고, 이같은 국고보조가 이루어질 경우에 養父母가 부담해야 入養費를 산출하였다.

국고보조의 개선방안은 첫째, 현재와 같은 入養機關當 定額 補助方式으로 인한 기관별 국고보조의 衡平性 問題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고보조의 방식을 兒童別 國庫補助方式으로 전환하고, 총입양비용에서 아동당 국고보조금을 除한 금액만을 양부모가 부담하도록 하여 양부모의 負擔을 낮추는 것이다. 둘째, 입양기관에 인수되는 모든 아동을 生活保護對象者로 인정하여 養育費를 보조하고, 인건비 중 兒童相談員 인건비 전액과, 질높은 입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책정된 養父母教育費와 事後管理費를 국고보조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미숙아나 장애아동 등 醫療問題를 가지는 아동의 국내입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들을 입양하는 양부모가 건강한 아동을 입양하는 데 드는 입양비 이상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積極的인 介入과 財政支援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위와 같이 국고보조 방식이 개선되고 내용이 확대될 경우, 양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入養費는 인건비 중 人件費 중 보조인력 인건비, 의료인 인건비, 節次費用 중 사진, 서류비, 여비, 아동이송비, 미혼모 상담활동비, 그리고 運營費이다.

즉 入養專門機關을 통해 입양하는 경우, 보조인력 인건비 300,000원, 의료인 인건비 175,000원, 양부모교육비와 사후관리비를 제외한 절차비용 180,000원, 운영비 250,000원, 합계 905,000원이 양부모가 부담해야 할 입양비이다. 이 금액은 의료문제를 가지지 않는 건강한 아동의 총입양비용인 1,903,000원의 47.6%에 해당되는 금액이며, 나머지 998,000원은 國庫補助金으로 충당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입양비는 건강한 아동을 입양하건 혹은 醫療問題를 가지는 아동을 입양하건간에 同一하게 적용된다.

반면 國內入養 指定機關을 통해 입양하는 경우, 兒童養育費 중 분유비 및 보조식품비 90,000원, 소모품비 50,000원, 신체검사비 28,000원, 節次費用費 중 사진비 5,000원, 서류비 5,000원, 여비 20,000원, 미혼모 상담활동비 100,000원, 그리고 기관운영비 250,000원으로서 합계 548,000원이다(表 7-3 참조).

〈表 7-3〉 入養專門機關 및 入養指定機關別 養父母負擔 入養費
(단위: 원)

항목	입양전문기관	입양지정기관
인건비	475,000	-
아동양육비	-	168,000
절차비용	180,000	280,000
운영비	250,000	250,000
합계	905,000	548,000

나. 入養費用 分析上의 限界點

본 연구에서 제시한 입양비용은 入養費用을 現實化하고자 하는 첫 번째 基本原則을 충실히 따른 것이다. 특히 본 연구는 입양기관의 자료를 통해 비용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入養外 福祉事業에 사용되는 지출이나, 혹은 빠른 시일내에 조정 또는 개선되기 힘든 問題를 가진 지출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지출은 純粹한 入養關聯 活動에만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해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배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入養與件 및 現實을 인정하고 費用을 現實化한다는 측면에서 도외시킬 수 없는 부분으로 판단하여 인정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國內入養의 活性化에 기여하기 위해, 앞으로 국내입양이 활성화되어 대부분의 입양기관이 국내입양만을 전담하거나 혹은 앞으로 조산아나 장애아동도 국내입양될 경우에 適用할 수 있는 비용을 산정하기 위해 노력했다. 즉 국내입양만을 全擔하는 입양기관에 적용할 수 있는, 혹은 국내입양 중심의 입양이 이루어질 경우에 대비한 국내입양비용의 分析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본 분석결과, 入養機關이 제시한 자료를 주요 分析對象으로 삼은 것이라는 점에서 다음과 같은 分析上의 限界를 가지며, 앞으로 이로 인한 비용상의 誤差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입양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費用項目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입양기관간 項目別 標準化가 이루어져 있지 않은 데서 오는 어려움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입양기관별 서비스 수준의 差異는 적정한 입양비용을 산출하는데 장애요소로 작용하였다. 예를 들면, 1995년에 개정된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特例法에는, 養父母教育은 입양기관의 의무적인 활동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기관은 1개 기관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만일 양부모교육비를 入養費에 포함시킨다면, 실제로 양부모교육을 실시하

지 않는 기관의 서비스 수준을 改善함이 없이 費用上昇 效果를 가져올 수 있다는 부정적인 측면을 가질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국내입양을 활성화한다는 기본원칙하에서 국내입양비를 계산하고자 했으나, 현재로서는, 특히 국외입양 및 국내입양을 동시에 실시하는 4개 전문입양기관의 경우, 입양비용의 上向調整을 통해 국내입양을 활성화시키는 데에는 限界가 있다는 점도 동시에 고려해야 했다. 다시 말하면 4개 국외입양 및 국내입양 전문입양기관에 대한 국내입양비를 상향조정한다고 해서 短期間내에 未熟兒나 障礙兒童의 국내입양이 증가하기는 어렵다는 入養現實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미숙아나 장애아동을 아동복지 차원에서 입양하며, 장애아동에 대한 인식수준이 개선되어 사회적 수용도가 높아지고 복지혜택이 증가하는 등의 社會全般的인 분위기가 성숙해지지 않는 한 국내입양이 활성화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외입양 및 국내입양을 동시에 실시하는 4개 입양전문기관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현재 未熟兒나 障礙兒童이 거의 國內入養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미숙아나 장애아동을 국내입양하는데 소요되는 양육기간을 별도로 인정하지 않았다. 즉 이들 기관의 국내입양 비용(1,903,000원)은 新生兒가 입양되기까지 1個月이 소요된다는 전제하에 계산된 것이다¹²⁾.

셋째, 본 연구에서는 국내입양만을 全擔하는 입양기관에 적용할 수 있는, 혹은 국내입양 중심의 입양이 이루어질 경우에 대비한 국내입양비를 별도로 분석하였다. 즉 요보호아동의 거의 大部分이 국내입양된다고 假定하여 미숙아나 장애아동을 국내입양하는 데 소요되는 養育

12) 현재 국내입양을 원하는 양부모는 健康한 新生兒를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입양해가기를 원하는 추세라는 점을 감안하면, 국내입양비의 기준으로 잡은 1달의 보호기간도 실제 양육기간보다는 다소 길게 산정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期間을 인정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미숙아나 장애아동이 입양되기 전까지 실제 소요되는 期間을 어떻게 고려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는다. 1개월 이내에 입양되기 어려운 아동은 대부분 의료문제를 가지는 아동일 것으로 추정되는 데, 兒童別 健康狀態 및 그로 인한 입양전 보호기간의 差異를 양육비 산정에 반영하기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입양전 보호기간이 2~6개월인 경우에 대한 입양비만을 제시하고, 6개월이 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제시하지 못했다. 입양전 보호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아동의 의료문제의 多樣性이나 深刻性を 반영하는 것은 개별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문제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 政策建議

본 연구는 입양비용에 관한 정책과 관련하여 앞에서 제시된 바 있는 入養費用 計算上의 誤差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방안과,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한 政府次元의 支援方案을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자 한다.

가. 入養費用 計算上의 誤差를 最少化하기 위한 方案

入養費用 計算上의 誤差를 最少化하기 위한 方案으로서 첫째, 입양기관간 支出項目의 標準化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서는 입양기관간 지출항목을 표준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의 항목, 세부항목 및 내용을 다음의 <表 7-4>와 같이 제시해보고자 한다.

둘째, 서비스 수준의 改善없이 비용상승효과를 가져오는 副作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입양기관 서비스에 대한 統制가 필요하리라고

본다. 예를 들면 본 연구의 입양비용은 양부모교육비를 충분히 감안하는 등 입양서비스의 水準을 높이는 效果를 가져올 수 있도록 계산된 것이므로 입양기관의 서비스 향상 노력이 따라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의 제4장에서 제시한 국내입양비용은 국외입양 및 국내입양을 동시에 담당하는 4개 입양전문기관에서 현재 미숙아나 장애 아동이 거의 국내입양되지 않고 있다는 現實을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 대한 국내입양비용도 국내입양에 소요되는 期間을 1개월로 전제한 비용이므로 국내입양에 실제 소요되는 期間이 1개월보다도 더 짧은 데 따른 價格 調整가능성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본 연구는 입양된 아동을 기준으로 하여 입양기관에 引受(Intake)되어 입양되기까지의 비용을 계산한 것이므로 입양기관에 인수되었으나 입양되지 못한 아동에게 소요된 비용에 대한 고려가 요구된다. 아울러 입양되지 못한 아동에게 적합한 시설(다른 시·도 지역)에 轉院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거나 이들 아동에 대한 보호비용(시설보호에 드는 비용)을 입양기관에 지원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인수된 아동에 비해 입양된 아동의 比率이 낮은 입양기관에 대한 배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본 연구는 1995년 말 현재의 價格水準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앞으로 입양에 소요되는 비용의 物價上昇分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정부측의 原則 提示가 필요할 것이다.

〈表 7-4〉 入養機關의 費用支出 項目의 標準化를 위한 分類方式

항목	세부항목	내용
인건비	아동상담원 인건비 보조인력인건비 의료인 인건비	아동상담원, 수속직원, 관리직원, 보육사, 기사, 잡직(세탁, 취사담당) 등의 보조인력, 의사, 약사, 임상병리사, 의료기사, 간호사, 간호보조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로 아동상담원, 보조인력, 의료인 등으로 인력의 기능별로 나누어 기록하도록 함. 또한 각 기능별 인건비는 기본급과 수당으로 나누어 기록하도록 함.
아동양육비	양육위탁비	위탁모에게 지급되는 위탁비를 정규사례비와 특별사례비로 구분하여 기록하도록 함.
	분유비 및 보조식품비	아동양육에 필요한 분유비(특수 분유비포함) 및 보조식품비용.
	소모품비	피복, 이불, 기저귀, 우유병 등 아동양육에 소요되는 소모품 비용을 소모품 종류별로 기록하도록 함.
	신체검사	선천성대사이상검사를 포함한 신체검사비
	예방접종, 비상의약품	아동에게 실시되는 예방접종의 비용과 기본적인 의료품 구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함. 의료품 종류별 단가와 구입규모를 기록하도록 함.
	외래 및 입원진료비	아동이 의료상의 문제로 인하여 지불하게 된 외래 및 입원 진료비
	간병인비	아동의 장기입원에 따라 간병인에게 지급된 비용. 아동별로 간병인 고용기간과 일당을 기록하도록 함.
절차비용	사진	서류작성시 필요한 사진비용.
	서류비	서류작성을 위해 직접필요한 비용으로 서류복사비 및 서류작성시 필요한 인지대 등을 포함함.
	비자대 및 여권	국외입양의 경우 필요한 비자대 및 여권발급을 위한 제비용
	여비	입양과정에 필요한 서류작성 및 행정절차의 수행을 위해 아동상담원 및 보조인력이 사용하는 교통비

〈表 7-4〉 繼續

항목	세부항목	내용
절차비용	아동이송비(공항세 포함)	아동인수 또는 양부모에게 아동을 인계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교통비로 기름값, 통행료, 식대 등을 포함하며, 국외입양의 경우는 공항세가 추가됨. 국외입양의 경우 항공료는 별도로 기록하도록 함.
	미혼모 상담활동비	미혼모의 분만비 보조 및 산후조리 지원을 위해 지불된 비용
	사후관리비	입양아의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입양아 및 양부모 초청·방문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
	출국용품비	국외입양의 경우 필요한 가방, 한국안내책자 등 출국용품 구입용품
운영비	기관운영에 필요한 제반 운영비	기관운영에 필요한 제비용과 기관홍보를 위해 발간하는 제홍보물에 소요되는 비용.

나. 國內入養 活性化를 위한 政府次元의 支援方案

국내입양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방안으로서 첫째, 국내입양에 대한 政府次元의 적극적 弘報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입양기관별 홍보는 자칫 입양기관간의 競爭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그보다는 정부차원에서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입양비속에 弘報費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따라서 정부는 국내입양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弘報戰略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별도의 豫算을 편성해야 할 것이다.

둘째, 정부는 요보호아동 양육의 일차적 책임이 國家에게 있다는 점을 인정함으로써 의료문제를 가지지 않는 건강한 兒童에 대해서도 국내입양 지정기관에 제공하는 것과 같이 양육비, 아동상담원 인건비를 보조해야 한다. 그리고 養父母教育費, 事後管理費 등과 같은 特定 項目의 비용을 支援함으로써 서비스 질의 개선을 유도하는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미숙아나 장애아동 등 醫療問題를 가지는 아동에게 소요되

는 입양비에 대해서는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보조가 요구된다. 의료문제를 가지는 아동을 입양하고자 하는 養父母에게 입양되기 전까지의 양육비용을 부담시키기는 어렵고, 오히려 정부는 이들 양부모들에게 입양후의 양육보조금 등을 지급할 義務마저 가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숙아나 장애아동 등 의료문제를 가지는 아동을 입양하는 양부모가 건강한 아동을 입양하는 데 드는 비용 이상을 부담해서는 안되며, 이 아동들이 입양되기까지의 기간동안 소요되는 비용의 상당부분을 政府가 부담할 것을 建議한다.

셋째, 국내입양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보다 長期的인 支援方案으로서 국내입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民間 入養機關에 위임하되, 입양비용의 대부분을 國家가 부담하는 방식을 고려해볼 수 있다. 즉 국가는 입양기관의 經驗과 專門性을 활용하되, 입양기관으로 하여금 입양을 원하는 양부모의 명단을 共同管理하게 함으로써 입양대상 아동과 양부모를 확보하려는 입양기관들간의 지나친 경쟁과 개별적 홍보노력을 막을 수 있다.

이때 양부모는 입양에 소요되는 전체비용 중에서 절차비용 정도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國家가 부담한다. 이 안의 가장 중요한 근거는 요보호아동에 대한 一次的인 保護責任이 국가에게 있다는 것으로서, 실제로 요보호아동이 입양되지 않을 경우 국가가 18년동안 영아시설 및 육아시설에서 보호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감안한다면, 입양비용의 부담은 상대적으로 크게 낮은 편이다.

마지막으로 障礙兒童에 대한 시설보호 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등 장애아동을 위한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福祉對策이 마련되어야 하며, 동시에 未熟兒나 障礙兒의 豫防을 위한 未婚母 福祉對策 등이 필요하다.

參 考 文 獻

- 김응석 외, 『아동복지수용시설 운영평가 및 개선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
- 박인선, “국외입양인의 뿌리찾기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 청구논문, 1994.
- _____,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서비스 확대: 아동부문(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적 복지모형의 정립과 정책방향』, 1995.
- 보건복지부, 『아동복지 국고보조사업 수행지침』, 1995, 1996.
- _____,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령』, 1996.
- _____, 『아동복지사업지침』, 1996.
- 보건사회부, 『보건사회통계연보』, 1962.
- 송순화, “국내입양 활성화방안,” 『제2회 아동복지지도원 연찬회보고서』, 1994.
- 원영희, 『한국 입양정책에 관한 연구 -전개과정 및 문제점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1990.
- 이지숙, “아동과 입양,”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아산』, 1993.
- 정기원·김만지, 『우리나라 입양의 실태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3.
- 정기원·안현애, 『국내 및 국외입양의 현안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책연구자료, 1994.
- Gilbert, Neil, Harry Specht, Paul Terrell, *Dimensions of Social Welfare Policy*, 3rd edition, Prentice Hall, 1993.
- Hoggett, Brenda, *Parents and Children*, fourth edition, Sweet & Maxwell, 1993.
- Humphrey, Michael, Heather Humphrey(ed.), *Inter-Country Adoption, Practical Experiences*, Tavistock/Routledge, 1993.

- Kamerman, Sheila, Alfred J. Kahn, *Privatization and the Welfare State*,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9.
- Kirk, H.D., "Shared Fate as Biography: A theory of Adoption in the Making," B.J. Tansey(ed.), *Exploring Adoptive Family Life: The Collected Adoption Papers of H. David Kirk*, Ben-Simon Publications, 1988.
- Parker, R.A., "Policies, Presumptions and Prospects in Charging for the Social Services," Ken Judge(ed.), *Pricing the Social Services*, The Macmillan Press Ltd., 1980.
-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1989.